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金元鎬 · 權奇洙 · 金眞梧 · 朴수완 · 郭宰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金元鎬 · 權奇洙 · 金眞梧 · 朴수완 · 郭宰誠



서 언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서 현재 일본, 미국, 멕시코와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곧 유럽연합(EU) 및 중국과도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은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해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체제 면에서나 경제성장 추이 면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경제통합체입니다. MERCOSUR는 지난 15년 동안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를 거두어 개발도상권 경제통합체로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축국가인 브라질은 정치안정과 경제활력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 인도, 러시아와 함께 이른바 브릭스(BRICs)의 하나로 불리며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남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MERCOSUR와의 FTA 추진방침을 정하고, 2004년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통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들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는 한편, 양측간 공동 타당성연구를 마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우리나라의 대(對) MERCOSUR FTA 관심은 MERCOSUR가 남미지역내 인접국과의 FTA 체결을 넘어 최근에는 인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더 포괄적인 FTA로

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全)미주 국가와의 FTA인 FTAA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EU와의 FTA 협상도 진행중인 데 위협을 느낀 바도 큼니다.

본원은 국내에서 MERCOSUR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그간 MERCOSUR의 발전추이와 산업정책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들을 펴낸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한·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MERCOSUR가 제3국과의 FTA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 정책보고서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 MERCOSUR 협상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협상입장 및 전략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을 진행시키는 데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본원의 김원호 선임연구위원을 위시하여 권기수·김진오 전문연구원, 박수완 연구원, 경희대의 박재성 교수가 집필에 수고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준비된 협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12월

원장 李 景 台



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은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 시장의 높은 발전 잠재력과 시장성을 인식해 2004년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FTA 협상을 전제로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동연구회의는 2006년까지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양자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해 그간 MERCOSUR가 제3국과 체결한 FTA나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분석, 우리나라의 대(對) MERCOSUR FTA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MERCOSUR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해왔던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가 40개국 이상과 FTA를 성사시킨 데 반해, MERCOSUR는 현재까지 칠레와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6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

다. 역외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개도권 국가와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관세협정(PTA)을 체결했을 뿐이다. 그에 반해 선진권과의 FTA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은 농업보조금 등 주요 협상쟁점을 둘러싼 대립으로 당초 협상 시한을 넘긴 채 지체되고 있다.

MERCOSUR는 내부 조직상으로 볼 때 공동시장위원회(CMC), 공동시장그룹(GMC), 무역위원회(CCM) 등 매우 세부적으로 임무가 구분된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사무국(SAM)을 몬테비데오에 두고 있는 등 초국가적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미약한 통합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SAM은 단순한 행정지원기능만 갖고 있으며, MERCOSUR가 관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대외협상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EU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중요한 사안들이 추진,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대외협상의 장기화 및 잦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관세동맹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국의 대외협상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점 또한 경험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MERCOSUR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MERCOSUR의 FTA 협상 체계와 협상 경험 등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MERCOSUR FTA 협상 체계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가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시킨다면 이는 1+4, 또는 신회원국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1+5의 형태가 될 것이며, 특히 상대가 때로는 관세동맹 형태, 때로는 개별국 형태로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 매우 까다로운 협상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MERCOSUR가 FTAA, EU,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3국과 추진한 협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MERCOSUR와의 협상은 단기적으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PTA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FTA를 체결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한·MERCOSUR 무역구조, 관세구조, 통상 현안 그리고 FTA 경제 효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자간 FTA 협상 시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세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양자가 현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이해집단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농산품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MERCOSUR는 자동차, 섬유·의류, 신발류, 시계 등의 품목에 고(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양자간 통상현안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MERCOSUR측에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우리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와 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이다. 그에 반해 MERCOSUR측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은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개방이다. 세 번째로 한·MERCOSUR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산업별로 대별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이 커다란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MERCOSUR측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자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MERCOSUR 대외정책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MERCOSUR와의 FTA 협상 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고, MERCOSUR 회원국들이 개도국과의 FTA 협상을 우선시하는 “남남협력 중시형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농업부문을 민감분야로 지정, 상당부분 유보할 경우 MERCOSUR측의 한국과의 FTA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MERCOSUR와의 FTA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 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관세할당제(TRQ) 확대를 포함한 농축산업부문 추가 개방안과 이에 따른 국내적인 조정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WTO DDA 협상이 타결되어 그간 지체되었던 FTAA 협상이나 EU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남북협력 중시형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미국 및 EU와의 FTA가 먼저 체결되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제품과 기계류 등이 MERCOSUR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MERCOSUR와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特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종국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재 MERCOSUR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요구로 MERCOSUR가 관세동맹에서 자유무역지대로 후퇴하는 “각개약 진형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MERCOSUR의 와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도 포함되지만, 개별국과의 FTA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정식회원 가입이 MERCOSUR의 통합체 발전이나 협상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가 큰 관건이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및 무역정책상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한·MERCOSUR FTA 협상에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경우 한·MERCOSUR 협상은 기존 다른 역외권과의 FTA 협상보다도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 협상 중에도 별도로 기존 한·MERCOSUR 협의회(Korea·MERCOSUR Consultative Meeting)를 확대 강화시킴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ERCOSUR가 실용주의에 입각해 주요국과의 상호 무역 및 산업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MERCOSUR와의 협상 모멘텀 유지 수단이자 협상력 제고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대 MERCOSUR 협상과정에서 MERCOSUR 회원국가간의 이해충돌을 면밀히 분석,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25
1. FTA 추진 현황	26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27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34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35
라. FTA 정책의 특징	38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40
가. MERCOSUR의 조직	40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44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52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61
1. 협상 배경 및 결정	62
2. 양측간 경제관계	64
3. 협상방식 및 과정	68
가. 협상의 일반원칙	68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68
다. 협상 일시	73
4. 분야별 협상내용	74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74
나. 농업	75
다. 투자	77
라. 서비스	78
마. 정부조달	78
바. 지식재산권	79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79
아. 경쟁정책	79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79
차. 관세양허안	82
5. 향후 협상 전망	82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83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84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85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87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88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90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91
아. 향후 협상 전망	91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95

1. 협상 배경 및 결정	97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97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98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98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99
2. 양측간 경제관계	100
가. FTA 협상 개시	100
나. 교역	102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105
3. 협상방식 및 과정	105
4. 분야별 협상내용	106
가. 농업	106
나. 서비스	108
다. 기타 쟁점	110
5. 향후 협상 전망	111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15

1. 협상 배경 및 결정	116
---------------------	-----

가. 정치적 배경	116
나. 경제적 배경	117
다.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119
2. 양측간 경제관계	121
가. 교역	121
나. 투자	128
다. 관심사항 및 품목	130
3. 협상방식 및 과정	137
가. 협상방식	137
나. 협상과정	139
4. 분야별 협상내용	142
가. 시장접근	143
나. 원산지규정	147
다. 세이프가드	150
라. 분쟁해결	151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53

1. 협상 배경 및 결정	154
2. 양측간 경제관계	157
3. 협상방식 및 과정	161
가. 협상방식	161
나. 협상과정	162
4. 분야별 협상내용	172
가. 무역자유화	172

나. 원산지규정	175
다. 세이프가드조치	177
라. 분쟁해결제도	178
마. 위생검역제도	180
바. 기타	180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85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186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186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87
2. 한·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193
가. 한·MERCOSUR 경제관계	193
나.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216
다. 한·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223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225
참고문헌	237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44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250
Executive Summary	251



표 차례

표 2-1.	제4차 미주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FTAA 관련 주요 내용	34
표 2-2.	MERCOSUR의 FTA 추진 현황	37
표 2-3.	MERCOSUR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비교	52
표 2-4.	MERCOSUR 회원국에서의 대외무역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 및 내부조정기관	59
표 2-5.	MERCOSUR 회원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의 특징	60
표 3-1.	MERCOSUR에 대한 FTAA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비교	67
표 3-2.	협상분야별 MERCOSUR의 입장	80
표 3-3.	협상분야별 MERCOSUR의 세부 입장	80
표 3-4.	MERCOSUR의 단계별 관세철폐안	82
표 3-5.	브라질이 제안한 FTAA 협상 방식	85
표 3-6.	MERCOSUR와 FTAA: 다섯 가지 시나리오	94
표 4-1.	EU(15국)의 주요 무역상대국(2004년)	102
표 4-2.	MERCOSUR의 주요 무역상대국(2004년)	103
표 4-3.	EU(25국)의 산업별 對MERCOSUR 수출	104
표 4-4.	EU(25국)의 산업별 對MERCOSUR 수입	104
표 4-5.	MERCOSUR의 서비스부문의 수출입 추이	109
표 5-1.	MERCOSUR의 권역별 수출입 의존도(2005년 기준)	117
표 5-2.	MERCOSUR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	122
표 5-3.	인도의 對MERCOSUR 수출입 추이	123
표 5-4.	MERCOSUR의 對인도 10대 수출 품목(2004년 기준)	124

표 5-5. MERCOSUR의 對인도 10대 수입 품목(2004년 기준)	125
표 5-6. MERCOSUR와 인도의 관세구조	126
표 5-7. MERCOSUR와 인도의 품목별 관세구조	127
표 5-8. 인도의 對브라질 직접투자 현황	129
표 5-9. MERCOSUR의 對인도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131
표 5-10. 인도의 對MERCOSUR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133
표 5-11. MERCOSUR · 인도 특혜무역협정 추진 일정	139
표 5-12. MERCOSUR와 인도의 관세양허	144
표 5-13. MERCOSUR의 對인도 10대 수출품목과 인도의 관세양허	146
표 5-14. 인도의 對MERCOSUR 10대 수출품목과 MERCOSUR의 관세양허	147
표 6-1. SACU 회원국의 주요 지표(2005년)	156
표 6-2. MERCOSUR의 對SACU 교역 추이	158
표 6-3. MERCOSUR 회원국별 對SACU 교역 추이	159
표 7-1. 한국의 對MERCOSUR 수출 추이	194
표 7-2. 한국의 對MERCOSUR 수입 추이	195
표 7-3. 한 · MERCOSUR 수출입 추이	196
표 7-4. 한국의 對MERCOSUR 품목별 수출구조(2005년 기준)	198
표 7-5. 한국의 對MERCOSUR 10대 수출품목(2005년)	199
표 7-6. 한국의 對MERCOSUR 품목별 수입구조(2005년 기준)	200
표 7-7. 한국의 對MERCOSUR 10대 수입품목(2005년 기준)	200
표 7-8. 용도별 대외공동관세 구조	201
표 7-9. MERCOSUR 회원국들의 평균 대외관세	202
표 7-10. 한국의 對MERCOSUR 직접투자 추이	206
표 7-11. 한국의 업종별 對MERCOSUR 직접투자(2006년 3월 말 누계)	211
표 7-12.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2006년 현재)	212

표 7-13. 브라질의 對韓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06년 현재)	213
표 7-14. 한·MERCOSUR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단기)	218
표 7-15. 한·MERCOSUR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중장기)	219
표 7-16. 한국과 MERCOSUR의 지역별 수출의 순증감	220
표 7-17. 시나리오 I: 한·MERCOSUR FTA가 각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221
표 7-18. 시나리오 II: 한·MERCOSUR FTA가 각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222
표 7-19. 한·MERCOSUR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민감 품목	224
표 7-20. 시나리오별 MERCOSUR의 대외정책 방향	231



그림 차례

그림 2-1. MERCOSUR의 정책결정 기구	43
그림 3-1. MERCOSUR의 수출시장 비중(2005년 기준)	66
그림 5-1. MERCOSUR의 對인도 수출입 비중 추이	122
그림 5-2. 인도의 對MERCOSUR 수출입 비중 추이	123
그림 6-1. MERCOSUR의 對SACU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 추이	159
그림 6-2. MERCOSUR의 對SACU 수출에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비중 추이	160
그림 6-3. MERCOSUR의 對SACU 수입에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비중 추이	160
그림 7-1. 한국과 MERCOSUR의 관세 비교	203
그림 7-2. 농산물 중 한국과 MERCOSUR의 10대 관세격차 품목	204
그림 7-3. 공산품 중 한국과 MERCOSUR의 10대 관세격차 품목	205
그림 7-4. 한국의 對MERCOSUR 직접투자와 수출입 추이	209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MERCOSUR는 1995년 이후 대외협상력 제고, 시장규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역외국들과 FTA를 추진하는 등 외연적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어, 광역시장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MERCOSUR는 1996년 칠레와 FTA 체결을 시발로 2003년 말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과 FTA를 체결, 남미 10개국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를 결성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가 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의 주축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U와도 1999년부터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 시장의 높은 발전 잠재력과 시장성을 인식해 2004년 대통령의 남미 순방 시 FTA 협상을 전제로 한 ·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양자간 공동연구회의는 2006년까지의 회의 결과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남미 전체 면적의 71%와 인구의 51% (2억 2,000만 명)를 차지하고, 경제규모가 약 1조 달러인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또한 MERCOSUR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부품류, 기계류, 타이어, 직물의 경쟁력이 열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MERCOSUR는 한국에 거대 신흥 시장에서의 진출기회 확대와 안정적 원자재 공급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의 MERCOSUR 시장 점유 확대에 신속히 대응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MERCOSUR를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와 자원개발을 위한 전략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제 휴대폰, 에어컨, 직물, 석유화학제품, 타이어, 완구 등이 한국 상품들과 경쟁 중이다. 또한 일본 역시 최근 중국의 남미 진출 급성장과 한국의 약진에 영향을 받아 투자와 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간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한·MERCOSUR FTA 협상에 대비, MERCOSUR와 제3국간의 FTA 협상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MERCOSUR의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보다 잘 파악해 효율적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초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해 그간 MERCOSUR가 제3국과 체결한 FTA나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분석,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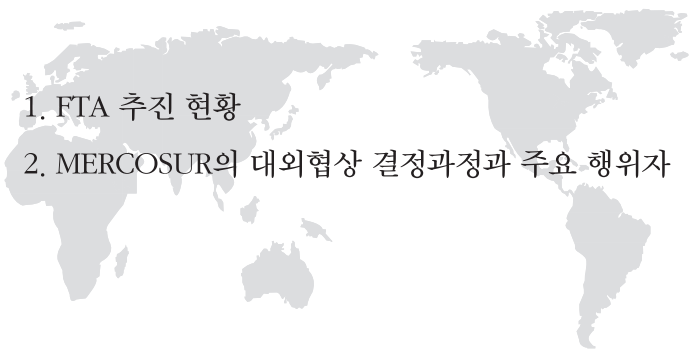
본 연구는 크게 일곱 개의 장으로 나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FTA 추진 현황을 고찰하고 MERCOSUR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및 주요 행위자, 그리고 대외정책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에 대한 고찰을 통해 MERCOSUR의 FTA 정책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MERCOSUR의 대표적인 FTA

협상 사례인 FTAA 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MERCOSUR의 또 다른 주요 FTA 협상 사례인 EU와의 FTA 협상 경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MERCOSUR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개도국과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MERCOSUR FTA협상의 예상 쟁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MERCOSUR와의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MERCOSUR의 FTA 상대인 다른 남미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상대가 경제규모 면에서 MERCOSUR와 대등하지 않아 지역개발협력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경우는 제2장에서 MERCOSUR의 FTA 추진현황을 논하며 총괄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본격적인 대MERCOSUR 협상에 필요할 수 있는 산업분야별 세분화된 한국과 MERCOSUR간 경쟁력 분석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다른 형태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RCOSUR의 대외정책, FTAA, EU,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의 FTA 협상 추진 배경 및 전략, 협상과정 및 주요내용, 특징 등을 우선적으로 현지 1차 문헌을 통해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관련문헌은 현지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의 1차 문헌, MERCOSUR 사무국 자료, 미주개발은행(IDB) 산하 경제통합연구소(INTAL) 등의 자료를 입수해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되어, 현지 연구자의 평가와 시각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실시해 MERCOSUR의 FTA 협상과 관련한 현지 정책담당자의 경험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1. FTA 추진 현황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MERCOSUR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규모의 경제실현 등 경제효과는 물론 FTAA 협상 등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제3국 및 기타 통합체와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외 확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같은 MERCOSUR의 외연적 확장정책은 2000년까지 MERCOSUR의 총체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한 “2000년 MERCOSUR 실천프로그램(Programa de Acción del MERCOSUR hasta el Año 2000)¹⁾”에 명시되었다.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고 국제법상 법인체의 성격(Ouro Preto Protocol)을 갖게 됨에 따라 MERCOSUR는 제3국, 경제협력 체 및 국제기구와 통합체의 이름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제 대외무역정책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버리고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

아래에서는 그간 MERCOSUR가 추진해왔던 FTA 정책을 남미국가들과의 FTA, 미국, 유럽 등 선진권과의 FTA, 역외개도국과의 FTA 등 세 가지로 대별해 살펴보기로 한다. 단 여기서는 이 책의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FTAA, EU와 FTA,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와 PTA 추진 현황은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다.

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995년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CMC) 결정안 9호(DEC No 09/1995) 참고.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1) 칠레와 FTA 추진

칠레는 MERCOSUR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이었다. 칠레와 FTA 협상은 1994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96년 6월 체결(1996년 10월 발효)되었다. MERCOSUR 입장에서 볼 때, 칠레와의 FTA는 잠재 수출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국가들과 FTA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었다. 특히 FTA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와의 FTA 체결은 MERCOSUR의 협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칠레의 경우 당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을 통한 미국시장 접근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당시 클린턴 정부의 정치력 약화로 신속처리협상권의 의회승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MERCOSUR와의 관계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MERCOSUR와 칠레의 FTA는 2014년까지 완전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자는 협정 체결 즉시 전체 관세의 40%를 인하했다. 그러나 밀이나 밀가루 등 최고 민감 품목의 관세인하기간은 최장 18년으로 설정했다.

MERCOSUR는 칠레의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대외관세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MERCOSUR의 평균 대외공동관세는 12%선인 데 반해 칠레의 경우 평균 수입관세는 이보다 훨씬 낮은 6% 수준이다.

2) MERCOSUR · 안데스공동체(CAN)간 FTA 추진

MERCOSUR와 CAN간의 자유무역협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첫 번째 시기는 1998년 양자간 본격적인 FTA 협상이 개최되기 이전의 협상준비 단계이다. 양 블록의 회원국들은 1995년 2월 중남미통합연합(LAIA) 본부인 몬테비데오에 모여 양자간 FTA 체결을 목표로 제1차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양자간의 협상은 볼리비아가 MERCOSUR와 FTA를 체결하기 전(前)이었기 때문에 4+5 구도로 전개되었다. 이후 양 블록간의 FTA 협상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일정을 둘러싼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지체되었으나 1998년 4월 “양자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협정에서는 양자간 FTA 협상 일정이 2단계로 제시되었다. 먼저 1단계로 양 블록 회원국들은 1998년 9월 30일까지 회원국간의 쌍무협정에 기초한 종전의 협상을 4+4 형태의 새로운 특혜관세협정으로 변경, 동년(同年) 10월 1일부로 발효키로 했다. 2단계로 양 블록 회원국들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전(全) 품목을 포괄하는 FTA 협상을 개시, 2000년 1월 1일부로 FTA를 발효키로 했다.

기본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면서 양자간 FTA 협상은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양 블록간의 FTA 협상은 1997년과 1998년 발발한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²⁾ 이러한 가운데 브라질이 1999년 3월 CAN과의 일방적인 특혜관세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MERCOSUR와 CAN간의 FTA 협상은 새로운 돌파구를 맞게 되었다. 브라질의 CAN과의 일방적인 협상추진 의사표명은 관세동맹을 표방하고 있는 MERCOSUR의 대외협상원칙에는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MERCOSUR는 연초 브라질 금융위기 여파로 발발한 역내 회원국간 통상분쟁으로 분열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브라질의 일방적인 협상추진은 MERCOSUR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켰다. 브라질이 MERCOSUR 회원국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CAN과 단독 협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그간 지체되어온 양 블록간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2) 당시 협상은 농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철강 등 회원국간 민감 품목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계속해서 지체되었다.

었다. 브라질 정부는 CAN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이 종국적으로는 양 블록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이 외에도 브라질 정부는 해알화(貨) 평가절하 이후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CAN 시장에서의 진출을 확대코자 하였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타 MERCOSUR 회원국들은 CAN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로 석유, 농수산물 등 CAN 회원국산 제품과 브라질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시장기반 상실을 우려, 신속한 협상 추진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 회원국들도 브라질과 CAN간의 협상 체결이 양 블록간의 협상 재개를 위한 보다 적절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믿었다.

한편 CAN 회원국들은 MERCOSUR의 주축이 되는 브라질이 양자간의 통합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과 거대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개별 회원국들의 이해가 합치해, 브라질과의 협상에 찬성했다. 1999년 3월 28일 브라질 정부가 CAN과 일방적인 특혜관세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CAN 회원국들은 동년(同年) 4월 21일 브라질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와도 협상 개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CAN간의 협상은 1999년 4월 21일 1차 회담을 시발로 1999년 6월 21일까지 총 네 차례의 회담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협정은 1999년 7월 22~23일 카르도주(Cardoso) 대통령의 페루 방문 시 정식 조인되어 8월 16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MERCOSUR · CAN FTA 협상은 그간 CAN과의 신속한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반대해왔던 아르헨티나가 1999년 10월 CAN과의 협상을 개시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CAN과 아르헨티나는 1999년 10월 28일 1차 협상을 시발로 1999년 3월 27일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을 갖고 2000년 6월 29일 협정을 체결, 8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이 결과 MERCOSUR · CAN FTA는 사실상 제1단계 통합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후 2000년 9월 브라질 주도로 소집된 제1차 남미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양블록간 FTA 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제2단계 FTA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것에 합의했다. 당시 카르도주 브라질 대통령의 주창으로 소집된 정상회담에서 12개국 정상³⁾들은 브라질리아 선언문을 통해 남미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결성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인프라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기로 합의했다.

1차 남미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2002년 5월부터 양자간 제2단계 FTA 협상이 본격 개시되었으며, 2002년 12월에는 2003년 말로 FTA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 2003년 6월 28일 개최된 CAN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키라마선언(Quirama Declaration)을 통해 그간 지연되어온 MERCOSUR와의 FTA 협상을 늦어도 2003년 말까지 종결기로 재차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페루가 2003년 8월 CAN 회원국 중에서는 볼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MERCOSUR와 FTA를 체결했다. 뒤를 이어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개국도 마침내 2004년 10월 18일 MERCOSUR와 FTA를 전격 체결했다. 이에 따라 MERCOSUR와 CAN간의 자유무역지대가 비로소 출범하게 되었다. MERCOSUR와 CAN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간의 FTA는 2005년 초에 발효되었다.

3) 남미국가공동체(CSN) 창설

브라질은 MERCOSUR · CAN FTA 체결의 여세를 몰아 남미 12개국⁴⁾으로 구성된 정치적 성격의 통합체 결성을 추진했다. 2004년 12월 8~9일 페루 쿠스코에서 개최된 제3차 남미정상회담에서 12개국 정상들은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 CSN) 창설을 선언했다.

3) 남미 10개국 이외에 수리남, 가이아나 정상이 참석했다.

4) 남미12개국 = MERCOSUR 4개국 +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 칠레 + 가이아나 + 수리남

CSN 창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정치협력 확대 및 경제통합 심화 △물적(인프라) 통합 강화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수평적 협력 확대 △과도한 관료적 절차에 따른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기구를 활용한 통합 추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및 인프라부문에서의 포괄적 통합 추진 등이다.

2005년 9월에는 CSN 설립 이후 처음으로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이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CSN을 궁극적으로는 남미연합(South American Union)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우선협력 과제로 △정치적 대화 확대 △인프라통합 가속화 △환경보호 △에너지통합 촉진 △남미금융기구 설립 △남미국가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통신부문 협력 강화 등을 지정했다.

CSN 설립은 남미지역의 맹주인 브라질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의 결실이었다. 브라질은 1990년대 중반 MERCOSUR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남미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였고, 2004년 타결된 CAN과의 FTA도 브라질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2000년 처음으로 남미정상회담을 소집하여 남미국가 공동체 설립의 논의를 촉발시킨 데 이어, 세 차례에 걸친 남미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0년 제1차 남미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남미지역인프라통합구상(IIRSA)에도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편 CSN 결성 합의는 남미지역에서 미국주도의 헤게모니에 대한 남미국가들의 집단 반발로도 해석되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워싱턴 컨센서스) 실패에 대한 반발로 좌파 및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속속 등장하면서 반미주의가 팽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들, 특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는 CSN 결성이 비생산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CSN 창설을 통해 남미국가들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 및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CSN 결성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IIRSA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2005년 말 베네수엘라가 MERCOSUR 정회원국 가입을 선언했다. 2005년 12월 9~10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29차 MERCOSUR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를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되었다. 이어 2006년 7월에는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 가입 의정서⁵⁾가 승인되었다.

MERCOSUR는 경제통합 발전 단계상 FTA보다 한 단계 앞선 관세동맹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신에 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하고 있는 4개 회원국은 정회원국(full member)이라 칭한다. 이 과정에서 MERCOSUR는 기존 FTA 체결국들과 경제통합 심화를 통한 결속 강화를 위해 FTA 수준을 뛰어 넘는 관세동맹 단계의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MERCOSUR와 FTA를 체결한 칠레가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칠레는 MERCOSUR와 자국간의 대외관세의 현격한 차이를 이유로 MERCOSUR와 관세동맹 단계의 협력을 기피했다. 따라서 이번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 가입은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MERCOSUR의 확대를 의미한다.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MERCOSUR에 정회원국 가입

5)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베네수엘라가 MERCOSUR의 3대 기본협정인 아순시온협정, 오우루프레투 의정서,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한 올리보스 의정서(Protocolo de Olivos)를 준수키로 합의했으며, 실무그룹을 구성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도입 일정을 작성, 늦어도 4년내에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기존 MERCOSUR 회원국과 늦어도 2013년 1월 1일까지 자유무역을 달성키로 합의했다.

을 신청한 이유는 경제적 이해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동기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연하게 강경 반미노선을 펼쳐오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은 MERCOSUR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포석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은 제29차 MERCOSUR 정상회담에서 “MERCOSUR가 국제협상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정치적인 색채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 차베스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MERCOSUR의 정식 가입을 국내 업계의 의견 수렴없이 정치적 독단으로 결정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을 제외하고 현재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비해 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비교열위에 있어, 베네수엘라 업계는 MERCOSUR 정식 가입에 따른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외관세가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보다 낮은 상황이어서 MERCOSUR 정식 가입으로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관세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MERCOSUR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협상력 제고는 물론 에너지난도 해소할 수 있는 등 정치·경제적 이해가 고루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수년간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소홀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부국인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강화로 에너지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와 에너지 협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의의가 크다.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정상회담 직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3국 대통령은 브라질을 경유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잇는 6,000km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의 사전타당성 검토 협정에 서명했다.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MERCOSUR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미주지역 34개국들은 1994년부터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FTAA 협상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듯이 농업보조금 등 주요 협상쟁점을 둘러싸고 협상 양대 주축세력인 MERCOSUR와 미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상의 협상 시한을 넘겨 당초 목표인 2005년 출범은 무산된 상황이다.

브라질을 비롯한 미주 34개 국가들은 2004년 2월 이후 중단되었던 FTAA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1월 4~5일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제4차 미주정상회의를 가졌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향후 FTAA 진도는 불투명하다.

제4차 정상회의에서 미주정상들은 미주정상회담의 사실상의 핵심 의제인 FTAA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협상 참가국간의 심각한 이견으로 합의된 공동선언문을

표 2-1. 제4차 미주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FTAA 관련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신속 협상 재개 주장 (미국 등 29개국)	미주지역에서 경제통합 과정과 무역자유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인 빈곤퇴치를 위한 고용창출과 민주주의 통치 강화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 △ 균형되고 포괄적인 FTAA 협상 지속 △ 경제발전 및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FTAA 협상 추진 △ WTO DDA 협상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 △ 협상의 투명성 원칙과 시민사회의 참여 원칙 고수 △ 2006년 상반기 FTAA 협상재개를 위해 통상장관회담 개최
관망적 협상 재개 주장(브라질 등 5개국)*	현재 미주지역에서는 보조금 지급과 왜곡된 무역관행으로 인해 균등하고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주: * MERCOSUR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고육지책으로 FTAA 협상의 신속한 재개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롯한 29개국의 주장을 담은 내용과 WTO 차기 통상장관회담의 결과를 고려, FTAA 협상 재개를 논의하지는 브라질을 위시한 5개국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동시에 선언문으로 채택한바 있다.

2) MERCOSUR · EU간 FTA 협상

지난 1999년부터 본격 추진된 MERCOSUR · EU간 FTA 협상은 2003년 11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MERCOSUR · 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최종시한을 2004년 10월로 명시하면서 가속화되는 듯 했으나 양자간 이견을 좁히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MERCOSUR측은 EU의 농산물 개방, 특히 쇠고기부문에서 보다 많은 쿼터를 요구해오고 있는 데 반해, EU측은 투자, 정부조달, 통신, 해운 및 은행부문에서 MERCOSUR측의 보다 많은 양허를 요구해왔다.

MERCOSUR와 EU의 협상 당사자들은 2005년 말로 추가적인 협상완료 시한을 재설정했으나 양자간 극심한 이견으로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양자는 2006년 9월부터 그간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FTAA 협상과 마찬가지로 MERCOSUR · EU간 FTA 협상도 WTO DDA 협상의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DDA 협상 역시 중단된 현재로서는 타결전망이 불투명하다.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MERCOSUR의 역외 개도국과 FTA 논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처음이었다. 양측간의 FTA 논의는 1995년 12월 카르도주 브라질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처음 제기된 데 이어 메넴(Carlos 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996년 8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남남협력에 기초하여 양 블록간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블록간 FTA 창설 및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입장에서 상호 협력기로 하였다. 메넴 대통령은 이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 ASEAN의 남미시장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아르헨티나가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 블록간 FTA를 공식 제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WTO 각료회의에서 양 지역체 통상장관들이 최초로 비공식 회의를 갖고 FTA를 조기에 체결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지역간의 협력은 1997년 2월 메넴 대통령이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를 순방하면서 1997년 7월 개최예정인 제12차 MERCOSUR 정상회담에서 양 블록간의 FTA를 주요 의제로 채택할 것을 역설했다. 같은 해 4월 1~4일에는 아지트 싱 ASEAN 사무총장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방문, 양국 대통령을 만나 1997년 10월 개최되는 제28차 ASEAN 경제장관회담에 맞추어 양 블록간 기업인협의체를 창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급속히 진전되던 양 지역간 FTA 논의는 1997년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이의 여파가 남미에 미치면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에서 좌파 정권이 등장하며 개도국과의 협력인 남남협력이 강화되었다. 이 결과, MERCOSUR는 역외국 중에서는 제일 먼저 BRICs의 하나로 브라질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한 인도와 FTA의 전 단계인特惠무역협정(PTA)을 2004년 1월에 체결하였고, 뒤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축인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⁶⁾과도 같은 해 12월에 PTA를 체결했다.

이 외에도 MERCOSUR는 현재 이집트(2004년), 모로코(2004년)와 FTA 협상을 겨냥한 기본협정을 체결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2004년에 한 ·

6) SACU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MERCOSUR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하여 2005년 말 까지 네 차례 회담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아랍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위해 2005년 5월 10~11일 브라질리아에서 제1차 남미·아랍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양 지역 정상들은 MERCOSUR·걸프협력기구(GCC)간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양자간 FTA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표 2-2. MERCOSUR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내용	체결연도	발효연도
FTA	MERCOSUR · 칠레	1996.6	1996.10
	MERCOSUR · 볼리비아	1996.12	1997.3
	MERCOSUR · 페루	2003.8	
	MERCOSUR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2004.10	2005.2
	MERCOSUR · 멕시코 (현재 느슨한 형태의 FTA인 경제보완협정 체결)	2002.9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중단	
	MERCOSUR · EU	협상 중	
PTA ¹⁾	MERCOSUR · 인도	2004.1	
	MERCOSUR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2004.12	
기본 협정 ²⁾	MERCOSUR · 이집트	2004.7	
	MERCOSUR · 모로코	2004.11	
	MERCOSUR · 걸프협력기구(GCC)	2005.5	
	MERCOSUR · 이스라엘	2005.12	
	MERCOSUR · 파키스탄	2006.7	

주: 1) PTA = 특혜무역협정, 2)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은 FTA를 전제로 한 협력협정.

자료: www.sice.org/agreements/Mercin_e.asp.

라. FTA 정책의 특징

1990년대 중반 이후 MERCOSUR의 외연적 확장 정책은 전략적·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MERCOSUR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

먼저 대내적으로 MERCOSUR는 기존 남미국가들과 맺고 있던 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남미지역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느슨한 형태나마 자유무역 실현을 목표로 쌍무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했다. 중남미 11개국⁷⁾들은 1960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Latin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스페인어 명(名) ALALC)을 설립했으나 자유무역지대 추진이 지지부진⁸⁾하자 이를 쇄신하기 위해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을 통해 명칭을 중남미통합연합(LAIA, 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스페인어 명 ALADI)⁹⁾으로 개칭했다. LAIA 또한 중남미지역 공동시장 결성이라는 당초의 야심찬 목표와는 달리 회원국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초기단계에 머무는 등 수사적인 의미의 경제통합체에 불과했다.¹⁰⁾

7) 11개국은 멕시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등이다.

8) LAFTA의 실패요인은 △ 다자협상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 同 협정의 유연성 미비 △ 민간부문의 현실을 고려치 않음에 따른 민간기업의 저항 △ 역내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갈등 심화 등으로 지적된다.

9) 1999년 7월 26일 쿠바의 가입으로 LAIA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10) LAIA의 경제통합 수단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지역특혜관세제도(Preferencia Arancelaria Regional, PAR)로 同 제도는 역내 저개발국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했으며 회원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을 허용했다. 두 번째로 역내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역 적용협정(Acuerdo de Alcance Regional, AAR), 세 번째로 역내 일부 회원국들 간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용협정(Acuerdo de Alcance Parcial, AAP)이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협정은 점진적인 다자화를 통해 지역통합 심화를 위한 필요조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주요 협력수단은 관세인하 및 교역촉진, 경제보완, 농목축부문 협력, 금융, 세제, 세관 및 보건부문 협력, 환경보존 및 과학기술협력 등 매우 다양하다. 1990년대 등장한 MERCOSUR나 이전부터 지속

이러한 가운데 MERCOSUR가 1995년 관세동맹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LAIA 틀 속에서 체결한 쌍무 특혜관세협정이 대외공동관세를 표방하는 관세동맹과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¹¹⁾ MERCOSUR 회원국들은 기존 남미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협상을 통합체 차원의 협상으로 대체해야 했다. 이같은 내적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MERCOSUR는 중남미통합연합 국가 중 칠레, 볼리비아, 안데스공동체 등과 연이어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역외적으로 MERCOSUR는 1994년 미국이 전 미주대륙을 하나로 묶는 FTAA 창설을 제안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MERCOSUR의 입장에서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 성격이 강했던 FTAA 협상은 이후 2003년 브라질의 룰라(Lula) 정부 출범 이전까지 MERCOSUR 대외정책의 가장 큰 줄기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FTAA 협상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MERCOSUR는 EU와도 FTA 체결을 겨냥한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00년대 초까지 MERCOSUR의 FTA 정책은 남미국가들 특히 안데스공동체와 FTA 협상, FTAA 협상, EU와 FTA 협상 등 3개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MERCOSUR FTA 정책의 중심에는 FTAA가 있었다. 안데스공동체와의 FTA 협상과 EU와의 FTA 협상도 자체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 협상은 MERCOSUR가 FTAA 협상을 추진하는 데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주요 회원국에서 연이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며 기존 MERCOSUR의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종전 MERCOSUR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여있던 FTAA 협상과

되어온 안데스협정도 큰 틀 내에서는 중남미통합연합(LAIA) 부분적용협정의 대상이다.

11) MERCOSUR 회원국들은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면서 대외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상실한 반면에 CAN 회원국들은 불완전한 관세동맹 형태여서 개별 회원국들이 제3국과 단독으로 무역협정을 유지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등 대외정책에 자율성을 갖고 있다.

EU와의 FTA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이를 대신해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역외 개도국과의 FTA 협상(남남협력)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1991년 아순시온 조약(Asunción Treaty)에 근거해 설립된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며 제도적으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MERCOSUR 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오우루 프레투 의정서(Ouro Preto Protocol)에 따르면 통합체내에서 정책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는 공동시장위원회(Consejo Mercado Común, 이하 CMC), 공동시장그룹(Grupo Mercado Común, 이하 GMC), 무역위원회(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이하 CCM) 등 3개 있으며, 이들은 행정사무국(Administrative Office: SAM)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MERCOSUR는 그 밖의 자문기구로서 공동의회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CPC)와 사회경제자문포럼(Socioeconomic Advisory Forum: FCES)을 갖추고 있다.

1) 정책결정기구¹²⁾

CMC는 명실상부한 MERCOSUR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MERCOSUR의

12) Pena & Rozemberg(2005)

목표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을 갖는다. CMC는 4개국의 외교 및 경제 장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알파벳 순서로 CMC 의장직을 맡는다. CMC 위원들은 수시로 회합을 가지며, 최소한 1회기(6개월)당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6개월마다 열리는 CMC 회의에는 회원국의 대통령도 참석하여 정상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CMC의 의사결정은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합의(consensus)라는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우 정치적인 고려가 중시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CMC는 제3국이나 지역과 협정 체결 등 주요한 권한을 대륙 GMC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CMC는 실질적인 대외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으로서보다는 통합체의 커다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역내외(域内外)에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등 정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GMC은 MERCOSUR의 집행기구로서 실질적인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총괄 기구이며, 회원국들의 외교부가 중심이 된다. GMC의 주요 임무는 아순시온 협약의 이행과 CMC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개방, 거시경제 정책 조율, 비회원국 혹은 국제기구들과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고 MERCOSUR하에서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 분과 소그룹의 조직·조정·감독, 주요 이해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소집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GMC는 각 회원국 출신의 상임위원 4명과 호선위원(alternate members) 4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외교부, 경제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산업, 외교, 경제관련 기구, 그리고 중앙은행을 대표한다. 특정 회원국가가 임명한 GMC 위원들은 GMC에서 그 특정국가의 국가섹션(National Section of the GMC)을 구성하게 된다.

GMC 역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을 시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며 회원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언제라도 특별회의가 소집될 수 있으며, 주최국의 대표단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조직한다. GMC의 의사결정

도 모든 회원국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GMC 산하에는 공식적으로 14개의 실무소그룹(Work Subgroups)을 두며 의사록(minutes of the decisions)을 작성하여 CMC에 제출, 심의하도록 하고 MERCOSUR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소그룹 분과의 정기회의는 공동시장 그룹 행정사무소나 알파벳순으로 회원국들에서 분기별로 개최된다. 주요 활동은 준비단계와 결정단계로 대별되는데, 준비단계에서는 소그룹 분과 위원들로 각 회원국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결정단계에서는 회원국의 공식 대표들만 참석한다. 민간부문의 대표단은 소그룹 분과 활동과 연관된 상품의 생산, 분배, 소비 단계에 관련된 대표들로 회원국별로 최대 3명까지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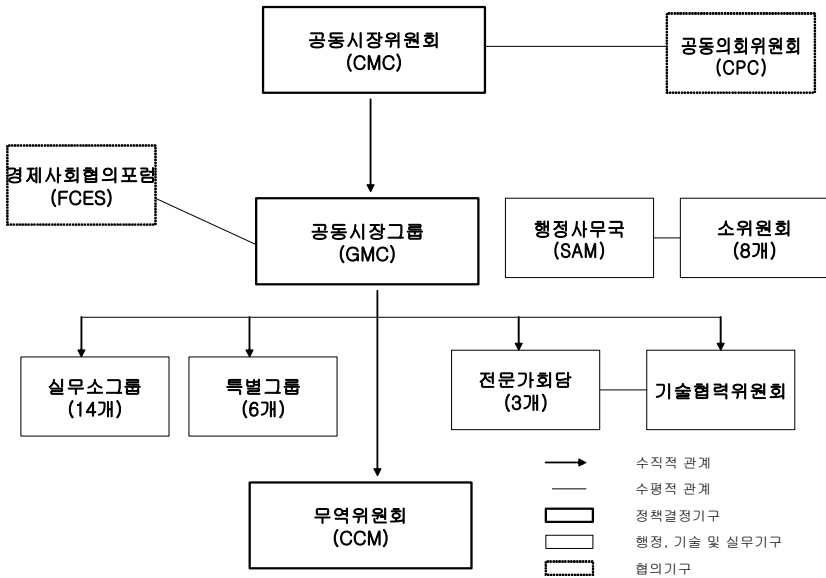
CCM의 주요 기능은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된 공동무역정책 제도들이 관세동맹 운영에 적용될 수 있도록 MERCOSUR 집행부의 기능을 보좌하는 것이다. MERCOSUR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교역 및 공동무역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CCM은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4명의 상임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된다.

CCM 회의는 최소 월 1회 개최되며 회원국이나 MERCOSUR 집행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된다. CCM은 MERCOSUR에서 채택된 무역정책의 적용과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할 시에는 관련부문의 규정에 대한 안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MERCOSUR 무역 및 관세 문제와 관련한 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외공동관세하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의 조정도 이에 해당한다.

무역위원회는 ① 관세 및 상품분류, ② 관세문제, ③ 무역규범, ④ 경쟁왜곡공공정책, ⑤ 경쟁보호, ⑥ 무역구제 및 세이프가드, ⑦ 소비자 보호 등 7개의 기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SAM은 다른 MERCOSUR 기구들에 대해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문서를 보관하고 MERCOSUR 공보(MERCOSUR Official Bulletin)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판으로 출간한다. 또 SAM은 모든 회원국과 기구들의 수많은 결정사항들과 관련된 한 내용을 널리 홍보(Communicate)하는 책임을 맡는다.

그림 2-1. MERCOSUR의 정책결정 기구



2) 자문기구

MERCOSUR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자문이나 권고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는 공동의회위원회(CPC)와 경제사회협의포럼(FCES)이 있다.

먼저 CPC는 회원국들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CPC는 회원국별 16명의 현역의원으로 구성된 64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같은 수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4명의 의장단에 의해 운영된다. CPC는 자문 및 의사결정 기능과 더불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CPC의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통합추이를 관찰하여 각국 의회에 정보 제공
- (b) 미래의 MERCOSUR 의회 발족을 위한 필요 조치
- (c) 바람직한 통합추진에 관한 권고서를 GMC를 통해 CMC에 통지

특히 CPC의 중요한 기능은 MERCOSUR 차원에서 협상된 결정을 각국의 국내 법으로 통합시키는 가교 역할에 있다. CPC 회의는 일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회의가 열린다. CPC의 결정은 의원들의 합의에 의한 다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FCES는 민간을 대표하는 자문기구로서 회원국들의 다양한 사회·경제부문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한다. 따라서 대외협상의 준비단계 및 양허안 교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FCES는 4개 회원국 경제 및 사회분야 대표로 구성된다. FCES에서 제기된 사안은 권고형태로 공동시장그룹에 전달된다. 각 회원국 동수로 구성된 FCES는 이론상으로 협상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 창구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사회의 참여는 협상의 주요의제 개발에 대한 의견교환에 머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같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ERCOSUR의 대외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살펴본다.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협상 참가자, 협상분야, 협상절차 등에 따라 다섯 단계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협상의제 결정(agenda setting)

단계이다. 즉 어느 상대국과 FTA 등 무역협상을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고위관리 등 정부가 기본적인 결정을 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역할은 미미하며 시장접근을 필요로 하는 특정 기업부문이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단계는 협상방식(rule making)의 결정 단계이다. 여기서는 협상시기 및 협상 수단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도 정부(공무원과 관료)가 협상을 주도하는 데 반해 민간부문과 협의는 간헐적이다. 세 번째 단계는 양허요청 및 양허(requests & offers)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간 소극적이었던 업계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의도 빈번해진다. 네 번째 단계는 체결된 협정이 국내법으로 제정되는 단계(internalization of the agreement)이다. 이 단계에서는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협정의 실행단계(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phase)이다(Botto 2004).

지금까지 MERCOSUR는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개도국과의 협상 시와 선진권과의 협상(FTAA 협상이나 EU와의 FTA 협상) 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MERCOSUR의 대외정책결정과정을 MERCOSUR 통합발전 과정과 FTAA 협상과정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MERCOSUR 발전 과정에서 대외정책결정 과정¹³⁾

가) 협상의제 결정

MERCOSUR 회원국에서 MERCOSUR 경제통합체 창설을 위한 협상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었다. 민간부문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에서 중추 산업인 자동차산업이 협상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¹⁴⁾

13) Botto(2004), pp. 4~11.

14) MERCOSUR 출범 이후 자동차부문은 시장자유화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아직까지 특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협상방식 결정

MERCOSUR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해서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협상방식은 전적으로 정부(각료 및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는 간헐적이었다. 그 이유는 먼저 협상의 기술적 문제를 다룰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제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회원국 중에서 석유화학 및 철강업체 등 일부 대기업만이 MERCOSUR 규정 결정에 참여했다. 두 번째로 이 단계에서 민간부문은 협상 참가비용이 높기 때문에 굳이 협상과정에 참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핵심이었던 대외공동관세 결정은 브라질 정부가 주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이자 보호 산업인 자동차, 섬유, 신발, 통신 장비산업의 이해를 반영시켰다.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협상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대외공동관세 협상은 먼저 MERCOSUR의 집행기구인 GMC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4개 회원국 공무원에 의해 추진되었다.

대외공동관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외교부는 민간부문과의 협의과정과 정부 협상담당자와 기업대표간의 협상을 거쳤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업계와의 협의없이 대외공동관세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남미국가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조직도 MERCOSUR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시도했다. 남미지역의 노동 및 환경단체들은 MERCOSUR 차원의 노동규범 제정, NGO, 업계 및 노조의 MERCOSUR 정책결정 과정 참여채널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중에서 민간부문의 통합체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는 오우루 프레투 의정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교환

이 단계에서 민간부문은 특혜대우를 얻기 위해 개별국 차원에서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친다.

아순시온 조약에서 채택한 자동적, 선형적, 점진적 관세삭감 원칙 때문에 회원국들은 양허요구 및 양허와 관련해 네가티브 방식을 취했다. 정부 간 협상은 오직 국내 민감부문 보호를 위해 양허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양허요구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 일정 연장 요구와 관세인하 일정에서 해당 품목의 제외에 대한 양허요구였다.

관세인하 일정 연장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민감 품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여기서 각 회원국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브라질의 경우 민감 품목수는 29개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211개, 파라과이는 435개, 우루과이는 964개 품목에 달했다.

대외공동관세 예외 요구 역시 주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측의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금력있고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들이 많은 부문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저항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제지, 섬유, 신발 및 목재 등 대기업부문에서도 거셌다. 특히 섬유분야의 경우 MERCOSUR 평균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공동관세 예외 인정을 요구했다.

브라질의 경우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 선정은 보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1995년 이후 그간 폐지했던 무역 및 산업정책에서 부문별 접근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해 브라질 정부는 아직까지 경쟁력은 없으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인 컴퓨터 및 통신부문에 대한 대외공동관세 예외를 요구했다.

라) 협정의 국내법화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체결된 무역협정은 각 회원국에서 시행을 위해 의회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역할이 미미했던 의회가 대외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순시온 협약, 오우르 프레투 의정서, 브라질리아 의정서 등 MERCOSUR의 3대 기본협정은 각 회원국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그러나 MERCOSUR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각국 의회 내에서 반대에 직면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MERCOSUR의 CPC의 주요 기능은 MERCOSUR 차원에서 결정된 협정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결정이 각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예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브라질의 경우¹⁵⁾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의회는 보호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민간부문과 지방의 이해를 대변한다. 사탕수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의 단적인 예이다.

사탕수수는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대표적인 생산 작물로 전통적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다. 정부의 보호정책이 없을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사탕수수 산업은 브라질산 사탕수수와 경쟁으로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를 반영해 CMC는 1996년에 모든 무역자유화프로그램에서 사탕수수를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탕수수 의정서에 서명했고 이 의정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각 회원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사탕수수협회는 북서부 출신 상원의원에게 이 의정서 승인

15) 브라질의 경우 의회는 MERCOSUR의 논의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의회보다는 행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친다. 그 이유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강력한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제 전통에 따라 브라질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도 일관성이 없다. 정당제도의 변동성이 높아 행정부와 국내이해단체가 의회를 통해 어느 특별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을 거부토록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에는 페론당과 급진당의 도움으로 사탕수수 보호 및 무역자유화에서 사탕수수 제외를 골자로 한 국내법이 의회에서 신속하게 승인되었다.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의회의 법 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탕수수 의정서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탕수수부문은 자동차부문과 더불어 MERCOSUR 자유화과정의 대표적인 예외 부문으로 남아있다.

각 회원국 내에서 MERCOSUR 관련 결정에 대한 의회의 반대는 MERCOSUR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도 각 회원국 의회에서는 투자, 서비스, 경쟁정책 등과 관련한 MERCOSUR 차원의 결정들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마) 협정의 실행

무역협정 실행단계에서는 업계가 주인공이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회원국간 통상 분쟁과 이의 해결을 둘러싼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MERCOSUR 출범과 더불어 회원국간 통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1999년 신흥시장 금융위기 여파로 브라질이 급격한 해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MERCOSUR 회원국간 통상 분쟁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2) FTAA 협상에서 대외정책 결정과정¹⁶⁾

가) 협상의제 결정

MERCOSUR에서 FTAA 협상참여 결정은 각 회원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

16) Botto(2004), pp. 11~16.

어졌다. 그러나 이 참여 결정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업계의 이해가 반영되었다. MERCOSUR 내에서 FTAA 협상참여를 주도한 세력은 농업계와 광업계였다. 그에 반해 브라질에서 제조업부문은 미국과의 경쟁으로 MERCOSUR 시장에서 특허적 지위를 상실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나) 협상방식 결정

다른 개도국과의 협상에서와 달리 MERCOSUR 회원국은 FTAA 협상에서 국내 관련부처 및 이익단체간 이해조정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FTAA 협상의 많은 사안과 전문성을 다루기 위해 행정부령을 통해 외교부내에 FTAA 전담부서(SENALCA)를 설립했다. SENALCA는 FTAA 협상에 대한 국내입장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정부기구의 참여를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FTAA 협상 진전에 따라 특정이슈 중심의 부처간 그룹을 조직하기도 했다. 관련부처의 실무 대표로 구성된 부처간 그룹은 FTAA 각 협상그룹의 논의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EU와의 FTA 협상 과정에도 적용되어 EU와 FTA 협상을 전담하는 부서(SENAEUROPA) 설립으로 이어졌다.

FTAA 협상의 국내 논의과정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에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컴퓨터 등 특정 산업분야별로 협의과정을 거쳐 이의 논의를 협상에 반영했다. 그러나 FTAA 협상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특정 산업단체가 아닌 포괄적 단체, 즉 전국경제인연합회(CNI), 전국중앙노조(CUT), 전국농업연합회(CNA) 등을 SENALCA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했다.

업계 및 노조와 마찬가지로 NGO, 의회 및 학계도 SENALCA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협상방식을 정하고 협상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는 배제되었다. 의회도 MERCOSUR 결성 과정에서와는 달리 FTAA 협상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의회는 산업보호를 주장하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여론의 인식과 우려를 대변했다.

다)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교환

이 단계에서 협상은 MERCOSUR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과 MERCOSUR 차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4개 회원국 정부는 업계에 무역자유화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부 및 외교부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 협상대표단이 국내 입장을 조율하고 조율된 입장을 담은 양허요구 및 양허안을 MERCOSUR에 제출한다. MERCOSUR 차원의 양허안은 최소공분모를 통해 결정된다. 최소공분모 분야와 상품은 어느 회원국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진권과 FTA 협상의 경우 MERCOSUR 회원국들은 회원국간 입장의 조율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강요받았다. EU와의 FTA 협상의 경우 EU측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에 양허요구 및 양허안을 제출하기 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FTAA 협상의 양허요구 및 양허안 교환단계에서 아르헨티나는 외교부령을 통해 민관위원회를 창설했으나 그 활동은 미미했다. 업계의 경우 관세문제를 제외하고는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기술적 문제를 다룰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실제로 업계는 투자나 경쟁 등 새로운 무역협상 이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었다.

2003년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FTAA 협상에서 협상 투명성 제고와 협상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옆방제도(next room door)¹⁷⁾를 도입했다.

표 2-3. MERCOSUR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비교

	MERCOSUR	FTAA
의제설정	- 결정의 주체는 정부 - 업계의 참여 미미 - 자동차업계가 중추적 역할	- 결정의 주체는 정부 - 업계의 참여 미미 - 농업부문과 광업부문이 협상 적극 지지 - 제조업부문 우려 표명
통상규범 제정	- 결정의 주체는 정부 - 민간부문의 참여 간헐적 - 회원국 중에서는 브라질이 협상 주도 - MERCOSUR 산하 기구를 통한 민간부문의 협상 참여 시도	- 결정의 주체는 정부 - 새로운 정부기구 설립 • FTAA 협상 전담부서(SENALCA) • 특정이슈 중심의 부처 간 그룹 조직 - 민간부문의 참여 조직적, 체계적 - 업계 참여: 종전의 부문별 대표에서 전체 업계 대표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교환	- 활동의 주체는 업계 - 대기업의 두드러진 활동	- 협상은 국내협상과 MERCOSUR 차원의 협상 등 2단계로 진행 - 각 회원국은 업계와 협의 거쳐 국내입장 결정 - 결정된 국내입장은 MERCOSUR에 제출 → MERCOSUR 차원의 양허 결정(최소공분모)
협정의 승인	- 결정의 주체는 의회	
협정의 실행	- 활동의 주체는 기업 - 통상 분쟁 제소 및 해결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MERCOSUR는 국제법상 법인(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law)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MERCOSUR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MC는 MERCOSUR의 이름으로 제3국, 국가그룹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7) 연방제도란 협상장 옆에 여러 개의 방을 마련해 두고 이익단체 대표들에게 방을 하나씩 배정한 뒤 협상 내용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칠레가 미국과의 FTA 협상 시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했다.

그러나 MERCOSUR는 아직까지 초국가적 기구라기보다는 정부간 기구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MERCOSUR 통합기구의 결정은 각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같은 MERCOSUR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해 여기서는 MERCOSUR의 대외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로서 통합기구에서의 참여자와 대별되는 각 회원국에서의 참여자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아르헨티나¹⁸⁾

가) 행정부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역정책 결정과 국제무역협상은 경제부(ME)와 외교통상부(MRECIC)가 양분하고 있다. 경제부는 무역정책 전략수립과 실행을 맡고 있는데 반해, 외교통상부는 국제무역협상과 수출진흥활동을 수행·조정하고 있다.

경제부는 행정부 내에서도 가장 힘있는 부처이다. 경제부는 2001년 3월에 무역실(Trade Secretariat)을 신설해 무역정책기능을 강화했다. 무역실은 무역정책국과 대외무역관리국을 두고 있다. 무역정책국은 국제무역협상에서 정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계획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에 반해 대외무역관리국은 수출·입, 무역구제제도, 원산지규정,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프로그램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무역·국제경제관계·영사업무국(Trad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Affairs)이 국제무역협상 수행과 무역촉진정책의 기획 및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국제무역·영사업무국은 국제무역정책과 수출진흥활동 수

18) Bouzas & Avogadro(2002), pp. 1~11.

행을 책임지며 해외무역대표부를 관리하고 있다. 중남미통합·MERCOSUR국은 특혜무역협상을 맡고 있으며 기존 무역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 부처 내에서 무역정책 집행과정에는 국가무역위원회(CNCE), 재정수입연방관리국(AFIP), 대외무역투자은행(BICE), 아르헨티나수출진흥청(Fundación Export-Ar) 등이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 초 MERCOSUR 협상 과정에서 부처간 체계적인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MERCOSUR 출범 초기 통합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과를 반영해 정부부처 내에서 정책조율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MERCOSUR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처간의 정책조율도 더 이상 원활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0년에 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조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대외무역위원회(Inter-Ministerial Foreign Trade Commission: CICI)를 신설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율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방대외무역위원회(CFCE)가 연방·지방정부간 무역관련 시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조정하고 촉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나) 업계

지난 199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무역정책 결정과정과 무역협상에서 업계의 역할은 크게 바뀌었다. 먼저 산업구조조정, 국제화 진전, 경제력 집중의 결과, 기업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생산부문의 구조조정의 결과, 중소기업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면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아르헨티나산업연맹(Union Industrial Argentina) 등 전통적인 기업단체의 영향력도 축소되었다. 그에 반해 국제화와 경제력 집중으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기업단체들은 심각한 예산부족에 직

면했다. 이에 따라 기업단체들의 기술집약적인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아르헨티나농촌협회(Sociedad Rural Argentina), 아르헨티나수출업자 위원회(Cámara de Exportador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등 극소수 단체를 제외하고 국내기업 단체들은 기술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 및 전문부서의 부재로 각종 무역협상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MERCOSUR 등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특화된 부서나 위원회가 속속 설립되었으나 재원부족과 열악한 기술 인프라 사정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과정의 성격도 업계의 체계적이며 공식적인 정책결정 참여를 가로막았다. 정부기구의 높은 파편화 수준, 부처간 정책조율의 미비 등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종 로비단체의 압력이 빈번하다. 최근까지 대외무역국이 정부와 민간의 유일한 공식적 대화창구인 민간대외무역자문위원회(CACE)를 담당해왔으나 이마저도 대표성 부족과 과도한 구성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2000년 폐지되었다.

1995년 MERCOSUR내 FCES가 설립되면서 경제통합과정에 업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르헨티나 업계는 계속해서 비공식적 창구를 통해 국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업계는 또한 실무소그룹, 기술위원회, 임시협의회 등을 통해 공무원과 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실무협상에 관여해오고 있다.

2) 브라질¹⁹⁾

가) 행정부

브라질에서 대외무역정책은 외교부, 개발상공부, 재무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그

19) Veiga(2002), pp. 13~21.

러나 실질적인 대외무역정책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있다. 카르도주 정부시기 다소 약화되었던 대외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외교부의 위상은 2003년 톨라 정부 집권 이후 다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1995년 대외무역정책 결정 시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 부처간 협의의 장인 대외무역위원회(CAMEX)를 신설했다. 현재 CAMEX가 정부 내 대외무역정책의 조율을 맡고 있다.

나) 업계

전통적으로 브라질에서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MERCOSUR 설립과정에서 이러한 전통은 잠시 단절되었다.

MERCOSUR 출범 이후 산업부문별 위원회 설립을 통해 기업계와 정부간의 대화채널이 복원되었다. 이후 업계와 정부 간의 교류는 MERCOSUR의 실무그룹 활동과 대외공동관세 설정과정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1996년 전국경제인연합회(CNI)는 무역협상만을 전담하는 제조업계, 농업계, 서비스업계로 구성된 브라질기업연합(Coalizacao Empresarial Brasileira: CEB)을 신설했다(Veiga 2006).

CEB는 1997년부터 브라질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협상과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무역협상에서 CEB가 채택한 입장은 2002년까지 정부가 취한 입장과 거의 일치했다.

CEB는 다양한 업계의 이해를 조율을 통해 연방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CEB는 옆방제도(next door room) 도입을 통해 정부의 무역협상을 감독해왔다.

그러나 2003년 톨라 정부의 대외전략 수정에 따라 그간 정부와 CEB 간의 밀월

관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CEB는 정부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안데스공동체(CAN)와의 FTA를 추진하는 반면 FTA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은 2004년 6월 CEB가 외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잘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CEB는 현 정부의 무역정책이 경제적 이해보다는 정치적, 지정학적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협상전략 결정 논의과정에서도 업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Veiga 2006).

3) 우루과이²⁰⁾

가) 행정부

우루과이에서는 외교부가 대외정책의 전략수립, 의제설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 경제재무부와 공업에너지광업부도 대외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또한 협상과정에서 부처간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교부와 경제부가 주축이 된 부처조정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아순시온 조약 체결 직후인 1991년 10월 우루과이 정부는 정부의 자문기구로 산업부문별위원회(COMISEC)를 설립했다. 조합, 노조, 업계 대표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민간부문의 관심과 제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COMISEC는 MERCOSUR 출범 초기에 활발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들어 초기의 동력을 상실해 단순 정보교환(정보제공) 기능에 머물고 있다.

나) 업계

MERCOSUR 창설 과정에서 각 산업계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농업계는 매우

20) Quijano(2002), pp. 75~89.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데 반해, 제조업계는 관세인하 일정 및 대외공동관세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에 반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입에 종사하는 수출입업자들은 MERCOSUR 회원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MERCOSUR 창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4) 파라과이²¹⁾

파라과이는 전통적으로 정부 부처내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국제무역협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1999년 경제통합부(Ministerio de Integración) 폐지 이후 외교부(MRREE)²²⁾가 경제통합과 무역문제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을 맡아오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부의 경제정책국과 수출투자진흥국(Pro Paraguay), 재무부 및 산업무역부(MIC)가 대외경제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금융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주무부서인 농업부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는 MERCOSUR의 실무소그룹 회의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파라과이는 경제통합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부처간 정책조율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은 여전히 비공식적이며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등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외교부와 산업무역부간의 정책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처간 경쟁의

21) Giordano(2004)

22) 외교부내에서도 차관급의 경제관계 및 경제통합실(Subsecretaría de Relaciones Económicas e Integración)이 대외경제정책 조정을 전담하고 있다.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 결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창구는 없다. 다만 MERCOSUR의 CPC 국가대표로 지방의원이 MERCOSUR 논의 과정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경제통합부가 폐지되면서 경제통합 및 무역정책에서 민간부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유기적 채널이 사라졌다. 실제로 민간부문은 Pro Paraguay 위원회 참석, 산업무역부 기업인 자문위원회,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 참석 등 3개의 창구를 통해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4개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 주요 주체들과 정부 기관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표 2-4] 및 [표 2-5]와 같다.

표 2-4. MERCOSUR 회원국에서의 대외무역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 및 내부조정기관

	주요 행위자 (정부 부처)	내부조정기관
아르헨티나	- 경제부 - 외교부 - 농업부	- 외교부와 경제부간 위원회
브라질	- 외교부 - 개발상공부 - 재무부	- 대외무역위원회(CAMEX)
우루과이	- 경제·재무부 - 외교부 - 공업에너지광업부	- 부처조정위원회(경제부와 외교부)
파라과이	- 외교부 - 재무부 - 산업무역부	- 외교부내 경제관계·경제통합실 (subsecretaría de Relaciones Económicas e Integración)

자료: Jordana & Ramio(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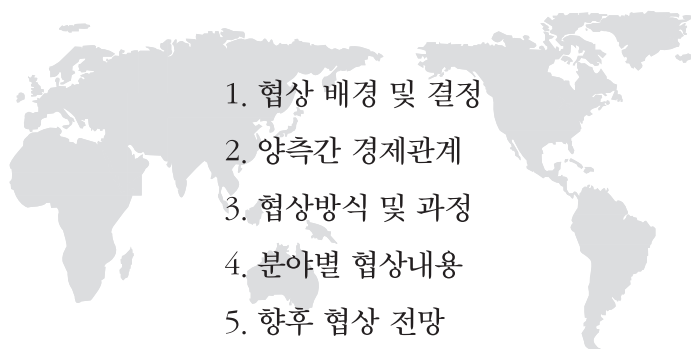
표 2-5. MERCOSUR 회원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의 특징

	정책결정 부처간 권력의 양상	대통령의 역할	의회의 역할
아르헨티나	- 경제부와 외교부간 영향력 비등	- 간섭 미미 - 소극적	- 영향력 미미 - 소극적
브라질	- 외교부 우세 - 일부 분야에서 개발상공부 개입(MDIC)	- 매우 적극적	- 소극적
우루과이	- 경제재무부 우위: 경제·무역정책 담당 - 외교부: 국제관계	- 영향력 제한적 - 외교부와 경제부간 갈등시 주요 중재 역할	- 영향력 제한적
파라과이	- 외교부 우세	- 영향력 제한적	- 영향력 제한적

자료: Jordana & Ramio(2002)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미주지역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중남미를 휩쓸었던 외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신자유주의 개방화정책을 도입하면서였다. 또한 정치적 의미에서 1990년대에 구소련의 붕괴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냉전의 국제정치 틀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필요성이 미주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당시 양 지역간 관계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1990년 6월 27일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범미주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이었다. EAI의 주요 협력사업은 외채경감, 무역증대, 투자확대, 환경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핵심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칠레 남단의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에 걸치는 전미주대륙의 자유무역지대화였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시장 개혁이야말로 지속적 발전 및 정치안정의 열쇠라는 중남미에서의 점증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EAI를 강조했다. 그는 미주에서의 자유시장 개혁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중남미의 각국 또는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그룹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돼있으며 (중략) 그 첫걸음으로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추진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협상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들과는 쌍무적인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s)을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I 발표는 개발도상권인 중남미와의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획기적인 구상이었다.²³⁾ 이에 따라 1990년 말까지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23) EAI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 중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은 외채경감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NAFTA 협상에 미국의 무역과 투자정책

온두라스, 멕시코 등 7개국이며, 1991년에는 MERCOSUR가 각각 미국과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1993년까지 중남미의 30개국이 미국과 15개의 기본협정을 맺었다.²⁴⁾ 그러나 당시 미국의 진정한 관심은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에 집중되었다. EAI 선언이 나오기 직전인 1990년 6월 10일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 멕시코 대통령은 미·멕시코 양국간 자유무역을 제의한 바 있었으며, 부시 대통령의 언급처럼 EAI의 정신은 NAFTA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FTAA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반면 FTAA의 또 다른 탄생 배경은 역내에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확산시켜 안정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미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시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중남미의 중요성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자면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지역이고 보니 FTAA라는 제도적 틀에 묶어 품에 안고 가지는 의도인 것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경쟁상대로 보는 반면 중남미는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체를 구성하는 가장 큰 결정요인 중의 하나인 중남미시장 확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다분히 희석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총수출액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와 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8%이다(1999년 통계). 미국은 이미 다른 모든 중남미 국가를 합한 것보다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많다. 따라서 미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과의 통합이 커다란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FTAA 협상이 원칙적으로 미주 34개국간 협상이나 실질적으로는

에 대한 모든 에너지를 소진, 더 이상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는 평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robel(1998), pp. 547~561 참고.

24) Albert Fishlow(1994), p. 70 참고.

현재 협상 의장국인 미국과 브라질(MERCOSUR)간의 협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바, 주요 분석은 미국과 브라질간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양측간 경제관계

미국과 MERCOSUR와의 교역은 199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대MERCOSUR 수출은 1997년과 비교하여 2002년에 40% 감소하였다. 반면 MERCOSUR의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에 40%가 상승하였다. 그 원인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위기와 환율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MERCOSUR와의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곧 상황이 급속히 바뀌게 되었다. 즉 2001년도에 MERCOSUR와의 교역에서 미국은 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2년에는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양자간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컴퓨터, 전자기기, 항공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공산품을 수출하고, MERCOSUR는 화석연료, 소형비행기, 신발류, 철강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양자간 교역에서 공산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다. 물론 MERCOSUR 국가간 편차는 발견할 수 있는데 브라질의 대미(對美)공산품 수출비중은 75%에 달하지만 아르헨티나는 35%에 불과하다.

미국과 MERCOSUR의 교역은 2001년 통계로 보면 38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미국과 멕시코의 2,320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4~6배 정도 되는 MERCOSUR의 관세를 낮추고 섬유, 봉제, 신발류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를 조정하여 미·MERCOSUR가 NAFTA와 유사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수년내에 무역은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cot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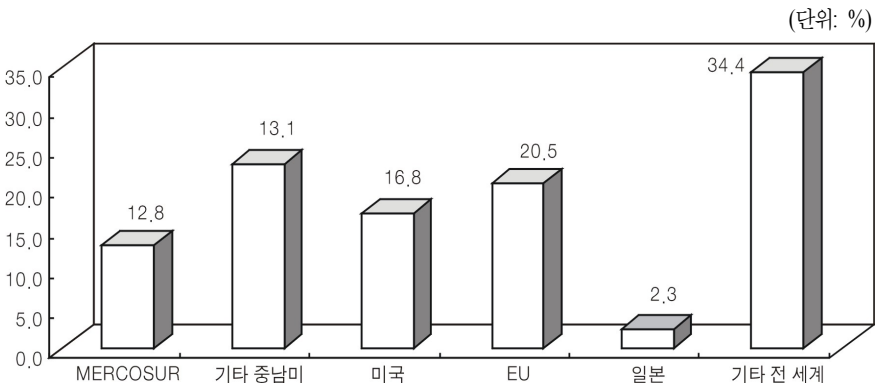
무역과 달리 투자에 있어 미국의 대MERCOSUR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 미국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170억 달러였던 것이 2001년에는 505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의 투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첫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공기업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통신기업을 인수한 것, 둘째, 남미 최대의 브라질시장과 주변국에 수출하기 위한 제조업 직접 투자가 대규모로 단행된 것을 꼽을 수 있다.

MERCOSUR는 협상초기부터 협상주도국으로서 FTAA 협상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이 FTAA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FTAA 출범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 제고 도모 등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MERCOSUR의 FTAA 협상 참여는 미국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접근 보장, 회원국간 산업내 무역 확대 및 생산적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FTAA에서의 배제에 따른 무역 및 투자전환효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방어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일부에서는 MERCOSUR의 대미 수출 비중이 중남미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30% 수준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이 다변화(Global Trader)되어 있기 때문에 FTAA 출범에 따른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MERCOSUR 회원국 중 역내 선진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대미 수출이 EU 및 아시아시장에 대한 수출보다도 제조품에 집중되어 있어 대미 시장접근은 이들 제조업부문의 이익확대는 물론 MERCOSUR와 미국간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확장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MERCOSUR의 대미 및 대중남미시장 수출이 상대적으로 제조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MERCOSUR가 FTA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은 매우 크며, 제조품의 높은 가격탄력성에 비추어 MERCOSUR의 수출은

북미시장은 물론 중남미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MERCOSUR 가 FTA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발될 투자전환효과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다(Veiga 1997).

그림 3-1. MERCOSUR의 수출시장 비중(2005년 기준)



자료: Centro de Economia Internacional(www.cei.gov.ar)

그러나 FTAA 참여에 따른 이와 같은 긍정적 요인 이 외에도 부정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FTAA 참여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먼저 MERCOSUR의 교역이 다변화되어 있음은 물론 MERCOSUR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외국 차별에 따른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및 교역상실에 따른 무시못할 비용이다. 또한 급격한 무역자유화 이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FTAA 출범에 따른 급격한 무역자유화는 지금까지 브라질 정부에 의해 비교적 높은 보호무역혜택을 받아왔던 부문, 즉 브라질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기도 한 전자, 화학, 기계, 제지 및 자동차분야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들은 FTAA 출범 시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FTAA 출범 시 역내관세의 인하에 따라 브라질의 주요 1차산품인 곡물류,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공산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크게 뒤지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능한 한 관세인하 일정을 최대한 연기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의 평균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FTAA 출범에 따른 관세인하는 브라질의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TAA 참여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MERCOSUR의 대FTAA 정책의 전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캐나다 및 미국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자국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신속한 무역자유화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 협상의 속도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자유화 범위 및 속도를 둘러싼 이견은 FTAA 협상의 주축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대립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1997년 5월 벨로리존테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측이 일괄적·동시적 협상을 주장한데 반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표 3-1. MERCOSUR에 대한 FTAA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비교

	효과
긍정적 효과	- 미국시장 접근 보장 - FDI 확대 및 산업내 무역 촉진 - 경제개혁 공고화 ⇒ 대외신인도 제고
방어적 효과	- FTAA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배제적 위험 - 무역전환 및 투자전환효과 발생 - 미국과의 관세율 차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및 자국산업의 피해 우려
부정적 효과	- 거시 및 구조개혁 이행조정 - 미시경제정책 운영상의 제약 - 환경 및 노동규정 강화 - 역외국(非FTAA회원국)에 대한 차별 및 이에 따른 역외국의 보복

자료: Pedro da Motta Veiga(1997)

MERCOSUR의 경우 시장접근을 가장 후순위로 하는 점진적·단계적 협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미주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협상의 일반원칙을 세워 FTAA 협상의 기본지침으로 삼았다(www.ftaa-alca.org).

- 상품과 서비스의 협상은 GATT(1994) 제24조와 GATS 5조에 부합할 것.
- 당사국간 경제발전도의 차이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허안 작성 등 협상에 임해야 함.
- 농업 및 비농업 상품, 서비스, 투자와 정부조달은 점진적 자유화를 원칙으로 함.
- 협상의 경과에 따라 양허안 수정 가능
- 자국의 양허안을 제출한 후에 타국의 안을 열람할 수 있음.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관련 당사국들은 시장접근, 농업,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조금, 경쟁정책, 분쟁해결의 9개 분야에서 분야별 협상반을 구성하였다. 9개 협상반은 회원국 각국이 돌아가며 의장을 맡았고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가 총괄 감독하였다. 자문기구로 <약소국에 대한 컨설팅 그룹>과, <노

동, 학술, 환경 NGO가 참여하는 시민사회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민관합동 전자상거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FTAA 협상시안은 4개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분야별 작업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의제선정, 일정논의, 장관급 및 정상회담 준비, 협정문 초안 작성, 개념에 대한 정의, 자문가 초청 세미나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회의 때에 불참한 국가도 다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02년 9월 23~25일에 개최된 투자분과의 제18차 회의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협상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협상은 협상장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시민사회의 공식적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서를 통해 매 회의 때마다 관련 작업반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OAS, IDB, CEPAL 등 역내 국제기구가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당사국들은 1994년 이후 모두 4회의 정상회담과 8회의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9개 분야 작업반을 구성하여 각 25회 이상의 회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하였다. FTAA 제1차 협상안은 2001년 퀘벡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제2차 협상안은 2002년 11월 키토 장관급회담에서 채택되었다. 당시 브라질과 미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제2차 협상안을 채택한 키토선언은 협상

글상자 3-1. 키토선언의 주요 내용

- 1) 제2차 협상안 준비
- 2) 다음 단계에서의 협상방법과 절차에 대한 협의
- 3) 2002년 5월부터 시장접근에 대한 협상개시
- 4) 기본관세의 보고방법에 대한 정의
- 5) 협상시 경제발전도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6) 협상시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보조하기 위한 미주개발프로그램(Program of Hemispheric Cooperation) 설치

자료: <http://www.ftaa-alca.org>

의 전체적인 골격을 다졌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 www.ftaa-alca.org](http://www.ftaa-alca.org)).

협상 초반기 FTAA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MERCOSUR가 2000년 이후 매우 주춤하는 자세를 보였다.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 여파로 회원국간의 통상 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MERCOSUR가 분열조짐을 보인 데 이어 2000년에도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MERCOSUR의 대외적인 발언권이 약화되었다. 경제통합체 양대 주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연이은 경제위기에 따른 MERCOSUR 회원국간의 통상 분쟁 지속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역내 회원국들은 물론 준(準)회원국인 칠레가 다시 미국 시장접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브라질이 비록 이와 같은 회원국들의 이반(離反)을 막고 SAFTA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0년 8월 말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질리아에서 남미정상회담을 소집, 2002년 출범을 목표로 SAFTA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²⁵⁾를 이끌어내었지만 회원국간의 분열은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미주지역에서 MERCOSUR 주도의 협상에 커다란 힘을 실어 주었던 칠레가 2000년 11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공식 개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MERCOSUR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연이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MERCOSUR 공고화 및 확대전략은 2003년 중도좌파 성향의 룰라(Luiz Inacio Lula Silva)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추진되었다. 브라질 정부의 MERCOSUR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MERCOSUR 강화 정책이 현 중도좌파 정부의 대외정책 목표와 일치한다는 데 있다.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자율성과 자존심 회복”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MERCOSUR 확대

25) 보다 자세한 논의는 권기수(2000. 10), 「남미자유무역지대 추진경과와 출범전망」, 『월간 세계경제』 참고.

및 강화를 최우선 수단으로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그간 브라질과 더불어 MERCOSUR의 양대 주축국으로 활동해온 아르헨티나가 최근 경제위기 여파로 정치·경제적 위상이 크게 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브라질이 MERCOSUR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MERCOSUR의 대외정책 측면에서도 브라질의 입장이 곧 MERCOSUR의 입장이라는 등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2003년 5월 출범한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Nestor Carlos Kirchner) 정부도 MERCOSUR 공고화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사실상 그간 아르헨티나는 경제통합의 중심국이면서도 MERCOSUR 통합발전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2001년에는 대외공동관세를 둘러싸고 MERCOSUR 회원국간 대립이 촉발되자 아르헨티나의 카발로(Domingo Cavallo) 경제장관은 “MERCOSUR가 관세동맹 단계를 지향하기보다는 FTA 수준에 머무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을 공식 제기, MERCOSUR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친미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 체결은 고사하고 2000년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홀대를 받았다. 이후 그간 다소 이중적이었던 아르헨티나의 MERCOSUR에 대한 입장은 MERCOSUR 공고화로 확고하게 선회되었다. 또한 역내 경제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정부도 2003년 들어 MERCOSUR 공고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 15일 출범한 파라과이 두아르테(Nicanor Duarte) 신정부는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MERCOSUR 공고화를 적극 천명했다.

2003년 MERCOSUR의 강화 움직임은 우선 공동통화 도입 및 공동의회 창설 등 초국가적 제도협력의 확대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6월 개최된 24차 MERCOSUR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FTAA 협상에 대비, 2006까지 명실상부한 공동시장을 출범키로 재확인했다. 또한 2003년 10월 6일 MERCOSUR는 EU의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상응하는 MERCOSUR 위원회(MERCOSUR

Commission of Representative)²⁶⁾를 설립, 초대 위원장에 두알데(Eduardo Duhalde)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을 임명했다. 한편 MERCOSUR는 남미국가들과 무역차원에서 2003년내 타결을 목표로 SA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차원의 통합²⁷⁾도 병행하고 있다.

2003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주요 회원국에서 FTAA에 비판적인 좌파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FTAA의 전도(前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FTA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 회원국의 FTAA에 대한 입장은 연이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2003년 6월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2005년 FTAA 출범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으며

26) 2003년 12월 4일 공식 출범하는 동 위원회는 우루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두알데 초대 위원장의 역할은 △ 경제통합사업 및 제3국과의 협상 제시 △ 회원국간 경제사회 및 의회협력 강화 △ 제3국 및 국제기구에서 MERCOSUR를 대표하는 것 등이다.

27) 남미지역 인프라 통합의 시도는 2000년 9월 브라질 카르도주 대통령의 소집으로 개최된 제1차 남미정상회담에서 시발되었다. 당시 회담에서 정상들은 남미지역인프라통합구상(Initiative for Regional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 IIRSA)을 발표하고, 수송, 에너지, 통신 등 3개 분야 인프라 통합추진을 주내용으로 한 실천계획을 채택했다. 이어 2000년 12월 개최된 남미 에너지·통신·수송 장관회담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및 플라타강 유역 개발기금(FONPLAT)이 공동으로 작성한 최종 실천계획을 채택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남미지역 물류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통합허브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실천계획 추진을 위해 집행조정위원회(Executive Steering Committee, ESC)가 설립되었다. 2001년 4월 제1차 ESC 회담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 각 실무그룹이 설립되었다. IIRSA는 총 160~200개 사업에 향후 5년간 23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IIRSA는 사업을 주장한 브라질 주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그간 지체되어온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3년 8월 6~8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IIRSA 회담에서 각국별로 2개의 우선순위 사업을 제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브라질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주요 지역개발은행과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현재 브라질이 고려중인 주요 지역 금융협력사업으로는 브라질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플라타강 유역 개발기금(FONPLAT)을 안데스 공동체(CAN) 개발은행인 안데스개발공사(CAF)에 병합시키거나 독자적인 개발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브라질은 개발국 지원차원에서 이미 베네수엘라에 인프라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브라질 기계장비 수입지원을 목적으로 1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하철공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3년 8월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미국 방문에서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제3차 협상안은 2003년 11월 마이애미의 장관급회담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과 브라질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고 2005년 1월 1일의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결정적으로 2005년 11월 마르 델 플라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A를 되살리기 위한 부시의 노력은 남미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계기로 중남미도 친 FTAA 그룹과 반 FTAA 그룹으로 본격적으로 분열되었다. 미주 29개국의 지지를 받은 미국이 2006년 협상개시 시한을 정하길 원했으나 MERCOSUR 회원국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공정하고 평등한 협상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FTAA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미국의 뜻을 무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주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향후 WTO 협상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FTAA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으나, 현 시점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 협상 일지

- 1991년 MERCOSUR 4국과 미국간의 투자와 무역에 대한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Rose Garden Agreement” 체결(MERCOSUR의 첫 번째 대외조약)
- 1994년 34개국이 참가한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FTAA를 출범 시키기로 합의
- 1998년 3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9개 작업반 구성, 사무국 설치)
- 1998년 4월 칠레 산티아고 제2차 미주정상회담 후에 본격적인 협상 개시

- 1999년 무역관계장관회의에서 첫 번째 협상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농업분야 협상은 WTO 협상과 병행하기로 합의
- 2001년 4월 제1차 협상안 완성
- 2001년 4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퀘벡의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협상 진행
- 2003년 5월 시장접근 협상 시작
- 2002년 11월 장관급회담 후 키토선언 발표, 제2차 협상안 준비
- 2002년 12월 ~ 2003년 2월, 양허안(offer) 교환
- 2003년 2월 ~ 2003년 6월, 양허안 수정, 양허요구안(request) 제시
- 2003년 7월 수정양허안 제출
- 2003년 11월 마이애미 장관회의에서 역내 다자기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FTA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이후 협상 중단
- 2005년 11월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 FTA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시도 실패(Lorenzo & Osimani 2003)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시장접근 작업반의 경우 기본관세는 보고일(2002년 8월 15일~10월 15일) 기준 최혜국대우관세(MFN)이며 지역협정의 대외공동관세는 적용 예외국이 있더라도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였다(2004년 1월 기준). 양허안 작성에 있어 시장접근과 농업그룹은 상호 협력하여 양허안을 작성기로 하였고, 원산지규정은 미소기준(de minimis)과 누적기준(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ccumulation)을 사전에

확립하였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리포트는 2002년 11월 15일, 미주무역데이터베이스는 2002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작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MERCOSUR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 및 안데스시장 진입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항공, 자동차, 셀룰로스, 알루미늄 및 신발부문 시장진입을 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보조금과 농업의 무역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의 제거를 주된 이슈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비농산품의 수입 관세가 역내협상참가국 중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우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 입각한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지지하고 있다.

협상 우선순위가 다른 미국과 브라질간의 가장 큰 쟁점은 시장접근 이슈이다. 평균 4.3%의 관세율(농업 8.5%, 제조업 3.7%)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역내에서 가장 낮은 관세정책을 펴는 국가이지만, 일정한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제도를 통해 특정 농산물에 대해 초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은 TRQ에 의한 관세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지만, 평균 관세율이 10.9%(농업은 10.2%, 제조업은 11%)로써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고 브라질은 TRQ의 고율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Hornbeck 2006, 22).

나. 농업

농업분야의 기본의제는 관세, 비관세, 세이프가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기술지원, 소국에 대한 기술지원, 수출보조금, 보조금 철폐방법, 농업의 무역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의 제거 등이다.

MERCOSUR는 오렌지 주스, 곡물, 유제품, 육류, 커피 및 바나나의 시장접근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국시장에선 전 품목의 높은 관세를 지지하고 있다. MERCOSUR는 농업을 비롯한 세부 협상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협상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FTAA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²⁸⁾ 기본적인 원인은 산업구조적 차이에 기인하는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업부문이 중남미 농가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부문이고, 브라질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부문이 미국에서 가장 보호받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DB의 연구에 따르면 FTAA가 관세를 없애고 미국이 보조금을 철폐한다면 브라질의 농업부문 수출은 27% 증가할 것이라고 하며, 또한 미국이 브라질산 신발류에 부과하는 10.2%의 관세를 철폐한다면 브라질 신발의 대미수출도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Carranza 2004, 323).

따라서 MERCOSUR는 미국이 WTO 협상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농업보조금 및 반덤핑 등 쟁점분야를 FTAA 협상에서 해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농산물 시장접근, 농업보조금 철폐, 철강수입 규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FTAA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도 협상기간내내 농업 협상에 응하기는 했지만 보조금 폐지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의 농산품과 중남미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으며 WTO의 다자간 농업협상에서 미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정상회담 성명은 WTO의 DDA 농업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본 사안을 풀어가기로 하였지만 DDA 협상도 무산된 상

28) 특히 MERCOSUR 회원국들은 FTAA가 2005년 예정대로 출범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 같은 시각은 브라질 고위관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003년 7월 21일 카누투(Otaviano Canuto) 브라질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2005년 FTAA가 예정대로 출범할 가능성은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최소한의 양허를 통한 축소된 형태의 FTAA 출범이다. 그는 이를 실용적 FTAA(ALCA pragmatica) 혹은 가벼운 FTAA(light ALCA)라 불렀다(Estado de Sao Paulo 7월 21일자).

황에서 FTAA 농업분야의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 DDA 협상에서 일본과 EU의 보조금 철폐 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미국도 자국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만큼 FTAA의 농업 문제는 글로벌한 체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글상자 3-2. FTAA · MERCOSUR의 농업문제와 국내정치

최근 브라질의 한 지방의회(Rio Grande del Sur)가 쌀, 밀, 콩, 양파 등 아르헨티나 농산물의 수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몰라 행정부도 이와 같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행보에 불편해 하고 있다.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을 주지사(지방정부)가 거부했지만 지방의회에서 다시 이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국제 규범에 배치되기 때문에 브라질 국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다(Clarin 26 Feb, 2006).

다. 투자

투자분야의 기본의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예외규정, 수용과 보상, 손실보전, 분쟁해결 등이며 이행의무강제(performance requirements) 금지, 핵심인력(key personnel) 이동, 과실송금 (transfers), 그리고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등 새로운 의제들도 논의되었다.

미국이 투자협정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MERCOSUR는 수세적 입장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특히 브라질의 경우 FTAA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투자협정의 의회 승인 시 많은 난관이 예상되었다.

투자의 경우 FTAA 협상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양자간투자협정(BIT)을 맺고 있는 상태여서 조율이 쉬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주로 미국 ·

멕시코·중미카리브의 공세로 이어졌고 남미국가들은 방어적인 입장으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면이 있었다(CEPAL 관계자 인터뷰).

라. 서비스

미국은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개방을 꾸준히 요구했고 특히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 Mode 4,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을 하는 경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MERCOSUR는 전면개방에는 난색을 표했으며, 특히 보험 및 은행서비스 부문에서 매우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내국인대우, 혜택의 부인, 투명성 원칙, 국내 규제, 자연인의 이동 등이다. 분야별로는 금융, 통신분야가 특히 민감하게 다루어 졌다(<http://www.ftaa-alca.org>).

마. 정부조달

정부조달 부문은 중앙정부와 연방정부, 가급적이면 지방정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협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투자협정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 정부조달을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브라질은 정부조달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Buy American 프로그램 등 미국시장에서의 장벽 제거에 관심이 있다.

주요 협상의제는 법률과 규정의 공포, 조달절차, 입찰자 모집 방법, 입찰방식과 범위, 공급자의 자격, 면담절차 및 고충처리절차, 정부(공공) 조달의 개념과 내용, 국내산, 외국산 상품의 지위에 관한 원칙 등이다.

바. 지식재산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해가 집중되어있는 부문이 지식재산권이며 FTAA 협상에서도 강력한 실행을 주장해왔다. 반면 MERCOSUR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지재권에 대한 주장을 펼쳤는데 예를 들면 생식질(germplasm)을 국가의 재산으로 인정한다거나 새롭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특허권 보호의 문제, 식물 추출물, 전통적 지식 및 민속 보호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지식재산권의 실행에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MERCOSUR는 미국시장에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의 농업 보조금에도 반대하고 있다. FTAA · MERCOSUR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아. 경쟁정책

미국과 브라질은 모든 회원국의 경쟁정책 도입에 관심이 있으나 나머지 중남미 회원국의 경우 경쟁정책 도입으로 법적 및 제도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주요 의제는 경쟁법, 독점규제, 공기업, 국가 보조금 등이다.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집중되어있는 비상품 서비스 분야-금융, 교육, 엔지니

어링,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또한 지식재산권(IPR),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무역이슈이며, IPR의 경우 중남미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내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식 IPR가 개발도상국에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기술이전을 더디게 하며,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경쟁정책은 국내경제정책을 바꾸어야하는 속성 때문에 협상이 매우 어려운 분야이고,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미국은 중남미시장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 자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협상분야별 MERCOSUR의 입장을 [표 3-2], [표 3-3]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표 3-2. 협상분야별 MERCOSUR의 입장

	시장 접근	농업	투자	서비스	정부 조달	지재권	보조금 ¹⁾	경쟁 정책	분쟁 해결
공세적	●	●●●				●	●●●	●	●●
방어적	○○○	○	○○	○○	○○	○○		○	

주: ●●● 매우 공세적, ●● 비교적 공세적, ● 공세적, ○○○ 매우 방어적, ○○비교적 방어적, ○ 방어적.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포함.

자료: Blanco and Zabludovsky(2003)

표 3-3. 협상분야별 MERCOSUR의 세부 입장

	공세적	방어적
시장 접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 및 안데스시장 진입에 관심 - 항공, 자동차, 셀룰로스, 알루미늄 및 신발부문 시장진입에 관심	- 비농산품 관세는 역내협상참가국 중 높은 수준.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관세가 높음. - 높은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 입각한 엄격한 원산지규정 지지
농업	- 오렌지 주스, 곡물, 유제품, 육류, 커피 및 바나나의 시장접근 확대에 관심	- 전 품목의 높은 관세 지지

표 3-3. 계속

	공세적	방어적
투자		- 미국이 투자협정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 - MERCOSUR는 투자관련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투자협정의 의회 승인시 많은 난관 예상
서비스	-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 Mode 4,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을 하는 경우)에 관심	- 보험 및 은행서비스 부문에서 매우 민감
정부조달	- Buy American 프로그램 등 미국시장에서 장벽 제거에 관심	- 미국이 투자협정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 - 브라질은 정부조달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음. - 상세하고 야심찬 규범마련으로 각국 정부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
지재권	- 생식질(germplasm)을 국가의 재산으로 인정 - 새롭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특허권 보호에 관심 - 식물 추출물, 전통적 지식 및 민속 보호	- 지재권 실행에 많은 어려움.
보조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 특히 미국시장에서 반덤핑 조치 남용 반대	
경쟁 정책	- 브라질: 모든 회원국의 경쟁정책 도입에 관심	-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경우 경쟁정책도입으로 법적 및 제도적 어려움 예상
분쟁 해결		

자료: Blanco and Zabludovsky(2003)

표 3-4. MERCOSUR의 단계별 관세철폐안

	관세철폐 기간	대상품목
그룹 A	즉각 철폐	17.44%
그룹 B	5년	22.23%
그룹 C	10년	51.58%
그룹 D	10년 이상	100.00%

차. 관세양허안

FTAA 협상에 대한 MERCOSUR의 수세적인 입장은 2003년 2월 15~16일 제출한 상품 및 농산물 양허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MERCOSUR의 관세 양허안은 모든 관세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철폐 품목을 4개 그룹으로 대별하여 단계별로 제시했다. 미국의 양허안과 비교해 볼 때 MERCOSUR 양허안은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과 교역의 완전 자유화 시기 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였다. MERCOSUR가 제출한 양허안에서 즉각적인 관세철폐율은 미국의 동 65%에 크게 못 미치는 17.4%에 불과했으며, 교역의 완전 자유화 시기도 미국이 제시한 2015년을 크게 벗어났다. MERCOSUR는 관세 양허안 외에 비관세 장벽 및 무역왜곡을 일으키는 보조금의 철폐, 과도한 반덤핑 조치, 세이프가드 및 보상법(compensatory law) 시정 요구 등을 제기했다. 특히 MERCOSUR 회원국들은 미국의 소지역별 차별적인 관세 양허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5. 향후 협상 전망

지금까지 이루어진 FTAA 협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를 먼저 도출하고, 향후

FTAA 협상 전망을 논하기로 한다.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미국과 브라질의 갈등은 2003년 5월에 고조되었다. 미국의 3대원칙에 대해 브라질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3대원칙은 첫째, 미국의 양자간 또는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추진인데 브라질은 이와 같은 정책이 MERCOSUR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둘째, 농업보조금과 반덤핑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이고, 셋째, ‘차별화된’ 시장접근 방식은 브라질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미국에 대해 또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하였다. 첫째, 시장접근에 있어 MERCOSUR에 대한 별도의 협상, 둘째, 농업보조금, 반덤핑,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등의 분야는 DDA 협상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셋째로 규칙에 입각한 FTAA 협상을 요구하였다(Hornbeck 2006, 5). 브라질이 이와 같은 축소된 FTAA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을 계속 추진하였다.

브라질은 공세적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접근과 보조금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수세적 차원에서는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분야인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투자 등에 대한 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바꾸어 이해하면 MERCOSUR는 무역과 역내시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미국시장에 가장 의존도가 낮은 국가이며, CBI 같은 무역 특혜대상국도 아니다. 자국내 정책수호의 차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FTAA는 반대하면서 미국과 MERCOSUR(4+1)간의 시장접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 브라질간의 입장차이는 2003년 장관급회담 공동선언문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어,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협정”을 강조하긴 했으나 실제 협정문에는 “각국에 다른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수 있다(... countries may assume 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s..)”며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2004년 2월 푸에블라에서 열린 TNC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브라질은 상품 및 농산품에 대한 의제를 시장접근에서 다루길 주장했고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서비스, 지적권, 정부조달 및 투자의 네 부문은 WTO 다자협상으로 넘기려 했다. 물론 미국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협상을 원했다. 한 가지 합의에 도달한 점이 있다면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수출보조금 철폐에 동의한 것이다 (Scott 2005).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브라질은 2003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FTAA에 이르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협상방식(3-track)을 제안했다. 세 가지 협상방식은 각 방식이 별도로 추진되 기보다는 동시에 추진됨을 의미한다. 첫 번째 협상방식은 4+1(MERCOSUR + 미국) 협상이다. 현재 FTAA 협상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MERCOSUR간의 FTA 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바, FTAA 협상 틀내에서 양자간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단 협상분야는 상품의 시장접근과 서비스 및 투자에 국한 짓는다. 두 번째 방식은 축소된 형태의 FTAA 협상이다. 현재 FTA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를 모두 제외한 축소된, 현실적인 FTAA 협상 추진이다. 세 번째 방식은 WTO 협상 추진이다. 즉 FTA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은 WTO 협상무대에서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브라질의 이 제안은 미국의 긴급요청으로 2003년 6월 12~13일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특별 소집된 FTAA “미니 통상장관회담(15개

국 참가)²⁹⁾에서 의제로 상정되었으나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Lorenzo & Osimani 2003).

표 3-5. 브라질이 제안한 FTAA 협상 방식

	방식 1	방식 2	방식 3
	FTAA내 쌍무협상 (4+1 협상, MERCOSUR+미국)	FTAA 다자협상	WTO 협상
주요 협상 분야	- 시장접근 · 재화(농산물 및 비농산물) - 서비스 · 포지티브리스트 - 투자 · 포지티브리스트	- 시장접근 규범 - 수출보조금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경쟁정책 - 분쟁해결 - 제도문제 - 미주지역 협력프로그램(HCP), 보상기금 - 특별 및 차등 대우 - 시민사회 - 무역원활화	- 서비스 - 정부조달 - 지적권 - 농업(국내지원) - 수출보조금 - 보조금, 상계관세 - 경쟁정책

자료: www.INSIDETRADE.com - August 29, 2003.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한편 브라질은 2003년 WTO 칸쿤 각료회담에서 농업개도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도, 중국 등 농업대국들과 공동으로 G-20를 결성했다. G-20 구성국 중 FTAA 협상 참가국의 수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에 달했다. 브라질은 G-20에서 보여주었던 FTAA 협상참가국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FTAA 협상에서도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그러나 각료회담 이후 미국의 압력으로

29) 동 회담은 2003년 11월 제8차 통상장관회담을 앞두고 회원국의 의제와 이견 등을 사전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회담 성격이었다.

G-20에 가입했던 FTAA 협상참가국들이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이 연쇄적으로 탈퇴하며 G-20의 위세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FTAA의 향방을 결정할 제8차 미주통상장관회담을 앞두고, 전반적인 협상여건은 브라질에 비우호적이었다. 이에 따라 협상 주축국인 브라질과 미국의 대립으로 FTAA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제8차 통상장관회담의 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FTAA 협상의 결렬을 우려한 미국측의 전격적인 양보로 종전 브라질측이 주장하는 시장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적 FTAA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후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측은 제8차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된 협상 구도를 유지하는 한편 미주지역에서 미국의 공세적인 FTA 정책에 대응, 역외국과의 FTA를 통한 통합의 외연적 확장에 주력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를 MERCOSUR의 정회원국으로 맞이할 바 있다.

이와 같이 MERCOSUR의 FTAA 전략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통합체의 내적 심화는 물론 CAN과 FTA 체결을 통한 SAFTA 결성, EU와의 FTA 협상 추진 등 외연적 확장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점이다. FTAA 협상 초기, 미 행정부의 정치력 약화에 따라 신속처리협상권의 조기 획득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NAFTA 확대(NAFTA plus)를 통한 미국시장접근보다 MERCOSUR와의 관계강화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에 따라 MERCOSUR의 확대전략은 더욱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1996년 10월 칠레가 MERCOSUR와 FTA를 발효한 데 이어 1997년 5월에는 볼리비아와도 FTA 협정을 발효했다. 또한 MERCOSUR는 SAFTA 창설의 일환으로 CAN과 1998년 3월 FTA 추진을 위한 기본협력협정에 서명, SAFTA 추진을 가속화했다. MERCOSUR는 EU와도 1999년 6월 28일 FTA 협상을 공식 추진키로 합의했다.

칠레의 MERCOSUR 준회원국 가입은 남미 국가들의 FTAA 협상에 임하는 전

략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양자간의 FTA 협정 체결 이후 볼리비아의 MERCOSUR 준회원국 가입에 이어 SAFTA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칠레의 MERCOSUR 가입 이후 MERCOSUR내에서 FTAA에 대해 상이한 전략을 취해왔던 아르헨티나도 미국시장에의 접근전략을 포기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MERCOSUR 강화에 두었다. 미국의 EAI 발표와 멕시코의 NAFTA 가입 직후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NAFTA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친미 정책은 미국시장에의 신속한 접근은 물론 MERCOSUR 내에서의 브라질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포석이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추진해온 바 있다.

브라질의 SAFTA 추진 노력은 1999년 들어 MERCOSUR 회원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CAN 회원국과 단독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사전단계인特惠관세협정을 체결한 데서 잘 나타났다. 당초 1999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 2000년 출범키로 한 CAN과 MERCOSUR간의 통합협상이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지체되자 브라질 정부는 단독으로 CAN과의 협상을 추진했다.

1995년 이후 미국이 신속처리협상권을 의회에서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FTAA 협상에서 주도력을 상실한 데 반해,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이용,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MERCOSUR가 역내외 국가들과 활발한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FTAA 협상에서 MERCOSUR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반면 미국 정부는 FTA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달성하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과 추가적인 FTA 협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정책여하에 따라 MERCOSUR 회원국과 개별 FTA를 체결하여 이를 와해시킬 가능성도 있다.

2005년 8월 럽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역대 최초로 파라과이를 방문했을 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언론들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파라과이에 세워지고 파라과이가 MERCOSUR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대서특필하였다.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양국이 전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MERCOSUR의 와해를 유도해 FTAA의 실현을 수월하게 만들고, 파라과이는 MERCOSUR 체제 내에서의 불만(중국문제, 브라질의 전횡, 시장접근의 어려움 등)을 미국을 통해 해소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주권국가인 파라과이가 브라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은 의외로 크다. 특히 브라질 이주자 30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농지가 가뜩이나 토지소유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이 나라와 브라질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브라질 국기를 파라과이에 휘날리게 할 것이라고까지 믿는 경우도 있다.³⁰⁾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FTAA를 완성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는 NAFTA의 심화, 칠레와의 FTA, 중미자유무역지대(CAFTA)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칠레와의 FTA는 개별국과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FTAA를 완성한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고, CAFTA의 출범에서 보듯이 소규모 경제블록과의 통합을 통해 역시 FTAA를 완성한다는 전략도 동시에 보인다.

30) *Economist*(01/10/2005), "Improbable allies," vol. 377, pp. 36~7.

그러나 FTAA의 협상원칙 수립 과정에서 미국은 중대한 실수를 범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협상력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첫째, FTAA 협상은 하나의 패키지(single undertaking)로 완성되어야 함에 동의한 것이다. 이 경우 양자관계 확대나 소규모 통합체를 통한 FTAA의 완성이라는 미국의 전략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결국 FTAA에 대한 미국의 외교술이 그리 정교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협상이 쉬운 분야를 가지고 중간단계의 협정을 체결하고 점진적인 개방화 압력을 넣는 전술을 택할 수 없었다.

둘째, MERCOSUR와 같은 역내 지역통합기구가 회원국을 대신해 협상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Carranza 2004, 321). 이는 MERCOSUR의 협상력을 제고시켜주었고 약소국도 자신의 요구를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개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협상과정에서 충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FTAA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고 교착상태에 이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우루과이나 파라과이 같이 현 MERCOSUR에 불만이 있는 회원국이 칠레가 했던 것처럼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FTAA에 우선 동참하는 방법이 원천봉쇄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협상에 있어 미국이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범위와 한계를 미리 정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는 부시 행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농업보조금의 철폐에 대해 FTAA 협상 시 의제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WTO 체제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산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반덤핑 제소도 협상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자국 농가에 대해 200억 달러에 이르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여 중남미 전역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고,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TPA, fast track)을 부여받으면서 브라질산 수입 철강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Economist*, 2005년 10월 1일자, pp.36-7).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최근 FTAA의 좌초에는 브라질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선 자급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대미의존도가 낮고 멕시코만큼 미국시장 접근이 절박하지 않다.

카르도주 대통령 당시부터 브라질 정부는 FTAA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현 집권당인 노동자당은 “FTAA는 지역통합 움직임이 아니며 중남미 경제를 미국에 복속시키는 과정”이라고 천명한 바 있을 정도로 FTAA 창설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Carranza 2004, 322).

이와 같은 시각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믿는 브라질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불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싶은 정치권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즉 브라질의 내부협상이 어렵다는 사실은 FTAA 협상 자체의 틀림없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교착의 시발점은 2002년이었다. 브라질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FTAA를 반대하는 의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이 캠페인을 이끌었던 주요 세력은 무토지농민운동(MST), 진보적 가톨릭 사제들, 노조, 사회주의노동자연합당(PSTU), 그리고 수천의 진보운동과 NGO 활동가들이었다.

브라질의 협상전략은 중남미(또는 최소한 남미) 전체가 단결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고, EU나 아시아를 비롯한 역외국과의 경제관계를 증진시켜 대미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2005년 11월 4~5일 아르헨티나의 해변 휴양지 마르 델 플라타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담장에서 부시는 FTAA 협상 재개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남미의 거센 ‘반미(反美), 반(反)부시’ 정서에 오히려 FTAA가 좌초하는 실패를 맛보야만 했다.

FTAA 확산에 반대하는 남미국가들에는 2002년 말 아르헨티나 경제파국으로 대표되는 남미권 경제의 ‘도미노 도산’이 1990년대 미국 지원하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을 위시한 좌파 지도자들이 “FTAA 결사반대”라는 깃발 아래 강력한 결속을 보여 정치적 반대를 표면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는 FTAA에 반대하는 국가들보다 찬성하는 국가의 수(29개국)가 더 많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살려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미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한 멕시코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의 FTAA 찬성 그룹 국가들만의 이른바 ‘부분적 FTAA’ 창설안의 제안이다. 따라서 2005년의 미주정상회담은 FTAA가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자 중남미국가들간에도 이해관계의 대립이 표면화된 계기가 되었다.

아. 향후 협상 전망

경제적인 차원에서 FTAA에 대해 미국과 MERCOSUR는 상대 시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미에서 FTAA는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제고라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만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은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James Petras 같은 좌파 학자들이 주장하는 약간은 극단적이지만 설득력있는 해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이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면서 시장 규모의 차이(즉 7조 달러의 미국시장과 2,500억 달러의 멕시코 시장의 차이)를 들어 멕시코가 미국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멕시코의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멕시코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FTAA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은 중남미 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은 제한을 두면서 이 지역의 시장개방을 비롯하여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Petras 2002).

다른 한편 MERCOSUR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 공고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FTAA 협상에 있어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MERCOSUR의 내부적 공고화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내부적인 정책결정의 자율성(decision making autonomy), 둘째, 지역간 기구나 거시경제 정책조율을 위한 매커니즘의 설립을 통한 제도화 추진, 셋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역내 무역 의존도 향상(현재 22%에 불과)이다.

이상과 같이 논의된 MERCOSUR의 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MERCOSUR와 FTAA의 협상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가능하다(Carranza 2004; Scott 2005에서 정리).

1) 흡수통합

FTAA가 미국주도로 완성되고 브라질을 비롯한 MERCOSUR는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이는 곧 MERCOSUR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선택적인 전략적 개방적 지역주의(Strategic Regionalism)와 MERCOSUR의 관세동맹 또는 공동시장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MERCOSUR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조달시장개방, 산업지식재산권 보장, 노동과 환경규범 준

수 등을 수용하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시장 접근, 반덤핑, 농산물 보조금 문제 등은 DDA 협상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개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각국의 시민사회에서 FTAA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2) 현상유지(Minimalist Scenario)

WTO 체제가 자리를 못 잡는다면 각 지역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는 경향의 폐쇄적 지역주의가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FTAA 논의 자체도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MERCOSUR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영역을 넓혀 SAFTA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반면 NAFTA는 중미와 카리브를 포괄하는 북중미자유무역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카리브해 무역특혜법안이 만료되는 2008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카리브 연안국들은 FTAA의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경제권에 깊이 편입되었고 어떤 방식이든 미국과 양자·다자적 자유무역 체제를 이루고 있는 멕시코, 중미, 카리브 그리고 콜롬비아를 비롯한 일부 남미국가들을 위주로 새로운 형태의 다자적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각개격파(Hub-spoke)

미국이 미·칠레 FTA처럼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FTAA를 완성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MERCOSUR 회원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FTA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MERCOSUR를 고립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게 하는 ‘카리브화’가 예측가능하다. 이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FTAA의 중단상황에서 다자적인 무역협상을 무리하게 진행시

키기보다는 중남미 각국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A 대화 중단 이후 CAFTA 협상을 마무리지었고,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친미적인 안데스 국가들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상태이다(미국식의 포괄적 FTA이며, 국내보조금과 반덤핑은 언급되지 않음).

4) 지지부진(The middle of the road scenario)

DDA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브라질산 철강의 미국시장진출, 남미국가들의 지식소유권의 수용 등 양자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장기적인 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5) 남미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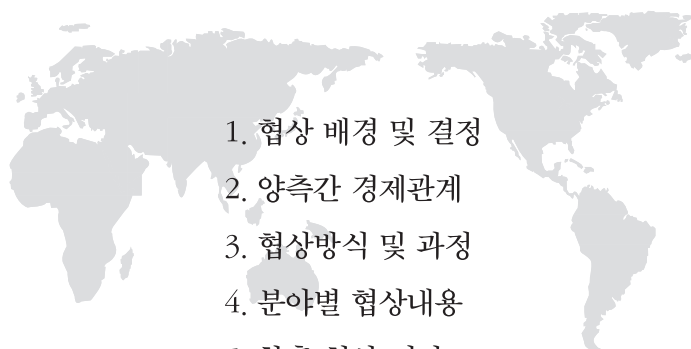
FTAA가 무산되고 MERCOSUR가 내부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시장으로 생존하는 것이다.

표 3-6. MERCOSUR와 FTAA: 다섯 가지 시나리오

	FTAA		
	NAFTA와 같은 강한 통합	미국이 양보하는 느슨한 통합	FTAA 무산
MERCOSUR가 관세동맹/공동시장의 상태로 생존	2. NAFTA와 MERCOSUR가 공존	5. MERCOSUR가 공동시장으로 생존	5. MERCOSUR가 공동시장으로 생존
MERCOSUR가 역내 자유무역만 실시	1. MERCOSUR는 힘을 잃고 FTAA에 흡수됨	4. 통합도가 약한 지역기구가 공존	MERCOSUR의 생존/외해가능성 반반
MERCOSUR 무산	매우 강한 FTAA 출현	느슨한 FTAA 정착	3. Hub-Spoke 모델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5. 향후 협상 전망

현대의 세계경제는 GATT에서 시작되어 WTO로 이어져온 다자무역 협상체제와 지역 및 자유무역 협정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WTO의 DDA 협상 지연 등 다자무역 협상체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다 자국의 이익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양자간 협상방법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유럽은 기존의 경제공동체(EEC)에서 시작하여 유럽연합(EU)을, 중남미지역의 국가들은 MERCOSUR를 각각 탄생시켰다.

한편 2002년 1월 1일에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고수했던 미국의 달러화와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세계경제의 거대한 두 축이 각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FTAA를 통해서 중남미 지역을 미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EU 역시 MERCOSUR와의 FTA 협상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이들의 FTA 협상에는 상호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상이 전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두 협상간의 상호의존성이 협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수출품은 기계류와 수송장비 및 화학제품 등이 6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MERCOSUR의 수출품은 농산물이 52.7%를 차지하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자의 관심품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며,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EU에서 수입하고 있는 MERCOSUR의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이들 국가의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농업보조금을 지급해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있으나, 이는 MERCOSUR의 농민들이 수출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MERCOSUR측에서는 농업보조금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는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므로 MERCOSUR에 공산품시장의 개방과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

스산업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MERCOSUR의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이 종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 현재 이러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협상타결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전통적으로 유럽은 중남미국가들에 있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오랫동안 중남미국가들은 유럽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정치, 문화, 법률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서로 협력해 왔다. 근래에는 다양한 경제통합체들이 형성되고 DDA를 비롯한 다자무역협상을 통한 경제협력방안이 모색·추진되는 세계경제 추세에서 유럽과 중남미는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찾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 세계의 주목을 받던 DDA 협상이 지연되고, 타결 가능성도 낮아지자 세계경제는 비효율적인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 내지는 양국간의 FTA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말 발생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신보호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은 약해진 반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양자간 FTA가 선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통합체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국가간의 무역협정이 아닌 경제공동체간의 무역협정으로 발전했다. MERCOSUR와 EU의 관계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MERCOSUR·EU간 FTA 추진 배경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자립의 추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남미 국가들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닌 협력 상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서 벗어나 자립을 꾀하며 새로운 무역상대로 부상한 대상이 EU였다. 중남미국가들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중인 미주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통합권인 FTAA에 가입을 종용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상황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즉 남미국가들에서 경제 침체와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다수 남미국가에 반미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초 경제자유지표(economic freedom index)가 전 세계 123개국 중 28위에서 86위로 추락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결국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급격한 하락을 겪게 되면서 좌파성향의 차베스 정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중남미 국가들이 그동안 예속되었던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적 자립을 모색하고 있을 무렵 유럽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탄생을 시작으로 유럽 25개국의 정치·경제 연합체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통합권인 EU로 거듭났다. EU의 설립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영향력

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현재 EU는 미국(32,900 Euro)과 일본(21,400 Euro)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1인당 GDP(21,400 Euro)를 누리고 있으며(2003년 기준) 세계무역의 38%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새로운 무역상대국을 모색하던 중남미국가들과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EU의 조우는 양자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를 다지는 기초가 되었다. EU는 MERCOSUR와의 FTA에 앞서 1997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4년 말 현재 EU는 12개 국가와 FTA를 맺고 있으며 MERCOSUR 등과 5건의 FTA 체결을 교섭중이다.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MERCOSUR · EU FTA 협상은 199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4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양 경제권의 FTA 타결은 2006년 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MERCOSUR의 설립 1년 후인 1992년에 MERCOSUR와 EU(당시 EC: European Commission)는 자유무역협상의 기초가 될 Inter-institutional agreement에 동의했다. 오늘날 MERCOSUR와 EU의 실질적인 관계는 1995년 체결된 기본협력협정(MERCOSUR · EU 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협정문은 1999년에 발효되었지만, 매년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조문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양측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무역의 다양화와 점차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4년 9월, 양측이 각자 완성된 협정 제안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9년 동안의 노력은 표류하게 되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내부적인 갈등과 정치적

의지가 약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단기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양측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MERCOSUR·EU FTA 협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EU의 농업보조금은 MERCOSUR뿐만 아니라 여러 남미국가들도 수용하기 힘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U 또한 MERCOSUR측에서 제시한 통신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미진한 개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자간 FTA 체결로 발생할 연 400억 달러 이상의 예상 무역은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5월 정상회담을 재개하여 협의안에 대한 타결을 연내 확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초 “MERCOSUR·EU간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DDA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는 Peter Mandelson 유럽연합무역위원장의 언급으로 조기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MERCOSUR·EU FTA 협상 시작은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와 양측의 정치적 목적과 일치하여 1999년 처음 개시되었다. 하지만 양측의 노력과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갈등을 낳고 있어 협상은 안타깝게도 현재 원만한 타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양측간 FTA 협상은 1999년에 시작되었지만 구체적인 협정안은 2000년 4월에야 제시되었다. 현재 협상중인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문인 지역간 연합협정(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은 현재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장은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를 다루고, 두 번째 장에서는 무역과 경제

(trade and economic issues) 관련 이슈를,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협력(cooperation)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두 번째 장인 무역협상 부문은 3개의 소그룹으로 편성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부문, 서비스 등 지식재산권과 투자촉진을 다루는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조달과 경쟁 및 분쟁해결을 다루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협정문은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따르는데, 첫 번째는 지역 대 지역(Region-to-region) 접근 방식을 수용하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협상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WTO의 현존하는 의무를 뛰어넘는 포괄성과 균형을 갖추어 어떠한 분야도 협상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민감품목들의 민감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 세 번째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원칙을 따라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동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협정문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200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Madrid Summit)에서 발표되었던 성명문을 살펴보면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협정문의 가장 주된 목표는 WTO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상품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접근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 적절한 경쟁정책의 실행, 무역관련 규칙 제정 및 분쟁해결장치 확립, 비즈니스 원활화 등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2005년 말까지 열여섯 번의 협상이 있었으며, 정치적 협력 이슈는 어느 정도 완결되었으나 아직까지 무역 관련 부문에서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0월 리스본에서 MERCOSUR와 EU는 양측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FTA 타결을 2006년 말로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나. 교역

EU는 MERCOSUR의 최대 교역상대로 중남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보다도 활발한 무역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현재 EU는 MERCOSUR 전체 교역량의 약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MERCOSUR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기도 한다. 한편 MERCOSUR는 EU 전체교역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EU의 아홉 번째의 무역상대이다. 물론 EU가 MERCOSUR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보다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측간 교역량은 무시할 수 없다. MERCOSUR와 EU간의 교역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 상품 교역량은 2004년에 약 467억

표 4-1. EU(15국)의 주요 무역상대국(2004년)

(단위: 백만 유로, %)

순 위	수입			순 위	수출			순 위	무역규모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세계	1,029,326	100		세계	963,709	100		세계	1,993,035	100
1	미국	157,670	15.3	1	미국	234,140	24.3	1	미국	391,810	19.7
2	중국	126,912	12.3	2	스위스	75,035	7.8	2	중국	175,043	8.8
3	러시아	80,476	7.8	3	중국	48,131	5.0	3	스위스	136,495	6.8
4	일본	73,745	7.2	4	러시아	45,712	4.7	4	러시아	126,188	6.3
5	스위스	61,460	6.0	5	일본	43,210	4.5	5	일본	116,955	5.9
6	노르웨이	56,038	5.4	6	터키	38,024	3.9	6	노르웨이	86,791	4.4
7	터키	30,951	3.0	7	노르웨이	30,752	3.2	7	터키	68,975	3.5
8	한국	30,251	2.9	8	캐나다	21,950	2.3	8	한국	48,066	2.4
9	대만	23,645	2.3	9	호주	19,858	2.1	9	캐나다	38,200	1.9
10	브라질	21,131	2.1	10	홍콩	19,164	2.0	10	대만	36,472	1.8
*	Mercosur	28,304	2.7		Mercosur	18,361	1.9		Mercosur	46,665	2.3

자료: Eurostat

유로에서 2005년에 약 511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특히 EU는 2005년에 서비스 무역에서만 약 10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EU는 MERCOSUR의 최대 농산물 수출상대인데, 농산물 수출은 2004년 MERCOSUR가 EU에 수출한 총액의 52.7%를 차지했다. EU는 주로 공산품을 MERCOSUR에 수출하며 특히 기계류와 수송장비 등의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가 MERCOSUR에 수출하는 공산품은 수출품 전체의 45.3% 가량을 차지하며, 화학제품들도 약 15.8%를 차지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MERCOSUR에 있어서는 농산물이 가장 큰 관심품목이자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EU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비롯해서 공산품과 화학제품들이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4-2. MERCOSUR의 주요 무역상대국(2004년)

(단위: 백만 유로, %)

순 위	수입			순 위	수출			순 위	무역규모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세계	73,096	100		세계	108,064	100		세계	181,160	100
1	EU	19,694	26.9	1	EU	25,992	24.1	1	EU	45,686	25.2
2	미국	15,955	21.8	2	미국	19,623	18.2	2	미국	35,578	19.6
3	아르헨티나	5,259	7.2	3	중국	8,465	7.8	3	중국	12,546	6.9
4	브라질	4,984	6.8	4	브라질	5,597	5.2	4	브라질	10,581	5.8
5	중국	4,081	5.6	5	칠레	5,238	4.8	5	아르헨티나	10,074	5.6
6	일본	2,549	3.5	6	아르헨티나	4,815	4.5	6	칠레	6,963	3.8
7	칠레	1,725	2.4	7	멕시코	3,656	3.4	7	일본	5,600	3.1
8	나이지리아	1,719	2.4	8	일본	3,051	2.8	8	멕시코	4,388	2.4
9	스위스	1,258	1.7	9	캐나다	1,722	1.6	9	한국	2,918	1.6
10	한국	1,243	1.7	10	한국	1,675	1.6	10	캐나다	2,455	1.4

자료: Eurostat

표 4-3. EU(25국)의 산업별 對MERCOSUR 수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총수출에서의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총계	24,215	100.0	18,529	100	18,361	100.0	1.91
기초산업	1,700	7.0	1,262	6.8	1,168	6.4	1.10
농산물	993	4.1	648	3.5	560	3.0	0.95
에너지	219	0.9	261	1.4	233	1.3	0.84
제조업	21,657	89.4	16,633	89.8	16,175	88.1	1.99
기계류	7,775	32.1	5,478	29.6	5,831	31.8	2.11
수송장비	4,987	20.6	4,254	23.0	3,362	18.3	2.13
자동차	2,905	12.0	2,092	11.3	2,253	12.3	2.23
화학제품	4,316	17.8	3,801	20.5	4,122	22.4	2.71
섬유, 의류	402	1.7	236	1.3	226	1.2	0.66

자료: Eurostat

표 4-4. EU(25국)의 산업별 對MERCOSUR 수입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총수출에서의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총계	24,567	100.0	25,150	100.0	28,304	100.0	2.75
기초산업	15,998	65.1	17,572	69.9	19,702	69.6	6.40
농산물	12,104	49.3	13,856	55.1	14,926	52.7	18.81
에너지	103	0.4	340	1.4	476	1.7	0.26
제조업	8,341	34.0	7,255	28.8	7,727	27.3	1.14
기계류	1,041	4.2	967	3.8	1,572	5.6	0.62
수송장비	3,046	12.4	1,699	6.8	1,656	5.9	1.70
자동차	997	4.1	781	3.1	73	2.6	1.73
화학제품	838	3.4	968	3.8	936	3.3	1.08
섬유, 의류	193	0.8	219	0.9	251	0.9	0.36

자료: Eurostat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측간 FTA 협상과정에서 EU와 MERCOSUR의 주요 관심품목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우선 EU가 MERCOSUR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기계류와 수송장비, 그리고 화학제품 관련 품목들이 총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비중이 약 12.8%이다. 하지만 MERCOSUR와는 반대로 농산물이 총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대략 6.4% 정도이다.

MERCOSUR가 EU에 수출하는 품목 중 농산물이 52.7%로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기계류가 5.6%, 수송장비 등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서로의 관심사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중심산업이 거의 일치되지 않는 것은 서로에게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협상과정에 있어서는 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측면에서 MERCOSUR · EU FTA 협상은 중남미국가들과 미국의 지지부진한 FTAA 협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두 협상에서 양측의 관심품목이나 교역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FTAA와는 달리 MERCOSUR · EU FTA 협상의 두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 외에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으며, 이것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좀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협상방식 및 과정

양측이 제시한 양허안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약 10년 동안 총교역량의 90~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있다. 우선 EU의 양허안을 살펴보면 FTA 체결 후 10년내 총교역량의 93.5%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 협상에서 제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입쿼터도 늘릴 예정이다. 총교역량의 1.1%에 해당하는 과실류와 2.7%에 해당하는 쇠고기, 유제품, 닭고기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MERCOSUR의 양허안에서도 EU와 마찬가지로 약 10년 동안 총교역량의 90% 가량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협상과정에서 민감 품목으로 제외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자동차부품 등이며, 이는 총교역량의 0.4%에 불과하다. 섬유, 신발, 기계, 철강제품, 그리고 원당은 민감 품목들로 지정하여 예외품목으로 인정됐다.

양측이 제시한 각각의 양허안은 이 외에도 다른 요구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서비스시장과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 MERCOSUR에 있어 민감한 부문인 피혁, 섬유, 금속, 비철금속,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개방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MERCOSUR는 EU의 농산물 관련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농업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농산물 관세 인하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설탕, 주스, 커피, 대두유 등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과 육류, 바이오에탄올, 유제품에 대한 관세할당 확대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요구사항은 서로의 민감 품목들에 관한 것으로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슈별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MERCOSUR · EU FTA 협상과정에서 타결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농업 관련 이슈들이다. 첫 번째 농업 관련 이슈로는 관세 철폐의 기간과 관세철폐 또는 인하 대상의 품목에 대한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데 있다. 당초 2004년 10월로 목표하던 타결에 실패하고 1년 뒤인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17차 BNC 회담에서 EU는 MERCOSUR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의 99%를 자유화하겠다는 협상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MERCOSUR에서 EU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88%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고 관세할당 대상품목도 9%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EU로서는 처음 제시했던 양허안보다 한발 양보한 것이었지만 MERCOSUR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이다. MERCOSUR의 주요 수출농산물인 올리브유, 담배 등은 10년 동안 50% 정도의 관세 인하 효과에 만족해야 하며, 쌀, 옥수수, 마늘, 육류와 유제품 등이 관세할당 품목에 추가되지 않은 것이 농산물 협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가 지속적으로 경제권내에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쟁점이 되고 있다. EU는 그동안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이란 명목으로 EU 전체 예산의 약 44%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EU 국가들에 지원하였다. 이 지원금은 2005년에 430억 유로에 달했고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즉 세계최고 수준의 보조금 지원으로 세계무역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EU는 곡물의 특화 등을 통해 농업보조금을 2012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MERCOSUR의 관심 품목인 치즈, 초콜릿, 커피, 유제품 등 상당수 민감 품목들은 6년 이상 보조금으로 보호할 예정이어서 MERCOSUR·EU FTA 협상에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EU의 유제품은 27%의 관세를 물고 MERCOSUR 지역에 수입되고 있다. MERCOSUR가 민감 품목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서는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협상안대로라면 향후 10년내 유제품은 무관세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이는 180만 명의 브라질 유제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포함한 MERCOSUR 지역의 농민들의 일자리를 앗

아가게 된다. 명확한 대안없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MERCOSUR의 농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과도기의 문제점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제품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포도, 복숭아 같은 민감 품목에서도 비슷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MERCOSUR 국가들은 새로 바뀌는 쿼터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U가 제시한 협상안에 따르면 현 27만 5,000 톤에 달하는 쇠고기 수입량을 11만 6,000 톤으로 낮추고 이를 10년에 걸쳐 들여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MERCOSUR에서 수출되고 있는 쇠고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다. 쿼터제도에서 바뀐 사항이라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덧붙여졌다는 것 밖에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MERCOSUR는 EU가 제시하는 농업 관련 협상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이며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더 나아가 EU는 MERCOSUR보다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예를 들어 MERCOSUR의 대표적 민감 품목 중 하나인 설탕은 ACP 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MERCOSUR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서비스

MERCOSUR·EU FTA 협상은 농업 관련 이슈 말고도 서비스 시장개방의 문제를 비롯해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규범 관련 내용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서비스부문이 고용 및 GDP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규모는 1980년 1조 9,700억 달러에서 2002년 6조 2,700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6.5%에서 2002년 20%로 증가하였다. MERCOSUR의 서비스산업은 2004년 현재 총교역량의 19%를 차지하는 반면 MERCOSUR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낮다. 서비스산업은 MERCOSUR의 총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며 총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한 당위성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또 더 나아가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효과만을 분석하고, 서비스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표 4-5. MERCOSUR의 서비스부문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출	88,594	79,170	106,672	138,815	168,357
서비스 수출	14,811	13,276	15,050	18,265	22,747
총수입	86,933	65,246	71,378	98,425	121,563
서비스 수입	25,217	19,097	20,664	23,709	31,254
서비스수출/총수출	16.72%	14.89%	14.11%	13.16%	13.51%
서비스수입/총수입	28.99%	29.27%	28.95%	24.09%	25.71%

주: 파라과이의 2005년 서비스부문 수출입 통계자료는 2004년과 동일한 수치를 사용.

자료: 총수입, 총수출(IMF)/서비스부문 총수입, 총수출(WTO).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이용, FTA로 인해 서비스 무역장벽이 축소 또는 철폐되었을 때의 효과를 측정 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예: 박순찬, 유태환 2006 및 Brown et. al 1996) 우선 공통적으로 현재 양측이 제시하는 개방안에³¹⁾ 서비스를 제외한 경우보다 완전개방에 서비스 개방까지 포함된 경

우에 양측 국내생산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개방하는 경우 EU와 MERCOSUR의 국내총생산이 각각 0.05%, 0.80%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완전 개방 시에는 각각 0.1%와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져온다.

서비스산업이 양측 경제에 기여할 이익을 생각해볼 때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 같지만 MERCOSUR의 입장은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RCOSUR의 서비스산업은 EU나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MERCOSUR 내 서비스산업이 개방된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MERCOSUR는 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타 쟁점

협상 반대론자들은 MERCOSUR · EU FTA는 EU가 추진하는 FTAA라고 비판한다.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FTAA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의심하는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또 다른 불균형적인 FTA의 추진을 막으려고 한다. 실제로 FTAA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MERCOSUR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한 채 FTAA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NAFTA를 통해 MERCOSUR는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빈곤층의 증가를 목격했다. FTAA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지는 NAFTA의 부정적인 면들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FTAA와 비슷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MERCOSUR · EU FTA 협상의 타결은 용이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31) 현 협상은 EU는 농산물의 96.2%를 개방하고 MERCOSUR는 농업 및 제조업의 90%를 개방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FTAA의 체결이라는 비판이 외에도 MERCOSUR 국가들의 약한 의지도 협상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멕시코의 경우와 비슷하게 MERCOSUR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IMF나 WT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권유로 지속적인 개방정책과 규제완화, 민영화를 추구하였으나 현재 심각한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총 3,700만 명의 인구 중 약 2,0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는 좌파 성향의 정권들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많은 중남미국가들에 들어서는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남미국가들이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MERCOSUR · EU FTA 협상의 장애물로는 농업 보조금 문제, 서비스시장의 개방 문제, 정치적인 이슈들 외에도 MERCOSUR 수출의 급성장 등이 있는데,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의 등장은 EU 및 미국 등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5. 향후 협상 전망

MERCOSUR · EU FTA 협상은 2004년 이후 약 2년 가량 중단된 상태이다. 2006년 하반기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양측 의견에 따라 11월 리우에서 협상을 재개하였지만 형식화된 제안서를 교환하지 않았다. 이는 약 2년 동안 중단되었던 협상을 유연성있게 끝나가자는 취지에 따라 협상테이블에서 의논되는 모든 사항들을 문서화하거나 인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이런 방식을 디딤돌 삼아 양측은 협상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이끌어 2007년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화두로 부각되는 부문은 EU의 농산물 관련 이슈들이다. MERCOSUR측은 EU가 좀더 현실성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MERCOSUR 지역내 서비스산업 또는 자동차산업의 개방을 고려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은 구체적으로 EU가 30만 톤의 쇠고기, 20만 톤의 설탕, 100만 톤의 에탄올, 그리고 350만 톤의 옥수수과 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 EU가 원하는 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따라서 협상의 성공여부는 EU의 농산물 개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ERCOSUR · EU FTA 협상은 전형적인 남북격차(North-South Divide) 현상이라고 볼된다. 즉 MERCOSUR는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EU는 공산품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NAFTA와 비슷한 불균형적인 형태의 FTA라고 간주하는 만큼 협정에 거는 기대가 적다. NAFTA처럼 MERCOSUR · EU FTA는 EU와 같은 선진국들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자국 생산력이 저하되어 실제로 총FDI 유입이 늘어난다 해도 MERCOSUR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다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까지 EU가 협상 전부터 지속해온 투자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원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U로부터 들어오는 명목상의 투자금은 대부분 공기업의 민영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MERCOSUR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와 같은 MERCOSUR · EU FTA 체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FTA 협상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측간의 FTA 체결은 경제통합체간의 첫 FTA 체결이어서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체들의 급부상이 다자주의의 실패를 얼마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MERCOSUR와 EU가 FTA를 체결을 한다면 연간 약 400억 달러의 교역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존하는 어느 FTA보다도 큰 규모이다.

MERCOSUR · EU FTA는 현 상태로 진행된다면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 양측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상대방의 시장개방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간 유익하고 “win-win”이 되는 FTA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EU는 농산물 보조금 정책을 바꿔야하며 쿼터제도 또한 현 제도에 조건들만 덧붙이는 변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MERCOSUR 역시 서비스부문과 같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개방을 미루기보다는 적극적인 경쟁정책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남북격차 현상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생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능력 배양을 도입해야 한다.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상호간 경제적인 이득이 예상될 때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에 있어 MERCOSUR는 그다지 매력적인 FTA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고무 외에는 EU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고, 인도나 중국과 같은 급부상 중인 경제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며, 경기 변동도 심해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거시적 흐름상 FTA 체결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체결 자체가 안 될 것이라 단정 짓는 이는 드물다. 향후 마치 도미노효과가 일어나듯 상당수의 국가들이 서로간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 공생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구를 서로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치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FTA 체결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상 FTA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양측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및 파급효과가 적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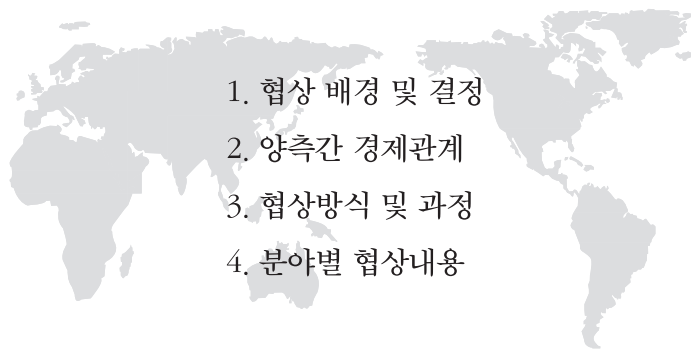
한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품목 외에도 각별히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잘 활용하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정치적 구도 면에서는 오래전부터 중남미와의 관계를 중요시해 왔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패권

주의와 맞서고자 하는 유럽의 정치·외교적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채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일례로 EU가 Mediterranean Free Trade Zone을 체결한 직후 미국은 모로코, 요르단 및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FTAA에 대해 EU가 MERCOSUR와의 FTA 협상을 개시한 것처럼 미국과 EU 사이엔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EU에 있어서 MERCOSUR는 여타 지역과의 FTA보다 경제적인 이득 효과가 낮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질적인 이득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A와 같은 자유무역협상들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MERCOSUR와 EU간의 FTA 타결도 한층 적극성을 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인 면 외에도 양측간의 협상은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U의 경쟁상대인 미국의 남미 진출은 EU가 MERCOSUR와의 협상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은 FTAA도 마찬가지로 낮다. 즉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들이 2005년 11월에 중단한 미국과의 FTAA 협상을 재개하게 되면 EU도 MERCOSUR와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양측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가 큰 관계로 의견차를 좁혀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체결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채 양측간 유연한 입장, 이중과세의 방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2004년 1월 체결된 MERCOSUR와 인도의 특혜무역협정(PTA)은 남남협력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MERCOSUR · 인도간 PTA는 외형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추동된 양상을 보였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MERCOSUR 회원국들과 인도는 UNCTAD, GATT, G-77 등 국제 포럼에서 남남협력의 중요성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990년대 들어 MERCOSUR와 인도와의 관계는 브라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간 관계는 정치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1996년 1월 브라질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카르도주 대통령은 1995년 취임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인도를 브라질의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바 있었다. 당시 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 확대 등 유엔개혁과 핵관련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Oxford Analytica 1996).

2000년대 들어 MERCOSUR와 인도와의 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양자간 관계 변화는 MERCOSUR내의 정치 지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2003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성향의 정권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MERCOSUR의 대외정책도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1990년대 MERCOSUR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물이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이나 MERCOSUR · EU 간 FTA 협상이 대외통상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대신에 그 빈자리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남남협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MERCOSUR와 인도간의 관계는 양자간 협력에 머물지 않고, 개도권 전반과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개도권의 주도세력으로서 MERCOSUR와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통해 선진국 일변도의 국제경제 질서 흐름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공조의 대표적인 예는 2003년 9월 개최된 WTO 칸쿤 각료회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MERCOSUR와 인도는 중국 등과의 협력하에 농업개도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G-20을 구성했다. 현재 G-20은 WTO 내에서도 개도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그룹으로 성장했다.

나. 경제적 배경

MERCOSUR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간 PTA 체결은 미주지역과 유럽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그간 미진했던 세계시장 편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

표 5-1. MERCOSUR의 권역별 수출입 의존도(200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역내(MERCOSUR)	20,978	12.8	21,164	19.4
중남미	21,480	13.1	6,656	6.1
미국	27,549	16.8	16,921	15.5
유럽	33,505	20.5	23,214	21.2
일본	3,814	2.3	4,239	3.9
기타	56,182	34.4	37,150	34.0
역외	142,530	87.2	88,180	80.6
총계	163,508	100.0	109,343	100.0

자료: Centro de Economia Internacional(www.cei.gov.ar)

국들은 1990년대 들어 수입대체산업화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수출 활성화에 주력해왔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수출지원책 부족에다 각국의 고정환율제 도입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약화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03년 집권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부는 21세기 경제성장의 활로를 수출에 두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룰라 정부의 수출 확대 노력은 매우 두드러졌다. 룰라 정부는 2003년 출범 초기부터 브라질 경제의 대외취약성을 극복하고 세계경제 편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수출확대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수출증대를 위한 룰라 정부의 노력은 먼저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세일즈 정상 외교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3년간 룰라 대통령은 40개국 이상을 방문, 신시장 개척은 물론 전통 수출시장의 확대에도 주력했다. 이 결과, 아프리카, 중동 등 그간 미개척시장이 브라질의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룰라 정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환급, 수출정책자금 융자 확대 등 전통적인 수출진흥정책 이 외에도 브라질의 해외 이미지·브랜드 제고 프로그램, 주별(州別) 수출확대프로그램 등 새로운 수출진흥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7년 설립되었으나 활동이 미미했던 브라질무역투자진흥공사(Apex-Brazil)의 역할과 기능을 2003년부터 대폭 강화했다. 이후 Apex-Brazil은 물류센터 건설, 각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Apex-Brazil은 2005년에만 국내외에서 박람회를 550회 개최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수출진흥책 이 외에 보다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주요 개도국들과 PTA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인도와의 PTA 체결은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자급자족 경제에 안주해왔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인도의 대외정책은 개도국이나 주변지역 중심의 협력에 머물

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인도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성장 잠재력 시험과 대외경쟁력 확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를 위해 FTA를 비롯한 대외진출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³²⁾

인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MERCOSUR를 위시한 중남미지역을 진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본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했다. 1997년에 인도 상무부는 중남미 진출 포괄적 프로그램인 “Focus: LAC”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까지 각 부처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수출촉진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었다.³³⁾

결과적으로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 MERCOSUR와의 PTA 체결은 Focus: LAC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는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현재 MERCOSUR 이 외에 칠레와 PTA를 체결(2002년 11월 18일)했다.

다.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MERCOSUR·인도간 협력은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ndia·Brazil·South Africa Dialogue Forum, 일명 IBSA)”을 통해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³⁴⁾ IBSA는 MERCOSUR·인도간 PTA 체결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했으며, 향후 전개될 MERCOSUR·인도간 FTA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32) 인도의 통상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Alves(2004) 참고.

33)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 4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수출진흥위원회, 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진흥기관의 수출증진 활동을 조정한다. 둘째는 인도 수출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출촉진정책을 실시한다. 셋째는 중남미지역 중에서도 중점 무역파트너(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선정해 지원한다. 넷째는 중남미 주력 수출품목으로 ①섬유 ②엔지니어제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③의약품 등 화학제품을 선정해 지원한다.

34) IBSA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Puri(2004) 참고.

크다.

2003년 6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무장관들은 3국간 협력의 토대 마련을 위해 브라질리아에서 IBSA 대화포럼을 개최했다. 3자간 협력 포럼은 2003년 9월 58차 유엔총회에서 3국간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4년 3월 인도 뉴델리, 2005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2006년 3

글상자 5-1. 제1차 IBSA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1. 무역부문
 - 3자간 교역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에 관한 실천계획 합의(IBSA Action Plan on Trade Facilitation for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 인도·MERCOSUR·SACU 3자간 FTA(T-FTA) 협상방식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 신속 설립 합의
2. 에너지
 - 이중연료에 대한 3자간 Task Force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 사용 촉진을 위해 공동 노력
3. 농업
 - 농업 및 관련분야의 3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4. 수송
 - IBSA 해운수송협정(IBSA Maritime Transportation Agreement) 체결
 - 항공협력 양해각서(MoU on Civil Aviation) 체결
5. 과학기술
 - 보건, 생명공학기술, 나노 과학 분야에서 협력 강화
 - HIV·AIDS 분야에서 협력 확대
6. 보건
 - 보건분야 실무그룹을 통한 3자간 협력 지속 추진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모색 위해 3자간 보건장관 회의 개최
7. 정보사회
 - IBSA 정보사회 프레임워크 합의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3자 협력의 기본토대 마련
8. 사회개발
 - 사회개발분야 실무그룹(1차 회의 2006. 6.12~14, 리우데자네이루 개최)을 통한 협력 추진
9. 빈곤 및 기아퇴치를 위한 IBSA 기금
(IBSA Facility Fund for Alleviation of Poverty and Hunger)
 - 제3국 지원 지속 확대
 - 매년 각국이 100만 달러씩 지원(IBSA 3차 회의 결정사항)

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각료회의를 통해 3국간 특별무역협정의 수렴, IBSA 기업정상회의, 3자간 비즈니스위원회(Trilateral Business Council) 설립, 무역 및 투자증대 방안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간 각료급 회의에 머물러 왔던 IBSA 포럼은 2006년 9월 13일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구축했다. 정상회의에서 3국은 무역, 에너지, 농업, 수송, 과학기술, 보건, 정보사회, 사회개발, 빈곤 및 기아 퇴치 등 9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1차 정상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그간 쌍무간 PTA에 머물러왔던 3국간 무역협정을 3자(인도·MERCOSUR·SACU)간 FTA(T-FTA)로 통합 수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상회의에서 3국은 3자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했다. 이로써 MERCOSUR·인도간 PTA는 앞으로 인도·MERCOSUR·SACU 3자간 FTA 협상으로 통합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1) MERCOSUR·인도간 교역관계

MERCOSUR와 인도간의 경제 관계는 양자간 정치 관계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2005년 기준으로 MERCOSUR의 인도와의 교역액은 27억 1,700만 달러로 최근 5년(2001~05년) 사이 규모가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역 규모 증가는 MERCOSUR의 전반적인 교역 규모 확대를 반영

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MERCOSUR의 교역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2%에서 2005년 0.9%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오히려 인도와의 교역 비중은 감소했다. 인도와의 교역비중 하락은 수출비중의 감소에 기인한 바 컸다. MERCOSUR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중은 2002년 1.2%에서 2005년에는 0.4% 포인트가 하락한 0.8%에 그쳤다. 그에 반해 수입비중은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5-1. MERCOSUR의 對인도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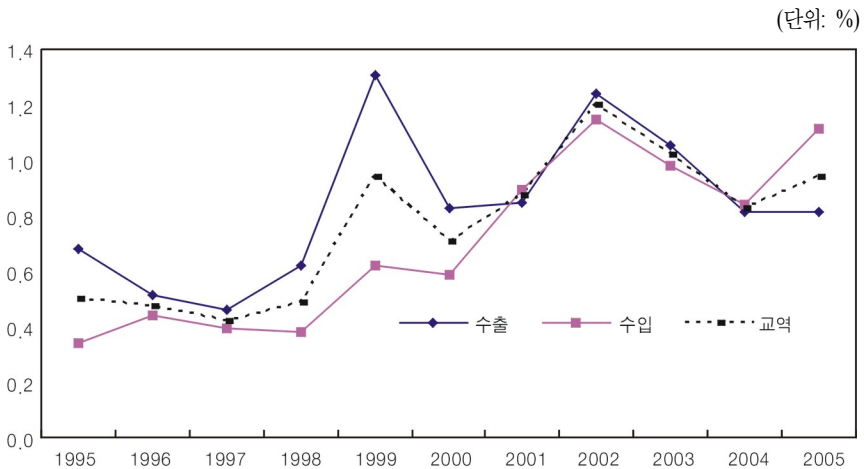


표 5-2. MERCOSUR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금액	478	386	384	505	970	736	751	1,103	1,122	1,130	1,378
	비중	0.68	0.51	0.46	0.62	1.30	0.83	0.85	1.24	1.05	0.81	0.81
수입	금액	269	397	414	395	541	548	779	746	698	824	1,339
	비중	0.34	0.44	0.39	0.38	0.62	0.59	0.90	1.14	0.98	0.84	1.11
교역	금액	747	783	799	901	1,511	1,284	1,530	1,849	1,820	1,955	2,717
	비중	0.50	0.47	0.42	0.49	0.94	0.71	0.87	1.20	1.02	0.82	0.94

자료: IMF DOTS CD ROM 자료 재구성

MERCOSUR는 인도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2002~04년)간 무역흑자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05년 들어 무역흑자규모는 인도로부터의 수입급증에 따라 거의 균형수준에 도달했다.

인도의 입장에서 MERCOSUR는 아직까지 중요한 교역 대상국은 아니다. 2005년 기준으로 인도의 교역에서 MERCOSUR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인도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MERCOSUR의 비중은 2005년에 각각 1.2%, 1.1%를 기록했다.

그림 5-2. 인도의 對MERCOSUR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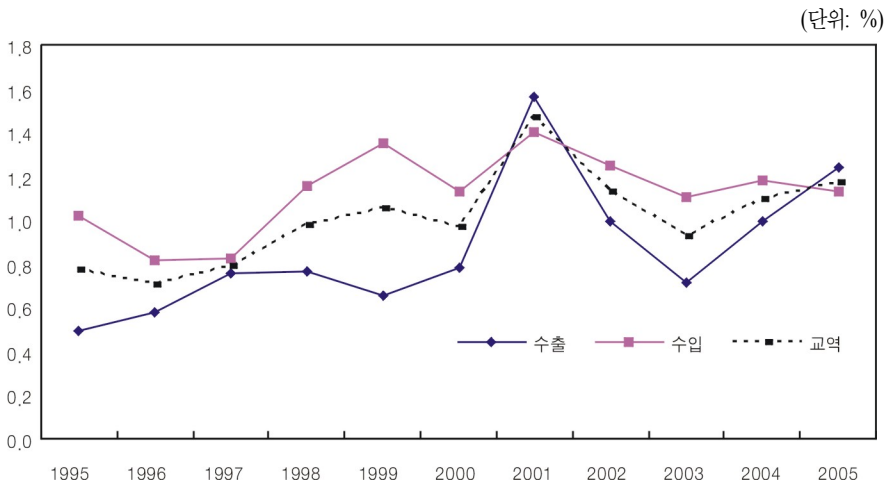


표 5-3. 인도의 對MERCOSUR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금액	151	186	261	256	236	334	708	501	436	750	1,216
	비중	0.50	0.57	0.75	0.76	0.66	0.78	1.57	0.99	0.71	0.99	1.24
수입	금액	350	295	337	486	645	567	826	736	818	1,175	1,516
	비중	1.02	0.82	0.82	1.15	1.35	1.13	1.40	1.25	1.10	1.18	1.13
교역	금액	502	481	598	742	881	901	1,534	1,238	1,253	1,925	2,733
	비중	0.77	0.70	0.79	0.98	1.05	0.97	1.47	1.13	0.93	1.10	1.17

자료: IMF DOTS CD ROM 자료 재구성

MERCOSUR의 인도와의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MERCOSUR가 인도에 주로 농산물 등 1차산품을 수출하는 데 반해, 인도로부터 수입은 공산품에 편중되어 있다.

MERCOSUR의 대인도 수출을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대두유를 중심으로 한 동식물성 유지가 대인도 수출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가 약 70%의 대두유를 인도에 수출했다. 대두유는 단일품목으로 아르헨티나의 대인도 수출의 90%, 브라질의 대인도 수출의 40%를 차지했다.³⁵⁾

두 번째 수출 품목은 당류와 설탕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이 두 제품의 비중만 약 62%에 달했다. 공산품 중에서는 기계 및 기계부품, 일반차량 등의 수출

표 5-4. MERCOSUR의 대인도 10대 수출 품목(2004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금액	비중
H15 동식물성 유지	483,371	142,486	361	0	626,219	50.7
H17 당류와 설탕	387	136,820	0	0	137,207	11.1
H26 팥, 슬랙, 회	43,923	72,607	0	0	116,529	9.4
H22 음료 및 알코올	42	92,980	0	0	93,022	7.5
H84 기계·기계부품	6,383	41,786	0	0	48,170	3.9
H29 유기화학품	634	43,610	0	5	44,248	3.6
H41 원피와 가죽	17,110	5,902	0	1,297	24,309	2.0
H87 일반 차량	246	19,849	0	0	20,095	1.6
H52 면	0	12,192	3,061	66	15,319	1.2
H40 고무	337	10,028	0	0	10,366	0.8

자료: UN COMTRADE 온라인 자료 재구성

35) 인도는 세계 최대의 식용 채소유 수입국이다. 채소유 수입은 인도 총농산물 수입의 70%, 인도 총 수입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드러졌다. 2004년 대인도 10대 수출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농산품 등 1차산 품은 전체 수출의 80%를 상회하는 데 반해 제조품의 수출은 20%에 불과했다.

반면에 MERCOSUR는 인도로부터 유기화학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유기화학품의 비중은 33.1%에 달했다. 두 번째로 대인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석유 등 광물성 연료에너지로 그 비중은 23.2%에 이르렀다. 이 두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만 56%에 달했다. 이 외에도 MERCOSUR는 인도로부터 의료용품, 인조필라멘트, 기계 및 기계 부품 등 주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자간 수출입, 특히 브라질과 인도의 수출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석유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간 교역에서 석유의 비중은 1997년 브라질의 석유산업 규제완화 및 민영화 이후 증가했다. 인도의 Reliance Petroleum Ltd.사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간 계약 체결의 결과, 브라질

표 5-5. MERCOSUR의 對인도 10대 수입 품목(2004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금액	비중
H29 유기화학품	87,378	160,597	4,480	9,589	262,044	33.1
H27 광물성 연료에너지	183,174	51,237	0	0	183,178	23.2
H30 의료용품	5,154	31,125	1,430	1,237	59,058	7.5
H54 인조필라멘트	2,515	25,703	14	590	34,244	4.3
H84 기계·기계부품	6,232	18,948	552	560	33,047	4.2
H32 염료, 안료, 페인트	6,942	16,362	259	265	26,413	3.3
H39 플라스틱	4,105	12,461	318	2,149	22,935	2.9
H85 전기기, TV, VTR	5,749	8,419	639	401	19,250	2.4
H87 일반 차량	5,872	8,616	1,466	1,719	17,477	2.2
H90 광학·측정·정밀기기	1,559	1,559	56	194	10,425	1.3

자료: UN COMTRADE 온라인 자료 재구성

은 캄푸스만(Bacia de Campos)에서 생산한 석유를 인도에 수출하는 대신, 인도는 브라질에 디젤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교역 측면에서 MERCOSUR와 인도는 아직까지 중요한 파트너는 아니다. 그러나 양자간 수출입 품목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간 무역구조의 상호 보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2) MERCOSUR와 인도의 관세구조

MERCOSUR와 인도는 관세율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양자간 교역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PTA나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교역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관세동맹인 MERCOSUR는 1995년부터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5년 현재 MERCOSUR의 평균 대외공동관세는 12.3%이다. 그에 반해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인도의 평균 관세는 MERCOSUR보다 2배 이상 높은 29.1%이다.

표 5-6. MERCOSUR와 인도의 관세구조

	단순평균			최고관세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아르헨티나	12.7	12.0	12.9	35	22	35
브라질	12.4	10.3	12.7	55	55	35
파라과이	10.8	10.1	10.9	30	30	28
우루과이	13.3	12.0	13.5	55	55	23
MERCOSUR	12.3	10.1	12.7	20	20	20
인도	29.1	37.4	27.9	182	182	160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5.

양자간 관세 격차는 농산물 분야에서 특히 현저하다. 인도의 농산물 평균 관세는 37.4%인 데 반해, MERCOSUR의 농산물 평균 관세는 3배 이상 낮은 10.1%이다. 양자간 공산품의 관세격차는 농산물만큼 크지는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5-7. MERCOSUR와 인도의 품목별 관세구조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
농산물	과일 및 채소	12.3	10.8	10.3	12.4	32.4
	커피, 차, 코코아	15.3	13.3	12.9	15.3	56.3
	설탕 및 사탕과자	19.5	16.5	19.7	19.0	48.4
	향료, 곡식	14.6	12.6	12.5	14.5	34.6
	곡물	6.9	5.9	5.7	6.6	49.4
	동물 및 관련제품	10.8	8.9	8.9	10.8	33.0
	지방종자, 동식물성 유지	9.6	7.8	7.8	10.1	52.5
	절화, 식물 및 식물재료	7.6	5.9	6.3	7.7	25.9
	음료 및 알코올	19.3	17.5	17.0	19.3	78.4
	유제품(乳製品)	17.1	18.3	15.1	17.1	35.0
	담배	18.8	16.8	16.6	18.0	30.0
	기타 농산물	8.8	7.3	7.0	8.8	24.6
	농산물	12.0	10.3	10.1	12.0	37.4
비농산물	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	12.8	11.0	10.8	12.8	25.7
	섬유류	19.7	17.7	17.9	19.6	28.0
	가죽, 고무, 신발	15.9	14.2	13.4	16.0	28.6
	금속	13.0	11.4	11.1	13.3	29.0
	화학 및 사진제품	9.6	8.4	8.2	10.1	29.3
	수송장비	13.6	18.3	8.7	12.1	37.0
	비전기기계	5.7	13.0	3.5	9.0	25.2
	전기기계	13.8	14.6	10.6	14.2	24.8
	광물제품 및 귀금속	9.3	7.6	7.4	9.3	26.8
	기타제조품	15.5	15.7	13.4	16.4	27.0
	수산물 및 수산제품	12.0	10.1	10.1	12.0	30.0
	석유	0.3	0.2	0.2	0.3	18.0
	비농산물	12.9	12.7	10.9	13.5	27.9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5*.

MERCOSUR의 공산품 평균 관세가 12.7%인 데 반해 인도의 공산품 평균 관세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27.9%이다.

세부 품목별로 양자간 관세 격차를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의 경우 유제품, 커피, 차, 코코아, 동·식물성 유지 등의 품목에서 관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산물의 경우 수송장비, 화학제품, 비(非)전기기계, 수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MERCOSUR와 인도는 모두 섬유류, 가죽, 고무, 신발, 기타 제조품 등의 품목에서 15% 이상의 고(高)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투자

MERCOSUR·인도간 투자관계는 무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양자간 투자관계는 인도기업의 일방적인 대MERCOSUR 투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 MERCOSUR 회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매우 드문 상황이다.

먼저 인도기업은 MERCOSUR 회원국 중에서도 브라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인도의 대브라질 직접투자는 4억 9,589만 달러로 브라질 총FDI 유입의 0.25%에 달했다. 최근 들어서 주요 진출 분야는 제약분야와 자동차분야에서 바이오에탄올 분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인도기업의 진출은 특히 제약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1999년 Ranbaxy사가 의약품 생산을 위해 상파울루에 합작투자 공장을 건설한 것을 시발로 Core Health Care/Claris Life Sciences사는 상파울루에 판매법인을 설립했다. M/s Strides Arcolabs사도 리우데자네이루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2003년 9월에는 에스

피리투상투(Espirito Santo)주(州)에서 완제품 생산 공장을 가동했다(Di Masi & Loustau 2006).

한편 인도의 에탄올 상용화 정책 발표 이후 관련 인도기업의 브라질 진출도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5월에는 인도 설탕 및 에탄올 최대 생산업체인 BHL(Bajaj Hindusthan)사가 브라질에서 에탄올 및 설탕생산을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2006년 9월에는 인도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의 하나인 Reliance Industries사가 브라질에 에탄올 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iance사는 에탄올 원료인 사탕수수의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브라질에 에탄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인도에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브라질의 석유에너지 분야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자국 국영기업을 통해 브라질내 일부 유전의 지분을 14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비롯해 향후 15년간 유전 공동개발 사업에 1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질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도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주요 진출 사례로는 Kedia Group of Companies(합작투자), Oswal Sugar

표 5-8. 인도의 對브라질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누적액		유입액					총누계	비중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7	26.10	5.71	5.57	8.27	3.59	3.69	52.94	0.03
인도	0.00	459.03	3.38	4.00	7.43	14.14	7.91	495.89	0.25
총계	41,695.62	103,014.51	21,041.70	18,778.30	12,902.41	20,265.34	21,521.57	197,523.81	100.00

자료: 브라질중앙은행(BCB)

Factory(합작투자), Indo American Chemicals PVe.(아르헨티나 기업과 협력), Hero Motors(오토바이조립 공장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인도기업의 경우 MERCOSUR 시장 진출을 위해 우루과이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Software Development Centre)를 설립했다.

한편 MERCOSUR 회원국 기업들도 초기 단계이긴 하나 인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브라질의 대표적인 항공기제조업체인 Embraer사는 인도 최대 항공기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에서 알코올 사용 불에 편승해 세계 최대 알코올 증류공장 건설업체인 브라질의 Dedini사는 인도의 Uttam Group과 손잡고 텀키 방식으로 알코올 연료 제조 공장을 건설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Galileo Group은 최근 인도에 500만 달러 규모의 80개 천연가스(CNG) 주유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다. 관심사항 및 품목

1) MERCOSUR측의 관심사항 및 품목

MERCOSUR 회원국들은 인도의 방대한 시장규모, 빠른 경제 성장세 덕분에 MERCOSUR · 인도간 PTA가 체결될 경우 대인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NCTAD(2004)의 연구에 따르면 FTA 체결 시 MERCOSUR의 대인도 수출은 2000~02년 평균 8억 4,000만 달러에서 20배가 증가한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MERCOSUR의 대인도 수출품목 중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품목은 석유, 송신기기, 금, 동광 등으로 UNCTAD는 분석했다. 이 외에도 브라질의 주력 수출상품인 대두유, 자동차부품 및 항공기 등도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도와의 PTA에서 MERCOSUR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으로 화학제품, 금속기계, 울 및 가죽제품 등을 들었다. 특히 아르헨티나

는 식용유 수출로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가 현재 식물성 유지에 대해 높은 관세(해바라기씨유 75%, 대두유 45%)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P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될 경우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도가 세계 최대 식물성 유지 수입국이라는 점도 대인도 수출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르헨티나 민간부문의 추정에 따르면 인도와 FTA 체결로 아르헨티나는 1년내에 4~6억 달러 수출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각종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한 높은 수출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표 5-9. MERCOSUR의 對인도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6단위		현재 수출액	잠재 수출액
270900	석유, 역청유(원유)	111.1	2,565.4
271000	석유, 조제품	0.4	1,298.3
85225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6	432.9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금	0.0	353.5
260300	동광과 그 정광	15.6	295.8
150710	대두유	279.8	16.2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4.0	181.6
880230	자중 2,000Kg초과 15,000Kg이하의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0.0	179.4
520100	면(카야드 또는 코옌한 것 제외)	30.4	116.4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않은 형상의 금	0.0	123.1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 텔레비전 수상기의 기타 부분품	0.5	121.5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0.1	118.7
150790	대두유와 분획물	89.9	21.8
880240	자중 15,000kg초과의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0.0	88.4
소계		543.4	5,913.0
기타		296.9	7,044.4
총계		840.3	12,957.4

자료: UNCTAD(2004a)

MERCOSUR 중심국인 브라질에서 민간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브라질리아에서 인도·브라질 정상회담과 더불어 개최된 비즈니스회의는 브라질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브라질·인도 비즈니스회의를 주최한 브라질의 대표적인 기업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CNI) 사무총장은 브라질 기업들이 아직까지 인도 진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브라질 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 속에서도 상파울루경제인연합회(FIESP)는 브라질 수출업체들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가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인도 업계 또한 지리적 거리와 이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양국간 무역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합작투자 기회가 많다고 평가했다. FIESP에 따르면 브라질은 IT, 에너지, 특히 환경연료, 화장품, 버스 및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³⁶⁾

2) 인도측의 관심사항 및 품목

가) 수출 확대 품목

UNCTAD(2004a)의 연구에 따르면 MERCOSUR·인도간 FTA 체결 시 인도의 대MERCOSUR 수출은 2000~02년 평균 6억 5,290만 달러에서 121억 달러로 약 20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UNCTAD의 연구결과에 기초해볼 때, 인도측은 MERCOSUR와 PTA 체결로 자국이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석유, 의약품, IT관련 제품 등의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무역산업연합회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36) LainNews.com(2006), "India & Brazil: Getting closer," *Latin America-Asia Review*. (September)

인도는 MERCOSUR와의 PTA로 화학, 석유화학, 의약분야에서 보다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6월 인도수출입은행과 상공회의소(FICCI)의 공동 연구도 이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의약, 석유화학, 화학분야에서 대 MERCOSUR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은 총 69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691개 품목 중에서도 34개 품목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220개 품목은 100~1,000만 달러, 225개 품목은 10~100만 달러의 수출

표 5-10. 인도의 對MERCOSUR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6단위		현재 수출액	잠재 수출액
271000	석유, 조제품	21.23	1,958.7
300490	기타 의약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8.4	543.2
870899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0.4	216.9
847330	자동차차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1	171.7
401120	버스, 화물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	1.4	123.3
300420	기타 향생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7.7	103.3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정제한 동의 것)	0.0	101.1
380810	살충제	0.7	97.1
300390	기타 의약품	4.0	91.9
294190	기타 향생물질	10.0	72.2
291736	테레프탈산, 그 염	0.0	80.2
540752	염색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장섬유 85%이상)	0.1	77.1
소계		245.9	3,636.6
기타		407.0	8,438.3
총계		652.9	12,074.9

자료: UNCTAD(2004a)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282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도측은 MERCOSUR와 P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 이 품목들을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먼저 식물성 유지와 식품산업계는 MERCOSUR가 농산물 분야, 특히 대두 및 대두유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PTA 협상분야에서 이 품목들의 제의를 주장했다. 2004년 3월에는 인도 자동차업계도 MERCOSUR와의 PTA 협상에서 승용차와 상용차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도무역산업연합회 또한 양자간 PTA 체결로 인도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PTA 협상품목에서 자동차부품의 예외를 주장했다. 이같은 인도 정부의 우려와 요청사항은 양자간 PTA 협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종국적으로 이 제품들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의약품

인도는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MERCOSUR와의 PTA에서도 인도는 의약품의 수출 확대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의약품은 현재 인도의 대MERCOSUR 수출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MERCOSUR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산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MERCOSUR의 의약품 대외공동관세 수준은 0~14%로 일부 의약품의 경우 면세 대상에 속한다.

브라질은 세계 10대 의약품 시장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56억 달러(2003년 기준)에 달한다. 1999~2003년 기간 브라질은 연간 15억 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했다.

1990년대 말 브라질에서 제네릭 약품³⁷⁾에 대한 법률 개정은 인도·MERCOSUR 간 교역 및 투자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99년에 브라질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의 시장도입을 촉진시키는 제네릭 의약품법(Generic Drug Law, Law 9787)을 제정했다. 브라질 정부는 빈곤층이 보다 자유롭게 저렴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브라질 전체 의약품 시장의 6%(2002년)를 차지하며,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제네릭 의약품 도입 이후 저가 에이즈 퇴치 제네릭 약품을 생산·수출하는 인도 기업들이 브라질에 생산공장 건설이나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연이어 진출했다.

한편 인도상공회의소(FICCI)는 인도 제네릭 약품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음악 및 영화에서부터 방송, 출판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이르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세계 무역에서 가장 역동적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인도의 오락산업의 규모는 2004년 43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배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시장 규모도 2004년 20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67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의 최대 소프트웨어 수출업체인 Tata Consultancy Services(TCS)는 이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Software Development Centre)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아웃소싱,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인증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비스지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기타 중남미 국가들이다.

지금까지 창조산업분야에서 인도의 교역은 대부분 인도계 이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창조산업분야

37) 특허 보호 중인 의약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보호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통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특허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흔히 쓰이는 ‘카피약’의 정식 명칭이다.

에서의 교역 다변화 정책을 피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MERCOSUR와의 FTA가 창조산업의 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상공회의소(FICCI)의 인도·MERCOSUR 창조산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음악산업분야에서 MERCOSUR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라) 외국인직접투자

현재 인도기업의 MERCOSUR 진출은 FDI나 합작투자를 통해 주로 의약품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PTA나 FTA가 체결될 경우 인도 기업의 MERCOSUR 진출은 더욱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인도 수출입은행의 한 연구보고서(MERCOSUR: A Gateway to Latin American countries)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인도기업은 향후 MERCOSUR의 전력 송신, 통신, 석유 및 가스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물론 전자무역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수출입은행 보고서는 분석했다.

수출입은행은 또한 인도의 방대하고 발전된 철도시스템의 경험을 살려 MERCOSUR의 철도건설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인도는 광물 및 석유 탐사 등의 분야에서 MERCOSUR와 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공통 관심사항

인도와 브라질은 에탄올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2002년 4월에 인도와 브라질은 에탄올과 석유 및 디젤 혼합기술공유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특히 인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했다. 당시 인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9개 주를 시작으로 석유에 에탄올 5% 혼합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또한 향후 에탄올 혼합 비율을 10%로 확대하며 국가

전역으로 에탄올 혼합을 확대하고 에탄올과 디젤 혼합을 테스트 할 계획이었다. 인도 석유 및 천연가스부 장관에 따르면 5% 에탄올 혼합 결정으로 인도에서 연간 에탄올 수요는 5억 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이르면 2006년 12월부터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입할 예정이다.

2006년 9월 개최된 IBSA 정상회의에서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촉진키 위해 3국간 Task Force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MERCOSUR가 역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실질적인 무역협정인 MERCOSUR · 인도간 PTA는 협상방식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양자간 PTA 협상은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PTA 협상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3년 6월 양자간 PTA 체결의 사전 단계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토대로 양자는 같은 해 8월 말 PTA 협상을 종결짓고, 2004년 1월 공식적으로 PTA를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체결한 PTA 협정문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MERCOSUR와 인도는 양자간 PTA 협상의 가시적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불완전한 상태나마 우선적으로 PTA를 체결했다. PTA 체결 이후 양자는 2004년 말까지 여섯 차례의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완전한 형태의 PTA에 최종 합의했다. 그 결과는 2005년 3월 MERCOSUR · 인도 PTA 운영협정 체결로 나타났다. 양자간 PTA 협상은 더디지

만 지속적이며 단계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같은 협상과정은 협상 지체에 따른 협상의 긴장감을 해칠 수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 양자간 협상은 포지티브 방식(positive approach)을 따랐다.³⁸⁾ 이같은 협상방식은 특히 관세양허 품목 선정 시 준용되었다. 양자는 상호간에 관세 양허 목록과 관세 삭감폭을 제시하고, 제시한 관세양허품목에 대해서만 무역자유화를 허용했다.

세 번째로 MERCOSUR · 인도 PTA 협상에서는 제도적으로 MERCOSUR의 다른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자간 공식 협상기구로 협상위원회(Negotiating Committee)가 설립되었으며, 이 협상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협상위원회는 MERCOSUR측에서는 공동시장그룹(CMG) 대표, 인도측에서는 상무부 대표로 구성된다.

네 번째로 양자간 협상은 내용 면에서 매우 유연한 방식을 채택했다. 양자간 PTA는 그간 MERCOSUR가 볼리비아, 칠레, 안데스공동체(CAN) 국가들과 체결한 FTA와는 내용 면에서 크게 달랐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FTA에서는 관세양허 대상이 전 품목을 포괄하며 관세도 일정한 기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종국에는 무세화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에 반해 MERCOSUR · 인도 PTA에서 관세양허 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4~5%인 450개에 불과하다. 또한 관세인하도 완전 제로화 방식이 아닌 기존 수입관세를 10%, 20%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기존 어느 특정 제품의 수입관세가 10%였다면 이에 대해 10% 관세특혜를 제공할 경우 부과 관세는 9%가 된다.

다섯 번째로 양자간 PTA 협상에서는 약소국에 대한 특혜가 인정되었다. 대표적

38) CUTS-CITEE(2005b)

으로 인도는 MERCOSUR 회원국 중 최빈국에 속하는 파라과이에 대해 관세양허 시 특혜를 제공했다.

나. 협상과정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협상방식을 채택해온 MERCOSUR · 인도간 PTA 협상은 지금까지 크게 기본협정 체결 → 특혜무역협정 체결 → PTA 운영협정 체결 (Agreement to operationalise PTA)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5-11. MERCOSUR · 인도 특혜무역협정 추진 일정

협정 및 협상 내용	일시
MERCOSUR · 인도 기본협정(MERCOSUR · India Framework Agreement) 체결	- 2003년 6월 17일
MERCOSUR · 인도 특혜무역협정(MERCOSUR · Indi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협상 종료 - 협상위원회(Comite de Negociacion) 설립	- 2003년 8월 31일
MERCOSUR · 인도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 2004년 1월 25일
MERCOSUR · 인도 특혜무역협정(PTA) 운영협정 체결을 위한 6차례 협상 추진	- 2004년 3 ~ 12월
MERCOSUR · 인도 특혜무역협정(PTA) 운영협정 체결	- 2005년 3월
IBSA 3자간 FTA 체결 연구를 위한 실무그룹 창설	- 2006년 9월

2003년 4월 24~25일 MERCOSUR와 인도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했다. 이 결과, 1단계로 2003년 6월 17일 MERCOSUR와 인도는 기본협정(MERCOSUR · India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양자간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을 확대시키며 WTO 규

범에 입각해 자유무역지대(FTA) 협상을 위한 여건과 메커니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기본협정 제2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협정 당사국들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제한된 수준에서의 PTA 협상을 완료기로 합의했다. 협정 당사국들은 또한特惠관세 범위의 확장을 목표로 주기적으로 협상을 추진기로 합의했다(기본협정 제3조).

협정 당사국들은 협상 추진을 전담할 협상위원회(Comité de Negociación) 설립에도 합의했다. 협상위원회는 MERCOSUR측에서는 공동시장그룹(GMC), 인도측에서는 상무부 대표가 맡는다. 협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양자간 교역 및 제3국과의 교역에서 적용된 관세에 대한 정보 교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결정, 위생 및 검역, 기술표준,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특별관세제도, 분쟁해결절차 관련 정보교환,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협상 추진 등이다(기본협정 제5조).

또한 양자는 교역 및 투자기회 발굴을 위한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세미나, 기업대표단 파견, 박람회, 심포지엄, 전시회 등 각종 무역증진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 파견, 훈련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을 통해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며, WTO GATS와 협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교역 확대 및 다각화를 도모기로 합의했다. 동식물 보건, 표준화, 위생검역의 상호인증 등과 관련해 양측의 해당기간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MERCOSUR와 인도는 기본협정 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2003년 8월 31일 PTA 협상을 종결했다. 그러나 당시 PTA 협상은 PTA의 주요 쟁점인 관세인하 협상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양자간 실질적인 PTA 협상은 2004년 1월 양자간 PTA 체결 이후

글상자 5-2. 협상위원회(Comité de Negociación)의 주요 기능

1. 양자간 적용관세, 쌍무간 교역 및 제3국간 교역, 무역정책 정보 교환
2. 시장접근, 관세 및 비관세정책, 위생검역조치, 기술표준,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특별관세제도, 분쟁해결 등의 정보 교환
3. 비즈니스원활화 등 양자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
4.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협상 기준 수립
5. 정해진 협상 기준에 따라 양자간 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 협상
6. 기타 협정국이 결정한 과제 수행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1월 PTA 체결 이후 양자는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 협상 종료를 기대했으나 협상은 12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자간 PTA 협상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1~3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인 관세양허 품목 선정에 집중되었다. 이후 4차 협상부터는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분쟁해결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PTA 체결 이후 1차 협상은 2004년 3월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자는 각각 100개의 관세양허품목에 합의했다. 2004년 3월 말과 6월에 2차와 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4년 6월 말 뉴델리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 인도는 388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목록을 제시했다. 관세 삭감폭은 10%와 20%였다. 그러나 인도가 제시한 관세양허 목록에는 곡류와 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2004년 8월 27일 MERCOSUR는 인도에 관세양허 목록을 제시하며, 밀, 옥수수, 밀가루, 옥수수 가루, 대두, 대두유, 낙화생유, 해바라기씨유, 대두박, 면화박, 해바라기가루 등의 품목이 인도의 관세양허 목록에 포함되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4년 9월 8~10일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4차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양허 목록에 최종 합의, 부속서 I과 II를 완료했다. 양측은 세이프가드 및 분쟁해결 규정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원산지관련 규정은 원산지 인정을 둘러싼 양측

의 대립으로 차기 회의로 결정이 넘겨졌다.

제5차 협상은 당초 10월 개최기로 했으나 2004년 11월 3~4일로 연기되었다. 브라질리아와 뉴델리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5차 회의에서 양측은 논란이 많던 원산지규정에 합의했다. 마침내 양측은 2004년 12월 16일 개최된 6차 협상에서 PTA 운영 협상을 최종적으로 종결지었다.

MERCOSUR와 인도는 2004년 PTA 협상을 토대로 2005년 3월 PTA 운영 협정을 체결했다. 양자간 PTA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의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4. 분야별 협상내용

특혜무역협정문은 크게 18장 35조 5개의 부속서로 구분된다. 협정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18장(chapter)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협정의 목적, 제2장 무역자유화, 제3장 일반적 예외, 제4장 국영무역회사, 제5장 원산지규정, 제6장 내국민대우, 제7장 관세산정, 제8장 세이프가드조치, 제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0장 무역기술장벽, 제11장 위생 및 검역조치, 제12장 협정운영, 제13장 협정 개정 및 수정, 제14장 분쟁해결, 제15장 협정발효, 제16장 협정 탈퇴, 제17장 협정문 보관, 제18장 이행 규정 등이다. 5개의 부속서는 MERCOSUR와 인도의 각각의 관세양허품목(부속서 I: MERCOSUR의 452개 품목 관세 양허 목록, 부속서 II: 인도의 450개 품목 관세 양허 목록), 원산지규정(부속서 III), 세이프가드(부속서 IV), 분쟁 해결절차(부속서 V) 등이다.

양자간 PTA에서는 협정의 관리를 위해 공동운영위원회(Joint Administration Committee)를 설립했다. 운영위원회는 MERCOSUR측에서는 공동시장그룹, 인도

측에서는 상무부 대표가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첫 회의를 갖고 작업절차를 수립한다.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번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글상자 5-3. 공동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1. PTA 협정, 관련 부속서, 추가 프로토콜, 양자간 대화지속 등의 적절한 기능 및 실행 감독
2. PTA의 변경 및 수정 사항을 회원국에 제출
3. PTA의 무역자유화 과정 평가, 양자간 무역발전 연구,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추가적 조치 권고
4. PTA, 관련 부속서 및 추가적 프로토콜 규정으로 인한 기타 기능 수행
5. PTA 관련 분야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장려를 위한 메커니즘 설립
6. PTA 관련 분야의 상호이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제안
7. 필요시 관세, 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관련 보조기구 설립

가. 시장접근

시장접근은 MERCOSUR와 인도의 PTA 협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당초 야심 차게 추진되던 양자간 PTA 협상은 관세양허 품목이 크게 축소되며 의미가 크게 반감되었다. 당초 양자간의 관세양허 품목수는 1,600~1,700개에 달했다. MERCOSUR는 인도에 1,700개 관세양허 품목을 제시했고 인도는 반대로 1,600개 품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이 품목 수는 450개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같이 협상 초기에 비해 관세양허 품목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포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양측 이익단체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데 연유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2004년 PTA 운영 협상을 앞두고 인도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정부가 집권하며 인도 전경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양허품목수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운영협정 체결을 통해 MERCOSUR는 452개, 인도는 450개 품목의 관세를 양허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관세 삭감폭은 10%, 20%, 100%³⁹⁾ 3단계로 구분했다.

품목별로 관세인하 삭감폭의 구성을 살펴보면 MERCOSUR의 경우 전체 품목 중 394개 품목이 10% 관세 삭감에 집중되었다. 이는 MERCOSUR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인도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인도의 경우 전체 품목 중 336개 품목이 20% 관세 삭감에 집중되었다.

표 5-12. MERCOSUR와 인도의 관세양허

MERCOSUR의 오퍼(Offer)			인도의 오퍼(Offer)		
관세 삭감폭	품목수	평균 대외공동관세	관세 삭감폭	품목수	평균 관세
10	394	5.27	10	93	90.94
20	45	7.50	20	336	37.04
100	13	0.00	100	21	3.13
총 관세품목	452		총 관세품목	450	

자료: Pereira(2006)

특히 시장접근 협상에서 양자는 상호간에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품목을 제외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먼저 양측의 전체 관세양허 품목 중 농산물의 품목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MERCOSUR의 경우 인도에 전체 452개 품목 중 18개 품목만을 양허했다. 이는 전체 관세양허 품목의 4%에 불과한 것이다. 18개 품목 중에서 관세인하 삭감폭이 10%인 품목은 16개, 20%인 품목은 2개

39) 여기서 100% 관세 삭감은 이미 대상 품목의 관세가 0%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었다.

였다. 이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도가 MERCOSUR, 특히 브라질에 수출(2003년 기준)한 품목은 수지유(aceites esenciales) 정도였다. 그나마 나머지 17개 농산품의 경우 당시 협정 체결 시까지 인도의 대MERCOSUR 수출은 전무(全無)했다. 파라과이의 경우 농산물중 인도에 양허한 품목은 껌질있는 야자열매, 카민종자 등 2개(20% 관세 삭감)였다. 이 두 품목 또한 당시까지 인도로부터 수입은 전무했다(de la Sota 2004).

MERCOSUR와 마찬가지로 인도도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만 관세양허를 허용했다. 전체 관세양허 품목 중 8.4%인 38개 품목만이 농산품이었다. 38개 품목 중에서는 12개 품목이 100%⁴⁰⁾ 관세 삭감 대상이며, 12개 품목은 20%, 14개 품목은 10% 관세 삭감 대상이었다. 100% 관세 삭감 품목에는 소, 양, 버펄로, 말 가죽 등이 포함되었다. 양가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인도가 MERCOSUR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10% 관세 삭감 품목 중 눈길을 끄는 품목은 대두유이다. 대두유는 MERCOSUR의 대인도 최대 수출품이다. 그러나 이 품목에 대한 인도의 관세인하 혜택은 MERCOSUR 회원국 중 파라과이에만 국한되었다. 그것도 수입량을 연간 3만 톤으로 제한했다(de la Sota 2004).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공산품 중에서도 양자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제외되었다. 상대적으로 제조품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도는 관세양허 품목에 화학제품, 섬유, 기계 및 가죽품목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도는 브라질이 양허를 요구한 자동차부품을 양허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MERCOSUR는 인도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학제품을 관세양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양측이 시장접근 협상에서 민감 품목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은 양자간 10대

40) 인도는 이들 제품에 대해 실제로 수입관세를 부과(0%)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인도의 WTO 양허 관세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MERCOSUR에 100% 특혜 제공은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관세인상 시 MERCOSUR산 제품에는 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출입 품목 중 주목할 만한 관세양허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2004년 기준으로 MERCOSUR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 중 인도가 MERCOSUR에 관세 삭감 혜택을 제공한 품목은 1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앞서 설명했듯이 파라과이에 국한시켰다.

표 5-13. MERCOSUR의 對인도 10대 수출품목과 인도의 관세양허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관세양허 폭
1	대두유	564,006	10
2	사탕수수	132,247	0
3	에틸 알코올	86,272	0
4	유산동	56,497	0
5	동광	35,841	0
6	해바라기씨유	28,791	0
7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인공수지의 원료)	15,947	0
8	정제된 대두유	14,318	0
9	철광	11,422	0
10	소가죽	10,426	0

주: 수출액은 2004년 기준

자료: www.abeceb.com

인도와 마찬가지로 MERCOSUR도 대인도 수입품목에 대해 인상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10대 수입품목 중 MERCOSUR가 관세혜택을 부여한 품목은 3개였다. 그러나 이중 1개 품목은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가 이미 0%이기 때문에 관세인하 혜택의 의미가 없었다. 다른 2개 품목도 이미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가 2%로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10% 관세삭감 혜택이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양자간 PTA에서 시장접근 협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세양허 품목수가 소수인 데다 대부분의 민감 품목을 제외시킴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표 5-14. 인도의 對MERCOSUR 10대 수출품목과 MERCOSUR의 관세양허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관세양허 폭	대외공동관세
1	가스오일	177,681	100	0
2	폴리에스터 원사	16,299	0	16
3	기타 복소환식 약품	10,836	10	2
4	폴리에스터 방적사	10,057	0	16
5	석탄 코크스	8,975	0	0
6	시페르메트린(cipermetrine)	7,852	0	14
7	살충제(endosulfan)	7,616	0	12
8	기타 락톤(유기무수산의 일종)	7,479	10	2
9	세팔레키신(경구용 항균제)	7,249	0	14
10	아목시실린(경구 페니실린)	7,036	0	14

주: 수출액은 2004년 기준

자료: abeceb.com

나.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MERCOSUR · 인도 PTA 협상 과정에서 시장접근 다음으로 쟁점이 많았던 분야이다.

먼저 MERCOSUR · 인도간 PTA에서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규정은 크게 4부 37조로 구성된다. 4부는 다시 일반규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서의 관리와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양자간 PTA에서 원산지 인정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양자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에 원산지로 인정된다. 두 번째로 제3국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양국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양자간 PTA에서 실질변형의 판정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한다.

글상자 5-4. MERCOSUR의 원산지규정

전통적으로 MERCOSUR는 제3국과 FTA 추진 시 원산지규정을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혹은 단독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부가가치 비율의 경우 60%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특별 원산지규정을 도입해왔다.			
	MERCOSUR	MERCOSUR · 칠레	MERCOSUR · 볼리비아
일반규정	- 세번변경 및(혹은) 부가가치	- 세번변경 및(혹은) 부가가치	-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
세번변경 기준	- 4단위	- 4단위	- 4단위
부가가치 기준 산정	- FOB 가격의 60%	- FOB 가격의 60%	- FOB 가격의 60%
특별 원산지규정	- 존재	- 존재	- 존재
특별 원산지규정 품목	- 우유, 화학, 철강, 데이터프로세싱 및 통신	- 우유, 화학, 제지, 의류, 철강, 데이터프로세싱 및 통신	- 우유, 화학, 제지, 의류, 철강, 데이터프로세싱 및 통신

자료: Sanguinetti(2003)

MERCOSUR · 인도 PTA 원산지규정에서는 쌍무간 FTA에서 적용되는 대부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누적기준이다. 누적기준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불인정기준(process or operations considered as in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이다. 이는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는 세트(sets) 관련 규정이다. 이는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로 구성될 경우 세트 구성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CIF 가치가 세트의 FOB 가격의 15%를 넘지 않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을 받는다.

이 외에도 양자간 원산지규정에서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대체재료(fungible materials)⁴¹⁾,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

료와 용기(packages and packing materials for retail sale),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containers and packing materials for transport), 중립요소 혹은 간접재료(neutral elements or indirect materials)⁴²⁾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양자간 PTA 원산지규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점은 원산지 인정을 둘러싼 것이었다. MERCOSUR는 원칙적으로 60%의 부가가치 기준⁴³⁾을 주장했다. 그에 반해 인도는 50% 부가가치와 세번변경⁴⁴⁾(4단위 기준)에 기초한 원산지규정을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제3국과 FTA에서 세번변경(4단위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다. 부가가치 비율도 MERCOSUR·인도간 PTA에서 논의되던 것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35~40%였다⁴⁵⁾.

이같은 원산지규정 인정을 둘러싼 양측간 대립은 MERCOSUR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해결되었다. 양자간 PTA에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 이외의 제3국산 비원산지 재료의 CIF 가격 또는 그 제조품에 사용된 미확정 원자재의 CIF 가격이 최종재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완제품의 최종 제조 과정은 수출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서 I 과 II에 명시된 관세양

41) 상용으로 서로 호환될 수 있고 기능 및 구조 등이 유사한 재료를 일컫는다.

42) 재화의 생산, 테스트링 혹은 검사에 사용된 재화를 의미한다. 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43) 부가가치 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44) 세번변경 기준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이라 함은 품목에 따라 HS 2단위(Chapter), 4단위(Heading), 6단위(Subheading)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2단위 변경기준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변경기준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고 6단위 변경기준은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김석오 2006).

45) 인도는 네팔과의 FTA에서 35%, 싱가포르와는 40%, 태국과는 40%의 원산지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했다.

허 품목은 위와 같은 원산지규정 원칙을 충족해야만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부가가치 기준 60%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frac{\begin{array}{l} \text{제3국산 수입 재료, 부품 혹은 생산품} \\ + \text{미확정 원산지의 재료, 부품 혹은 생산품} \end{array}}{\text{FOB 가격}} \times 100\% < 40\%$$

두 번째 양자간 원산지규정의 특징은 해안을 접하지 않은 파라과이의 특수 사항을 고려해 CIF 가격 결정 기준이 새롭게 정해졌다. 항구가 없는 국가산 비원산지 재료의 CIF 가격 결정의 경우, 협정 체결국의 첫 번째 항구나 내륙 항구가 목적지 항구로 인정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기존 MERCOSUR가 체결한 FTA에서와 달리 양자간 PTA에서는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zona franca)이 협정 대상에 포함되었다(원산지규정 36조 1항). 사실 MERCOSUR 결정안 94/8호와 칠레 및 볼리비아와 FTA에서 특혜무역 협정의 특혜 대상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양자간 PTA에서는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상품의 중간경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원산지규정 36조 2항). 이같은 규정 도입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역내물류센터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세이프가드

MERCOSUR · 인도간 PTA에서 세이프가드조치는 크게 세이프가드의 정의, 특혜세이프가드, 조사 및 투명성 절차, 공지 등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이들 다섯 부분은 다시 20개 조로 세분화된다.

기본적으로 양자는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 24조의 원칙을 준용하되 양자간 특혜 세이프가드조치(Preferential Safeguards)를 도입했다. 특혜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PTA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두 번째로 세이프가드의 주요 조치는 특혜관세 혜택의 일시적 중단이나 특혜 관세폭 삭감이다. 여기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하나로 수입쿼터(import quota) 사용이 도입되었다. 수입쿼터는 적어도 피해국에서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기 전 36개월 기간의 평균 수입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대신에 수입쿼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50% 미만의 특혜관세 삭감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임시조치 기간을 포함해 2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MERCOSUR · 인도 세이프가드조치 협정문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기간과 최종 결정 기간을 1년이 넘지 않도록 했다(세이프가드 규정 제13조).

또한 양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 지체로 회복불능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시 결정에 따라 임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기간은 20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 판정이 특정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임시조치 기간에 거두어 드린 관세인상분은 즉각 되돌려 주어야 한다(세이프가드 규정 제15조).

라. 분쟁해결

MERCOSUR · 인도간 PTA에서 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양자간 분쟁해결절차 협정문은 크게 5개의 장과 22개 조로 나뉜다. 4개 장은 1장 협정의 범위, 2장 직접협상, 3장 공동운영위원회의 개입, 4장 일반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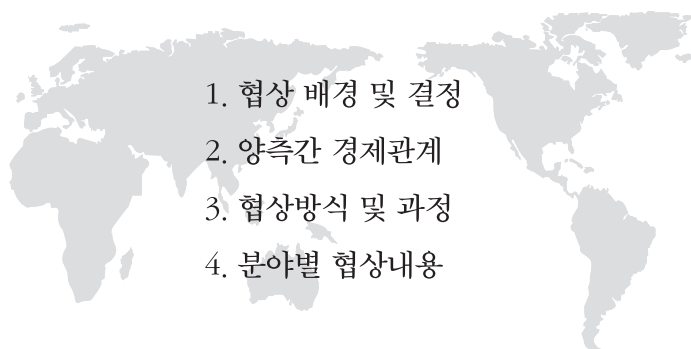
양자간의 분쟁해결은 1차적으로 직접 협상(direct negotiation)을 통해 해결한다.

직접 협상은 MERCOSUR의 경우 임시의장국이나 공동시장그룹(CMG) 국별 조정관이 맡아 수행한다. 인도의 경우는 상무부 차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이 맡는다. 피소국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분쟁해결 규정 제2장).

직접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이나 양자는 공동운영위원회(Joint Committee, 이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요청 이후 45일 이내에 회의를 가져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소집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첫 회의 이후 30일 이내에 권고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전문가그룹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전문가그룹 소집 결정을 회원국에 통보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PTA 발효 후 30일 이내에 10명의 전문가 명단(이중 4명은 역외 전문가)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가그룹의 지명이 통보된 후 30일 이내에 전문가그룹은 공동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공동보고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권고문을 발표한다. 피소국이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소국이 일시적으로 상대국에 특혜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분쟁해결 규정 제3장).

제6장

남아공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MERCOSUR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 Africa Custom Union: SACU)⁴⁶⁾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협상이 2006년 10월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제 SACU 회원국들에 의한 비준과 발효절차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협정의 협상은 기본협력협정이 체결된 지 6년 만에 끝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었음에도 그 시장개방의 폭이 좁고 양 지역의 주요 관심품목인 쇠고기, 철강, 자동차 등이 개방품목에서 배제되어 그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

MERCOSUR와 SACU의 관계는 MERCOSUR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MERCOSUR와 남아프리카공화국간 관계강화를 위한 최초 시도는 1996년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의 가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제안에 대하여 MERCOSUR측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중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정부가 당시에 선진국들과의 관계강화에 우선 정책순위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MERCOSUR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2001년 말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외채불이행 이후 상호 무역정책에서 분쟁이 잦아 대외공동정책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축인 된 SACU에서도 관세동맹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실시 중이었다.

한편 MERCOSUR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양측간 FTA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MERCOSUR는 EU, FTAA, 멕시코 및 남미 주요국과의 FTA 등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46) MERCOSUR · 남아프리카공화국 PTA가 SACU(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로 확대된 것은 2차 협상과정부터이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SACU의 사 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분리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SACU로 통일한다. 협상추진 일정 참고

(EFTA)과의 FTA 협상에 열중했다.

마지막으로 MERCOSUR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구상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경쟁자 관계에 있는 국가간에 추진된 일종의 정치적 협력의 성격이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 FTA에 대한 재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협상추진이 지연되었다.⁴⁷⁾

이러한 가운데 MERCOSUR 4개 회원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2002년 6월 24~28일에 100여 명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무역단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상호 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MERCOSUR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조직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양측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2003년부터 양자 관계는 급진전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외정책을 통하여 남미통합을 심화시키려고 노력한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있었다. 룰라 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 강화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세계화 과정에 대한 개발도상국 공동의 반(反)헤게모니 전선을 구축하여 WTO를 비롯한 주요 다자기구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⁴⁸⁾ 이 외에도 브라질은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통한 국제시장에의 공동 진입전략으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G-3을 창설했다. G-3의 주요 목적은 △ 3자 협력강화 △ 남남 무역 촉진, 그리고 △ 국제협상에서의 공동입장 천명 등이었다. 그러나 MERCOSUR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전략적 협력을 구상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아프리카 지역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위

47) Lyal White(2003)

48) 양측간 관계 강화는 남남 협력(SSC) 강화와도 관계가 있다. 즉 SSC 강화에는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MERCOSUR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뒤이어 SACU로 확대된 경제관계 강화는 IBSA 포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 있었다. 즉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MERCOSUR의 주요 경제 협력 국가로서 부상한 동시에 국제다자체제 형성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조정 혹은 조화시키고 무역 및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시키려는 신흥국가 그룹의 일원이 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남 무역체제가 국제적으로 전통적인 남북 무역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점점 수용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⁴⁹⁾

양 지역간 FTA 체결의 또 다른 결정요인은 무역증진이라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1990년대 유행하기 시작한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도미노현상이 있었다. RTA의 다발적인 출현에는 다자무역 협상이 지연된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다자무역체제가 가져다주는 편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주로 작용했다. 이 결과 개발도상국들에서 다자수준의 시장접근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지역수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위기가 대증을 이루게 되었다. MERCOSUR·인도 FTA처럼 2003년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가 결실을 보지 못한 점과 G-20의 강화는 RTA를 유도하는 기초가 되었다.

표 6-1. SACU 회원국의 주요 지표(2005년)

	SACU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인구(백만 명)	53.7	1.8	1.8	2.0	47.0	1.1
GDP(십억 달러)	261.8	11.8	1.9	6.0	239.5	2.6
1인당 GDP(달러)	4,875	6,642	1,048	2,975	5,630	2,557
연평균 성장률 (2000~2005, %)	-	6.3	2.7	4.3	3.8	2.4
주요 수출품	금속, 광물, 자동차	다이아몬드	의류	생선제품	금속, 광물, 자동차	설탕, 설탕 첨가 기호품
주요 수입품	원유, 유지	자동차	편물 첨가 면직물	원유 제외 석유류	원유, 유지	원유 제외 석유류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6*, 국별.

49) 남남 무역 규모는 세계 총무역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은 이미 40%를 상회하고 있고, 향후에도 주로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무역규모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UNCTAD 2004).

G-20의 핵심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의 관계 강화는 이미 체결된 바 있는 MERCOSUR와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기본협력협정을 FTA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2. 양측간 경제관계

양측간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은 주로 MERCOSUR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점증하는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2000년 12월 기본협력협정 체결 당시 양측간 무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총무역의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한 2004년에 MERCOSUR와 남아프리카공화국간 무역은 20억 2,959만 달러, 2005년에는 23억 4,980만 달러(MERCOSUR 수출 18억 8,420만 달러, 수입 4억 6,564만 달러)로 증가하였다.⁵⁰⁾

MERCOSUR 기준에서도 양측간 교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05년에는 MERCOSUR 역내 무역의 약 1.0%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05년 사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MERCOSUR 수출은 정체를 보인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역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무역구조의 주요 원인은 브라질의 무역구조가 변화한 결과인데, 최근 브라질은 내수감소와 점증하는 해외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외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MERCOSUR와 SACU간 무역에서 최대 상대국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즉 남아프리카공화국이 MERCOSUR와의 무역 90% 이상과 브라질과의 무역 60% 이상을 차지한다. 2005년에 MERCOSUR 일부 회원국들은 남아프리카공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이 SACU 인구, GDP, 무역 등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액이 SACU 총무역 규모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화국을 제외하고 SACU 회원국들과 무역을 전혀 기록하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MERCOSUR의 수출품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의 공산품이 대부분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품은 1차제품들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MERCOSUR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동물성·식물성 지방 및 유지, 식육 및 식육 부산물 그리고 기계류 등인 반면, 철강제품, 석탄을 포함한 광물, 유기화학제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제지 및 판지제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투자 측면에서 양측간 교류는 부진한데, 브라질의 경우 2005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료공장프로젝트와 광업개발에 5,000만 달러와 1억 2,1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을 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전무하다. 아르헨티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농업 및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였다. Cobb Company가 대표적인 농업투자기업이고, 광산탐사 및 금광개발에 Anglo Gold와 Cerro Vanguardia가 진출해 있다.

표 6-2. MERCOSUR의 對SACU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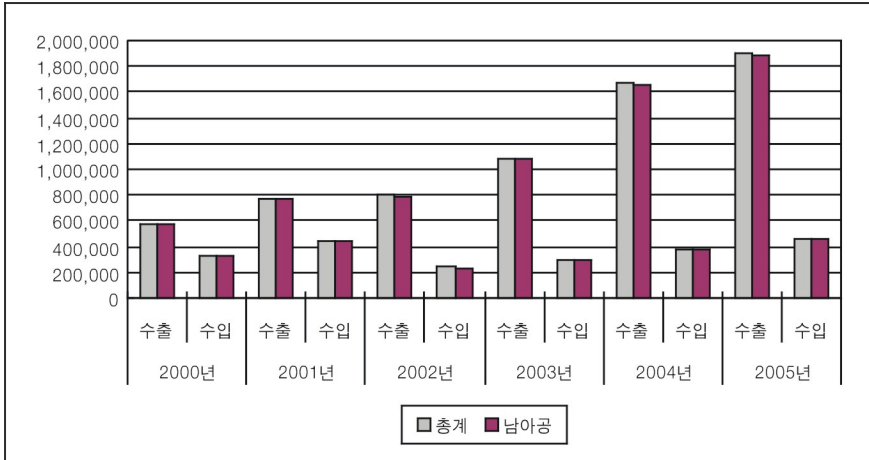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총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2000년	수출	573,303	569,347	228	-	3,636	92
	수입	333,723	332,095	273	-	510	845
2001년	수출	775,667	767,441	719	261	7,001	243
	수입	438,228	437,189	-	-	506	533
2002년	수출	805,459	793,897	2,503	9	8,684	366
	수입	237,824	237,609	-	-	125	90
2003년	수출	1,087,476	1,075,908	934	-	10,075	559
	수입	288,651	288,158	-	-	195	298
2004년	수출	1,668,009	1,651,013	1,674	461	14,303	558
	수입	379,002	378,577	7	27	96	295
2005년	수출	1,904,454	1,884,178	4,063	1,463	14,111	639
	수입	466,111	465,636	-	130	25	32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6-1. MERCOSUR의 對SACU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표 6-3. MERCOSUR 회원국별 對SACU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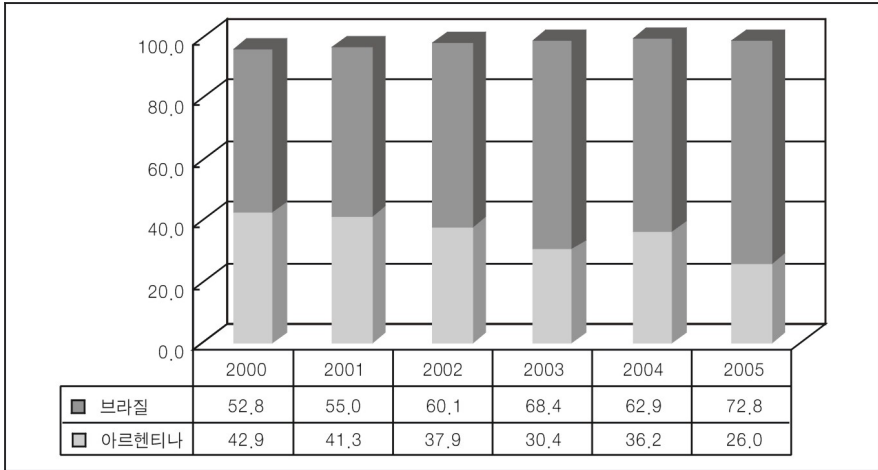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총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2000년	수출	573,303	246,186	302,819	490	23,810
	수입	333,723	76,816	245,996	4,619	6,293
2001년	수출	775,667	320,193	426,963	1,091	27,420
	수입	438,228	123,909	302,761	3,670	7,888
2002년	수출	805,459	304,909	484,115	1,843	14,593
	수입	237,824	32,999	195,328	2,285	7,212
2003년	수출	1,087,476	330,330	744,110	1,108	11,926
	수입	288,651	60,031	218,284	2,757	7,580
2004년	수출	1,668,009	603,210	1,049,027	2,185	13,586
	수입	379,002	90,002	281,246	1,993	5,761
2005년	수출	1,904,454	494,656	1,385,643	-	24,155
	수입	466,111	110,104	350,431	-	5,578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6-2. MERCOSUR의 對SACU 수출에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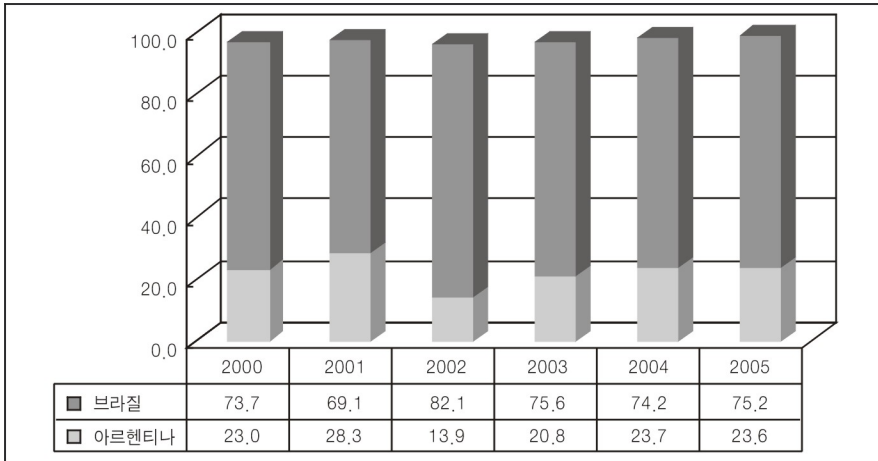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6-3. MERCOSUR의 對SACU 수입에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UN Comtrade Database.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MERCOSUR · SACU FTA의 협상방식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다. 양측은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ERCOSUR 준회원예의 가입 의사 타진 이후 수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1998년에 특혜관세협정을, MERCOSUR 각료회의가 Dec. CMC 36/00을 통해 GMC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FTA 창설을 위한 협정 협상개시를 허가하면서 2000년 12월에 FTA 창설을 위한 기본협력협정을,⁵¹⁾ 그리고 2004년 12월 16일에 PTA를 체결하였다. 비록 기본협력협정 제2조는 협정이 FTA 창설을 위한 최초 단계임을 적시하고 있었지만, 기본협력협정 이후 약 2년 동안에 걸친 양측간 관계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MERCOSUR간의 1+4 협상에서 회원국이 확대된 관세동맹간의 협상으로 발전한 점도 점진적인 특성을 보인 주요 배경이었다. 즉 SACU 회원국들과의 협상 확대는 각 관세동맹별로 내부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기에 점진적인 협상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2006년 현재는 각 회원국들의 국내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협상 개시와 더불어 PTA에 한정하지는 MERCOSUR의 제안이 수용됨으로써 협상범위는 매우 원활하게 결정되었다. 즉 FTA 협상방식보다는 PTA 협상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협상분야는 상품시장 개방에 한정되고,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분쟁해결절차 등은 부속서로 처리되었다. PTA 협상방식으로 급선회함으로써

51) Florianopolis에서 체결된 기본협력협정의 주요 목표는 양측간 기존의 무역관계 강화, 무역증가 촉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여건 조성이었다.

남남 국가들간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관세동맹 회원국 가운데 소규모 경제국들을 호혜적으로 배려하는 접근방식을 수용하였다.

협상과정으로는 협상위원회(Negotiating Committee)가 2개 작업반(시장개방 및 규범)에서 도출된 협상안을 최종 조율하고, 차기 회의의 일정과 협상 의제를 도출하였다. 초기협상은 이슈별 양측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나, 중반부터는 통합안에 대한 양측의 제안과 대응으로 진행되었다.

협상개시와 함께 협상 일정과 개최시기에 대한 합의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협정 서명시기도 협상진척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협상 횟수도 결정된 바가 없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돌출된 이슈들로 인하여 협정에 서명한 이후에도 2006년 12월 현재까지 공식협상이 세 차례 진행되었지만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양측은 협정의 신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하여 기존에 활용된 이슈별 분리 협상을 단일의 패키지 형태의 협상으로 최종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나. 협상과정

1) 1차 회의(2001.10, Montevideo)

공식협상은 협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고, 1차 협상은 2001년 10월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MERCOSUR는 기본협력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최초 단계로서 상호 관세특혜를 제공할 품목리스트를 정의하고, FTA보다는 범위가 한정적인 PTA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협상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했는데, MERCOSUR의 입장은 적어도 협상 초기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대우 결정(enabling clause)”을 발동하려는 것이었다.⁵²⁾ 이에 1차 협상에서는 PTA에 포함될 이슈들을 결정하고, 기술 및 무역협력 측면에서 기존의 상호작용 가능성과

차기 협상에서 발전시켜야 할 기준들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양측은 2002년 2월까지 관심분야와 상품리스트를 포함한 문서와 최근 3년간의 무역통계에 대한 상세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2차 회의(2002.8, Brasilia)

2002년 3월로 예정되었던 협상위원회 2차 회의는 남미지역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거의 1년이 지난 8월에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경제통합과정 추진 현황을 포함하여 각국의 경제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바,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한 관세동맹인 SACU의 구조조정이 2002년 연말까지 완료되면 향후 협상에는 이들 회원국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MERCOSUR는 3차 회의에 모든 SACU 회원국들을 초청하기로 합의한 대신에 기본협력협정이 SACU의 다른 회원국들이 참여하지 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협정인 점을 들어 협상진전을 위해 새로운 협상방식을 결정할 필요성을 제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하여금 PTA에 한정된 협상이라는 MERCOSUR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FTA 대신에 PTA 추진이라는 협상방식은 2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의 하나였다. 그리고 MERCOSUR는 협상의 지속성을 위해 3차 회의 개최시기, PTA 초안 및 상품 리스트 교환 시기 등을 서둘러 결정하였다.⁵³⁾ 이 외에 상호 특별관심사항으로서 MERCOSUR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

52) 1967년 케네디라운드가 끝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자유화를 통해 선진시장에 대한 수출기회를 증진시키려 노력하여 도교라운드 개시를 알리는 도교선언에 새로운 다자무역 협상에 개발도상국에 관한 대우를 규율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비호혜주의 및 특별조치의 필요와 차별적인 조치 적용의 중요성, 그리고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빈개도국의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가 그것이다. 1979년 11월 28일 GATT에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도 보다 유리한 대우와 상호주의 및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결정”이다 ; 법무부(2003), pp. 53~54 참고

53)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 9월 말까지 각각의 거시경제 및 무역

세울 표에 대한 정보, 현행 관세제도(종가, 특별관세, 혼합관세, 기타 수입관세), 그리고 제3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위생검역(SPS) 규정을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추가 협상의제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3) 3차 회의(2002.12, Pretoria)

2002년 12월 프레토리아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MERCOSUR는 무역정책, 위생, 농업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양측은 양허를 요청하는 상품리스트(MERCOSUR 1,157개, SACU 782개)를 교환하였다. 이 리스트에는 상호 수출경쟁력을 지닌 식물성 기름, 곡물, 플라스틱 제품, 낙농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양측은 2003년 3월 중으로 예정된 4차 회의 이전까지 각각의 문서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품목리스트를 교환한 3차 회의 이후 PTA 협상은 지연되었다. 양측의 상품 시장개방 양허 요구안이 비대칭적이었던 점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에 양측은 2003년 10월 9일 몬테비데오에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관세품목표간의 격차 해소방안 및 향후 작업일정을 논의하고 2004년 4월에 협상위원회 4차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4) 4차 회의(2004.4.15~16, Pretoria)

2004년 4월 15~16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는 협정문, 부속서(원산지규정, 분쟁 해결절차, 세이프가드), SPS프로토콜을 논의할 작업반과 시장접근(상품관세철폐) 작업반으로 나뉘어 협상이 진행되었다. 양측은 관세철폐 목록에 대한 상호 제안서

자료, 1999~2001년간의 무역통계(품목별, 수입국별, 수출국별), 대외무역 관련 법률, 대외공동관세 현황(수정 및 예외 포함)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를 5월 말까지 교환하고, 5차 회의 개최 이전인 7월 중으로 협정문 초안에 서명하며, 관세 삭감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5차 회의(2004.9.29~10.1, Brasilia)

2004년 9월 29일~10월 1일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5차 회의에서 MERCOSUR는 2004년 12월 17일 개최 예정된 제17차 MERCOSUR 각료회의 기간에 서명할 수 있도록 PTA 협상을 종결할 것을 재확인하고, 일정에 맞추어 협상을 완료시키기 위하여 최소한 두 번에 걸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먼저, 5차 회의의 예비회의로 2004년 6월 16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비공식회의에서 수정된 협정문을 5차 회의 결과보고서 협정문 초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진전은 세 가지로, 먼저 Chapter II(무역자유화)/제6조(관세 제외 규정)(d)에 상응하여 MERCOSUR의 소규모 회원국에도 동일한 보상책을 강구하기를 제안하였다.⁵⁴⁾ 다음은 SACU의 제안을 수용하여 Chapter II(무역자유화)/제8조 bis로 “관세행정협력 원활화를 위한 상호행정지원협정 체결 노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⁵⁵⁾ 마지막으로 MERCOSUR는 우루과이의 요청을 수용하여 특별 의제로 Free Zones에 대한 협의를 SACU에 제안하였다.

상품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양측을 위한 균형적인 시장접근에 목표를 두어야 하고, 관세 삭감 목록은 최소 25%(일부 품목 10% 예외 인정)를, 중간수준에는 50%를, 그리고 최대 100%를 적용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MERCOSUR는 실행 관세율이 0%인 상품들을 100% 적용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이들 상품들에 대한 쌍무 시장접근을 현행 관세수준으로 묶기 위함이었다. 또한

54) 초기단계산업 개발을 위한 부과금은 관세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5) 이 제안은 2004년 12월 16일 서명된 협정문의 Chapter II(무역자유화)/제9조에 “양측은 MERCOSUR 회원국들이 분리된 세관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협정문의 발효 이전에 이 협정문에 부속될 상호행정지원의정서 협상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었다.

MERCOSUR는 관세수준이 매우 낮은 상품들도 100% 철폐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SACU는 MERCOSUR가 요청한 다수의 상품에 일방적 혹은 호혜적인 기준에서 100% 특혜관세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허를 요청한 상품이 동일한 관세품목인 경우 먼저 사례별(case by case) 기준으로 상호 특혜관세 적용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양측은 관세인하율은 최혜국 관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제협정에 영향을 받는 수량제한은 PTA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자동차부문에서의 협력이 양측 간 무역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여 PTA에서 분리, 논의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원산지규정 논의는 SACU의 제안서를 MERCOSUR가 임시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서 종결되었다. MERCOSUR는 PTA의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성격, 그리고 협상 종결일정 등을 감안하여 FTA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SACU가 제안한 세세한 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선택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SACU는 제안서가 PTA는 물론 FTA를 대비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관세동맹 내의 단일 원산지규정 설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SACU는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양측간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상품들에 대한 원산지규정들은 관세세번변경과 종가기준을 적용하는 MERCOSUR의 원산지규정과 양립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이프가드 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만 적용한다”라는 MERCOSUR의 제안이 2004년 12월에 서명된 협정문 제3조(3)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부속서 IV/제5조/1항(b)(관세동맹 특정회원국에 세이프가드조치 한정) 및 2항(협정 당사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도 협정문에 수용되고,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수입품에 대한 쿼터부과 조항도 수용(부속서 IV/제7조→서명 협정문 제6조/b)되었다. 이 외에 피해조사 고려 요소들

도 반영(부속서 IV/제11조→서명 협정문 제10조)되고,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결정문에 포함되어야할 정보들 가운데 상대측 통지문에 최소한 포함되어야할 정보를 예시하지는 MERCOSUR의 제안도 규정(부속서 IV/제19조→서명 협정문 제18조/2)으로 포함되었다. 이 결과 세이프가드 협상은 거의 완료되었다.

분쟁해결 규정도 몇몇 수정안들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SACU가 제안한 분쟁해결절차 관련 규정의 구조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과 양측 제안이 대립되는 점이 있음을 인정, MERCOSUR가 차기 회의를 위하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장치를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⁵⁶⁾ 한편 MERCOSUR는 2004년 4월 개최된 4차 회의에서 SACU가 요청한 Signatory Party와 Contracting Party 사이의 차이에 대한 Non-Paper를 제출하였다.

합의 사항 이 외에 양측이 차기 회의를 겨냥하여 제안한 주요 내용은 SACU의 관세행정상호지원을 위한 의정서 체결 제안과 MERCOSUR의 자동차와 설탕부문에 대한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

6) 6차 회의(2004.11.9~12, Pretoria)

2004년 11월 9~12일 프레토리아에서 개최된 6차 회의에서 양측은 2004년 12월 종결시점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재확인하였다. 5차 회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상을 마친 결과 협정문과⁵⁷⁾ 세이프가드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원산지 규정, 분쟁해결절차,⁵⁸⁾ 그리고 관세철폐 품목리스트에서 연말 협상시한까지 추가

56) 양측은 분쟁해결절차 포럼 선정, 포럼의 분쟁 관할권, 직접협상(협의) 요청 및 절차, 분쟁해결 공동관리위원회의 제3분쟁당사국에 대한 즉시 통지 문제, 전문가그룹 구성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57) 양측은 5차 회의 결과보고서에 채택된 협정문의 Chapter II(무역자유화)/제6조(관세 제외 규정)(d)에 상응하여 MERCOSUR가 파라과이, 우루과이에도 동일한 보상책을 강구하기를 제안한 것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 이 외에 협정문에서는 완전 합의하였다.

58) 제14조(전문가그룹 보고 및 권고) 2항의 보고 및 권고 주체가 전문가그룹이 아닌 보고 객체인 공동관리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일치만 필요하였다.

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산지규정 협상에서는 SACU와 MERCOSUR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초하여 공동 협상안을 만들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동 협상안을 차기 협상에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MERCOSUR가 양측의 기존 제안서를 비교한 뒤 삭제 및 추가를 요청하는 통합 초안을 제출하였고, SACU는 2004년 11월 19일까지 이 초안에 답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제안서들은 포괄적인 특성(SACU)과 제한적인 특성(MERCOSUR)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PTA가 궁극적으로는 FTA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SACU 제안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품목리스트 협상에서 양측은 균형적인 협정을 이끌어낸다는 목적에서 제안서를 준비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지침에 합의하였다.⁵⁹⁾ 그리고 작업일정으로 MERCOSUR와 SACU는 회의 종결 후 2주 이내에 개정된 품목리스트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관세와 공동관세 예외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 외에 SACU는 SPS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혜택이 구체화되지 않을 것에 우려를 표명하여 품목리스트 협상이 종결되자마자 SPS 논의를 개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한편 자동차산업 협상 문제는 SPS 및 세관협력처럼 협정 서명과 발효 사이 기간에 협상이 필요한 이슈로 보류되었다. 그리고 SACU는 2002년 SACU 협정문 제26조 규정인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59) △ 정치적 차원에서 소규모 협상 당사국이 관심을 지닌 상품을 특별 및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상품 개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총개수와 분류 수준에서 거의 동등하게 결정하며, 1,000개의 목표 상품을 설정하여 각각의 제안 사이의 격차가 2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농산물 목표 개수는 150개로 하고, 수산물과 양식어업품에서 MERCOSUR가 목표가 합의되기 이전에 먼저 제안을 마무리 한다. △ 양허의 평가는 각 대표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역량, 양허 수준, 기존의 관세수입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거시적 수준과 특정 상품 및 분류 수준에서 호혜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출발점에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호혜성이 모든 상품에 보장될 수는 없다.

Protection)라는 Non-Paper와 원산지규정 관리법을, MERCOSUR는 브라질의 공산품세(IPI)를 주요 정보로 교환하였다.

7) 7차 회의 및 협정서명(2004.12.16, Belo Horizonte)

2004년 12월 벨로리존테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직후 양측은 협정문과 양측 양허품목 (부속서 I 및 II), 원산지규정(부속서 III), 세이프가드조치(부속서 IV)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부속서 V)로 구성된 PTA에 서명했다. 그리고 양해각서 (Understanding between SACU and MERCOSUR on Conclusion of their Preferential Trade Agreement)를 통하여 협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추가된 이슈들－ 관세철폐 품목 추가, 관세행정협력, 자동차산업협력, SPS, 원산지규정 추가 논의－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협상결과는 서명된 MERCOSUR · SACU PTA 참고).

8) 8차 회의(2005.5.10~13, Pretoria)

8차 회의 의제는 2004년 12월 16일자 양해각서에 상정된 이슈들이었다. 먼저 관세철폐 품목리스트 협상의 주요 안건은 상호 호혜적인 관세철폐를 요청한 품목들과 품목을 확대시키자는 SACU의 제안이었다. 호혜적인 관세철폐 요청 품목들은 양측에 의하여 양허되었다. 그리고 관세동맹 소경제국들이 관심을 지닌 품목들의 추가적인 관세 삭감안은 2005년 6월 8일에, 이에 대한 역제안들은 2005년 7월 20일에 동시에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⁶⁰⁾

원산지규정 협상에서는 SACU가 특혜관세 이행에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Free Zone 상품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초안을 제출했으나 MERCOSUR가 특혜관세에

60) 상호 HS코드 8단위로 약 100개 품목을 최종 교환품목으로 확정하였다.

연결시킬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SACU는 차기회의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사전 정보 교환을 요청하였다. 상품별 세부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비교해 본 결과, SACU의 입장(HS 2 혹은 4단위)이 MERCOSUR 입장(HS 6단위)보다 상품의 주석에서 더 포괄적이었다. 이에 양측은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먼저 공통된 품목에 대해 합의하자는 MERCOSUR의 제안을 수용하여 6단위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상품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상품에 대한 서면입장을 2005년 7월 15일에 동시 교환하기로 하고, 9차 회의와 10차 회의에서 최종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8차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SPS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교환되었는데, PTA 장(章)으로 포함시키려는 SACU와 달리 MERCOSUR는 PTA의 프로토콜로 고려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은 9차 회의 이전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MERCOSUR의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PTA의 효율적인 이행, 특히 원활한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양측의 SPS 체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관세행정협력과 자동차산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9차 회의 이전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SPS, 관세행정협력, 자동차산업 이슈에 대해서는 PTA 비준 및 발효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9) 9차 회의(2005.10.26~28, Montevideo)

8차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양측은 협상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던 인식 아래 특혜관세 품목리스트 확대, 원산지규정, SPS, 관세행정협력, 자동차산업, Free Zone 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전력했다. 먼저 사전에 교환한 품목리스트에 대한 평가에서 양측은 균형을 이룬 결과를 희망하면서 기존의 100개 품목 가운데 21개 품목씩을 개정안으로 제출하였다. 특히 SACU는 협상안으로 2003

년 7월 1일 SACU 관세분류표 기준 5402,⁶¹⁾ 5902,⁶²⁾ 그리고 5910⁶³⁾ 아래 위치한 31개 품목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2004년 12월 서명된 협정문 부속서 I 및 II에 포함된 관세 삭감 상품리스트에 등재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주석에서 양측은 8차 회의보다 한층 합의를 보았는데, 미합의 품목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교환하여 차기회의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SPS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동맹 내부의 절차를 각각 설명하고, 8차 회의 합의에 따라 MERCOSUR가 PTA의 부록으로 “초안(Additional Protocol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SACU에 제출하였다. 협상 결과는 양측이 초안에 합의했으나, SACU가 공란으로 남은 제3조(투명성) 및 제4조(특정무역관심사협의)와 관련한 기한들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관세행정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SACU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MERCOSUR가 제출한 초안(Protocol on Mutual Customs Cooperation)을 논의하고, PTA 부록으로 채택하여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 프로토콜에 부패 퇴치를 위한 세계 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권고안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외에 양측은 자동차부문 협력을 프로토콜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10차 회의에 제안서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각각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또한 Free Zone에 대해 양측은 특별관세체제 법률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

61) 소매판매용이 아닌 67 decitex 이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 합성필라멘트사(미싱사 제외) 포함 24개 품목.

62) 고강도나일론사 혹은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 레이온으로 직조한 타이어서 포함 4개 품목.

63) 플라스틱을 주입, 코팅, 덧씌움, 박판 혹은, 금속 혹은 기타 물질로 강화 여부에 관계없이 섬유재료로 만든 트랜스미션 혹은 컨베이어벨트 혹은 벨트장치 포함 3개 품목.

의하였다. 더불어 MERCOSUR는 회원국내 Free Zone 법률을 SACU에 제출하고, SACU는 차기 회의 협상용으로 Free Zone 규정 제안서를 MERCOSUR에 제시하였다.

10) 10차 회의(2006. 8. 29~31, Pretoria)

10차 회의의 중요성은 양측이 가능한 조기에 협정이 비준을 거쳐 발효될 수 있도록 협상단계를 종결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현안들에 단일의 합의된 패키지로 접근한다는 협상방식을 구축한 점도 중요하였다. 이와 함께 2004년 12월 협정 서명 이후 양측이 3회에 걸쳐 제안한 관세철폐 품목 확대는 기술적인 최종 검증 단계에 돌입하였다. 한편 자동차부문의 경우 PTA의 일부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되었는데, 최초 기본규정이 10차 회의 결과보고서 부속서 4로 첨부되었다. 원산지규정 협상에서도 2006년 9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도출하여 미합의부문을 2006년 10월 개최될 최종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9차 회의 결과 공란으로 비워둔 SPS 제4조 c의 기한에 대해 SACU가 48시간에서 5일 혹은 7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MERCOSUR는 이를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2006년 10월 9일까지 답변하기로 합의하였다.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11차 최종회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MERCOSUR · SACU PTA의 정확한 협상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서명된 협정문과 그 부속서, 그리고

10차 회의까지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관세라 함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및 추가 부과금을 포함하지만, a) 1994년GATT III조와 합치되게 부과된 내국세 혹은 기타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b) 1994년GATT VI조 및 XVI조, 1994년GATT VI조 이행에 관한 WTO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WTO협정에 부합하는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 c) 1994년GATT VIII조 혹은 1994년GATT II조 1(b)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과된 기타 관세 혹은 부과금, d) 2002년 SACU 협정문 제26조에 속하는 유치산업 개발을 위해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레소토 정부에 의해 부과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⁶⁴⁾ 이처럼 MERCOSUR · SACU PTA는 FTA와 달라서 서비스 제공 및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나 수입수량제한 및 관세쿼터와 관련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할증금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혜관세 적용 품목의 경우 협정 서명 이후에 상호 제안한 양허안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향후에도 양측의 제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까지 타결된 주요 내용은 특혜관세 적용률과 서명된 협정문에 포함된 주요 품목이다. 2004년 12월에 타결된 기준에 따르면 3단계 특혜관세 목록(100%, 50%, 25%)을⁶⁵⁾ 바탕으로 MERCOSUR는 HS 2002 기준으로 958개 품목을, SACU는 951개 품목을 양허하였다. 그리고 MERCOSUR는 752개 상품 관세를 100%, 34개 상품 관세를 50%, 그리고 78개 상품 관세를 25%(94개 상품 관세를 10%) 삭감하고, 100% 철폐 품목 가운데 16개 상품을,⁶⁶⁾ 50% 감축 품목

64) MERCOSUR의 제안에 따라 “이같은 관세를 적용하려는 SACU 서명국들은 각자 협정문 공동 관리위원회(JAC)에 통지하고, 이같은 관세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특혜수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상호 만족스런 해결을 위하여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65) 예외적으로 10% 삭감 품목이 있다.

66) NCM 03026947~03042060 13개 품목(민물고기류)과 NCM 54024120~54026110 3개 품

가운데 2개 상품을,⁶⁷⁾ 그리고 25% 감축 품목 가운데 10개 상품을⁶⁸⁾ 호혜 관세철폐 상품으로 요청하였다. 반면 SACU는 431개 상품 관세를 100%, 161개 상품 관세를 50%, 그리고 103개 상품 관세를 25%(256개 상품 관세를 10%) 삭감하고, 100% 철폐 품목 가운데 19개 상품을,⁶⁹⁾ 그리고 50% 감축 품목 가운데 2개 상품을⁷⁰⁾ 호혜 관세철폐 상품으로 요청하였다. 호혜 관세철폐 대상 요청 품목은 2004년 12월에 서명된 협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양허된 상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협정 발효 이후에는 상호교역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유형의 비관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기계, 가구, 장난감 및 자본재 등 제조업 제품의 아프리카 시장진출에 있어서는 MERCOSUR가 다소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⁷¹⁾ 농산물의 경우에도 100%, 50%, 그리고 25% 관세 삭감 목록에 MERCOSUR의 152개 품목과 SACU의 173개 품목이 포함되었다. SACU는 MERCOSUR가 경쟁력을 지닌 곡물 및 유지종자 가운데에서 평지유(유채 기름), 아마유, 옥수수기름, 동유(桐油-油桐의 씨로 짠 기름), 참깨 기름, 호로바 기름, 무

목(아라미드로 만든 garnetted stock).

67) NCM 44201000(나무로 만든 작은 조상 및 기타 장식품) 및 44209000(기타).

68) NCM 02011000~02101100 10개 품목(내장을 제거한 짐승의 몸통, 뼈있는 돼지 허벅다리 및 어깨 부위, 혀, 간, 기타 냉동부위 등 축산물)

69) HS 07019000(기타 구근류), 07051100(양상치), 07051900(기타), 07061000(당근 및 순무), 19030000(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된 대체물, 난알 및 후레이크 형태) 및 20049010(양배추, 오이, 초절인 오이) 등 채소류, 29181910(농급산), 38083035(2,4-디클로로페녹시초산 혹은 그 파생물 함유의), 50079000(기타 직물), 51062000(울 50% 이하 함유의), 54021010(아라미드絲), 68029100(대리석, 석회화, 석회석), 68029300(화강암), 68030000(세공한 슬레이트, 슬레이트 물품, 집접된 슬레이트 물품), 68042210(직경 150센티미터 초과 규석), 68069090(기타), 68111000(물결모양의 시트), 68112000(기타 시트, 패널, 타일, 유사 물품), 68113000(튜브, 파이프, 그 부속품).

70) HS 17029000(마른 과당 50% 함유 기타 설탕 및 설탕시럽 섞인 기타 제품) 및 20049020(완두콩, 강낭콩, 렌즈콩).

71) INTAL/BID, Informe MERCOSUR, No. 10, Dic. 2005.

가공 혼합유, 마가린(액체 제외), 정제혼합유, 옥수수 가루, 콩(대두)가루, 해바라기 씨앗 분말, 낙화생 분말, 목화씨앗 분말 등을 25% 관세 삭감 목록으로 양허했는데, 이들 제품의 현재 관세율은 6~10%에 불과하다. 반면 MERCOSUR는 곡물 및 유 지종자 가운데에서 메밀(非종자), 낙화생(껍질 포함), 기타 고형물 등은 25% 삭감률을, 종자용 밀, 옥수수, 메밀, 리본초 및 껍질이 제거된 낙화생 종자 등은 완전 자유화했다.

그러나 양측이 양허한 자유화품목은 양측이 각자 분류하고 있는 약 1만 여 개의 관세품목 가운데 10%에 불과하고, 완전 관세철폐(100%) 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실질 적용관세율 5%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양 지역간의 수송거리, 문화적 상이성 등을 감안할 때 관세철폐의 실질적인 무역창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쪽의 실질적인 수출품목이면서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쇠고기 및 낙농제품, 철강, 자동차 등이 자유화 품목에서 배제되거나 타결되지 못함으로써 PTA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나. 원산지규정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과 관세동맹간의 PTA인 관계로 원산지규정은 필수적이었다. 원산지규정 본문은 FTA를 대비한 SACU의 초안을 중심으로 6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추가 논의는 주로 양쪽이 제안한 품목별 원산지규정 주석에 대한 것이었다. 10차 회의 결과 12개 품목을 제외한 전체품목을 세번변경방식을 채택하여 합의를 이루어내었다.⁷²⁾ 협정문 제3장 제10조(원산지규

72) 합의되지 않은 품목은 제지 및 펄프 제품류(HS 481013, 481014, 481019, 481099), 양모직물류(HS 510620), 인조펠라멘트류(HS 540210, 540231, 540232, 540239, 540241, 540251, 540261) 이다.

정)는 부속서 I(MERCOSUR 관세양허표)과 부속서 II(SACU 관세양허표)에 포함된 상품들이 관세특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부속서 III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세번 변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다.

MERCOSUR · SACU PTA 원산지규정은 FTA 협정문의 일반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에 포함된 원산지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 제5장 통관절차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소급 발행, 사본 발행, 효력(6개월), 제출, 면제, 발행을 위한 부속서류, 보존기간), 행정협력(통지, 원산지증명서 검증, 분쟁해결,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 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있다.

상품의 원산지 인정 요건은 일방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에 속하는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과 비원산지 재료를 결합하여 일방에서 획득된 상품이다. 이 경우 비원산지 재료는 특별히 정한 요건(제5조 충분히 제작 혹은 가공된 상품)에 따라 그 일방에서 충분한 제작 혹은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⁷³⁾ HS일반규정(3)에 정의된 세트상품은 모든 부분품이 원산지일 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상품이 원산지의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될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상품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73) 제5조에 따르면, 1항) PTA 적용대상이면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상품이 부록에 규정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충분히 제작 혹은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2항) PTA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PTA 적용대상 상품에 결합된 상품들은 PTA 적용대상 상품의 세번을 제외하고 다른 세번의 재료 혹은 상품으로부터 제조된 경우,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 혹은 상품의 가치가 PTA 적용대상 상품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제작 혹은 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3항)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요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는 그 추가치가 상품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항과 세번변경요건에서 부여된 모든 비중이 3항의 적용을 통하여 초과되지 않을 경우 그래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3항은 제50류~제63류에 속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1~3항은 제6조(충분하지 않게 제작 혹은 가공된 상품)에도 적용된다.

다. 세이프가드조치

MERCOSUR · SACU PTA는 제5차 협상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가장 먼저 합의하여 협정문 제6장 제13조(세이프가드조치) 및 부속서 IV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제1조에서 “채약당사국이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자간 조치(Global Safeguards)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약국들 간에 그러한 조치 적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약국간 양자간 조치로 볼 수 있는 특별세이프가드(Preferential Safeguards)가 중요하다.

특별세이프가드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보면, PTA 관세특혜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제4조). 그리고 MERCOSUR와 SACU는 (i)심각한 피해 혹은 위협의 실재가 특혜조건하에 있는 상품의 수입으로 야기되고 있음을 결정하는 모든 요건이 전체로서 MERCOSUR 혹은 SACU에 적용된 요건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한 단일체로서, (ii)심각한 피해 혹은 위협의 실재를 결정하는 요건이 관세동맹 그 회원국에 만연하는 조건에 기초하고 그 조치가 그 회원국에 한정할 경우에 그 회원국을 대신하여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조치의 발동요건을 살펴보면, (i)특혜상품의 수입량이 수입국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ii) 수입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이 초래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심각한 피해를 예방 혹은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제3조).

조치의 형태는 (i)심각한 피해가 결정된 기간 이전 36개월간 해당 제품의 평균 수입량 이하가 아닌 수준에서의 쿼터 적용(쿼터 외 수입에는 특혜관세 혹은 최혜국관세를 적용)(제6조 1항-a), (ii)당해 제품에 대해 협정에 따라 발동 중인 특혜관

세의 정지 혹은 환원(해당제품 일부수입에 쿼터형태로 특혜요건 유지, 고정된 쿼터는 심각한 피해가 결정된 기간 이전 36개월간 해당 제품의 평균 수입량 이하가 아닌 수준)(제6조 1항-b)이다.

조치의 발동절차를 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생산자의 요청으로 개시되고(제11조), 조사개시 결정 공표와 최종결정 공표 사이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3조). 조치의 전체 적용기간은 임시조치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7조), 비적용 기간이 이전 세이프가드조치 종료로부터 최소 1년에 미치지 못하면 세이프가드 대상이었던 특혜관세 상품의 수입에 어떠한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다(제8조). 필요 시 임시판정을 통하여 임시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나 20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혜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험이 없다고 최종 결정되면 임시세이프가드에서 징수한 관세인상분을 즉각 환급한다(제15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조치 조사개시 결정, 임시세이프가드조치 적용 결정,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여부 결정은 적절한 공시와 함께 7일 이내에 수출국에 통지한다.

라. 분쟁해결제도

6차 회의로 사실상 합의된 분쟁해결제도는 부속서 V(분쟁해결절차)로 첨부되었다. 먼저 분쟁해결제도의 적용범위와 분쟁해결기관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협정문 제11장 제28조는 협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분쟁은 부속서 V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분쟁 해결의 일원화에 노력했다. 즉 분쟁해결절차 제2조 1항은 물론 원산지규정 부속서 III 제28조(원산지검증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때 공동관리위원회(JAC)를 통한 PTA 분쟁해결장치 활용 규정)조차도 일원화를 지지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모든 분쟁은 PTA 분쟁해결절차는 물론 WTO/DSU를 통해서도 해결하도록 허용하고(제

2조 2항), JAC를 통하지 않은, DSU 제4조에 의한 협의 요청을 WTO에서 개시된 분쟁해결절차로 간주한다(제2조 6항). 단 협정문 제7장 반덤핑상계관세조치와 관련한 분쟁은 DSU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7항). 이는 반덤핑상계관세조치를 적용할 때 Signatories Parties는 1994년GATT 제6조 및 제16조, 1994년GATT 제4조의 이행협정, 그리고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부합하는 각자의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WTO/DSU보다는 제한적이지만 MERCOSUR · SACU PTA에서도 체약국들로 하여금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도출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면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체약국은 20일 이내에 요청에 대응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체약국들은 정보를 교환하며, 체약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협의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협의절차를 종결해야 한다(제3~5조). 협의에 실패하면 합의에 의하여 JAC에 중재를 요청하고, 관세동맹인 관계로 JAC는 즉시 분쟁 당사국인 아닌 모든 체약국들에 이를 통지한다(제6조). JAC는 중재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총의에 의하여 2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최초 회의후 30일 이내에 권고안을 발표한다(제7~9조).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JAC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그룹에 회부하고(제9조 1항), 회부 후 15일 이내에 구성된 전문가그룹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통하여 구성 후 30일 이내에 공동보고서를 JAC에 제출한다. JAC가 총의로 전문가그룹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보고서 수취 후 30일 이내에 분쟁 체약국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체약국은 90일 이내에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⁷⁵⁾

74) 공동관리위원회(JAC)는 MERCOSUR의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과 SACU의 공동협상장치(Common Negotiating Mechanism)로 구성된다(협정문 제10장 24조).

75) 전문가그룹은 PTA 발효 후 30일 이내에 JAC에 제공된 4명의 전문가 가운데 분쟁 체약국 각각 1인을 선정하고, 합의를 통해 당사국 국적이 아닌 제3자를 선정하여 그룹을 지휘토록 한다. 공동

WTO와 달리 최종 권고안에 대해 재심이나 상급기관에 대한 상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JAC는 피제소 체약국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 체약국으로 하여금 분쟁대상으로 인해 감소한 혜택에 상응하는 무역효과를 지니는 양허를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응조치는 1차적으로 제소 체약국이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에 행사하고, 실질 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양허증치를 허용한다.

마. 위생검역제도

협정문 제9장 위생검역제도(SPS)는 체약국들이 PTA 무역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고, SPS 조치는 WTO/SPS협정 부속서 A(1)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체약국 들은 WTO/SPS적용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방안으로 PTA에 SPS 프로토콜 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 12월 현재 협상초안(Additional Protocol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체약국 SPS조 치의 투명성 확보와 SPS 조치 채택과 적용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 및 불공정무역장벽화 방지를 위한 협의장치 창설과 그 절차에 관련되어 있다.

바. 기타

1) 무역에관한기술장벽

MERCOSUR · SACU PTA는 무역에관한기술장벽(TBT)을 규정(협정문 제8장

보고서는 분쟁 개요, 양측 주장, 개별 전문가 이견을 담은 부분과 판정 부분으로 구성된다 ; 전문 가그룹 규정은 제10조~제15조

제16조~제20조)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기술규정 및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도량형이 상호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WTO/TBT에 규정된 모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하지만, WTO/SPS협정의 부속서 A에 규정된 SPS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BT와 관련한 모든 정의는 WTO/TBT협정 부속서 1과 WTO/TBT협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정된 WTO/TBT위원회 결정문의 정의를 적용한다. 체약국들은 WTO/TBT하에서 상호에 관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각각의 시장접근을 원활화할 목적으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도량형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WTO/TBT협정 적용 촉진, 각 체약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도량형 관련 기관 및 기관의 정보·통지체제강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도량형 관련 기관의 기술적 신뢰성 강화, TBT 관련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공동입장 조정 모색, 국제표준 개발 및 적용 지원,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에 관한 정보 교류, 관련 국제기구와 WTO/TBT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일치하여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도량형에 대한 상호인정 협상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간의 상호 기술적 신뢰 강화이다.

2) Free Zone

제5차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MERCOSUR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시된 Free Zone에 대한 협상은 2004년 12월 협정문 서명 이전에 종결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05년 10월 개최된 9차 회의에서 SACU의 역제안서가 회의 결과보고서의 부속서 V(SACU Proposal on Free Zones)로 첨부되었다. 그러나 2006년 8월 개최된 10차 회의에서도 부속서에 대한 MERCOSUR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회의로 연기되었다. SACU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ERCOSUR와 SACU는 수송과정에서 각각의 영토에 위치한 Free Zone을 이용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거래된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지 않고 상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취급 이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한다.”, “2. 1항 이 외의 경우 MERCOSUR와 SACU 원산지 제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면서 수출국 Free Zone으로 유입되고 처리 혹은 가공될 때 관련당국은 수출업자의 요청에 만약 처리 혹은 가공이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일치할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3) 자동차부문 시장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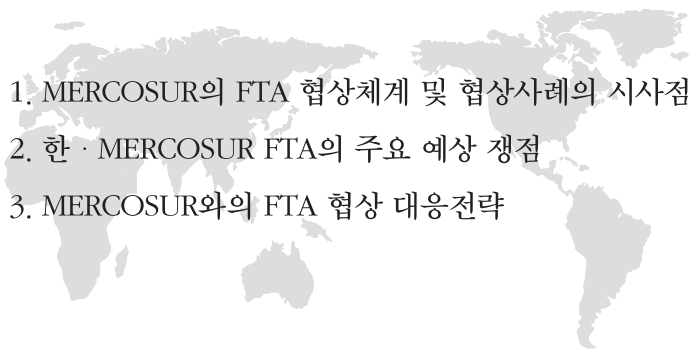
부록형태인 프로토콜을 통한 자동차부문 시장개방을 추진해 온 양측은 10차 회의를 끝으로 부록보다는 특혜관세 체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동차산업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농업시장 개방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개방 분야이다. 최근까지 합의된 관련 내용은 10차 회의 결과 양측이 수용한 기본골격(Initial Framework for the Automotive Sector)이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자동차부문 시장개방을 위하여 자동차산업 생산능력과 무역불균형에서의 양측의 격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자동차부문을 PTA 양허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들을 협상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1) 양허 약속은 승용차, 상업용 경트럭, 트럭, 버스, 버스 및 트럭 엔진 장착 새시, 자동차부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특혜관세 삭감률은 SACU에 유리하게 비대칭적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 3) 급격한 수출증가를 예방할 목적으로 감시체제를 포함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 4) 원산지규정 역내조달비율은 양측간 누적을 인정하여 MERCOSUR에는 60%를, SACU에는 이보다 낮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 5) 양허 약속이 양측 자동차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6) 협정 발효 3년 후 양측은 자동차부문 약속을 개정한다.
- 7) 비관세조치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한다. 8) 협정관리장치를 마련한다. 9) 기본골격을 양측 산업계 및 주주들과 협의한다. 비록 양측이 10차 회의 결과 차기 회의에서 모든 협상 이슈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같은 협상안을 기초로 할 때 자동차 시장개방은 양측에 공히 민감 부문이어서 조기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2. 한 · 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MERCOSUR는 내부 조직상으로 볼 때 공동시장위원회(CMC), 공동시장그룹(GMC), 무역위원회(CCM) 등 매우 세부적으로 임무가 구분된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사무국(SAM)을 몬테비데오에 두고 있는 등 초국가적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미약한 통합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SAM은 단순한 행정지원기능만 갖고 있으며, MERCOSUR가 관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대외협상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유럽연합(EU)과 대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중요한 사안들이 추진,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대외협상의 장기화 및 잦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관세동맹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국의 대외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점 또한 경험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MERCOSUR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그간의 MERCOSUR의 대외 협상과정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MERCOSUR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했던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가 40개국 이상과 FTA를 성사시킨 데 반해, MERCOSUR는 현재까지 칠레와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6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에 국한되고 있다. 역외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와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관세협정(PTA)을 체결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시킨다면 이는 1+4, 또는 신흥원국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1+5의 형태가 될

것이며, 특히 상대가 때로는 관세동맹 형태, 때로는 개별국 형태로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 매우 까다로운 협상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은 EU 협상 측이 MERCOSUR와의 협상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MERCOSUR가 미국 및 EU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FTAA 및 대EU FTA 타결은 어려워지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짙다. MERCOSUR는 FTAA에 대한 대안 또는 협상카드로서 EU와, 중국 또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난항들 때문에 체결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MERCOSUR는 시장이 급성장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MERCOSUR와 교역관계를 넓히고자 하는 여타 많은 나라들처럼 조속히 구체적인 협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대MERCOSUR 진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MERCOSUR와의 협상을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가능성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들의 협상 교착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선, 단기적으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MERCOSUR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나 다음 절에서 살펴 보듯이 일부 제조업분야와 농산물분야의 경우 상호 경쟁관계에 있어 전면적인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FTA 체결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런 점에서 MERCOSUR가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PTA 협상에서 보인 협상특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본다. 특히 MERCOSUR · 인도간

PTA는 MERCOSUR가 중남미지역을 제외한 제3국가와 체결한 최초이자 가장 앞선 형태의 무역협정이며, MERCOSUR의 FTA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 양자간 PTA는 제1차 IBSA 정상회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MERCOSUR·인도·SACU간 FTA 협상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양자간 PTA의 주요 특징을 협상 동기, 경제관계, 협상방식, 협상과정, 협정내용 등으로 대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상 동기 측면에서 양자간 PTA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전략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양자간 PTA 협상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 즉 협상국간 분쟁의 소지가 많은 품목이나 조항은 모두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양자간 PTA에서는 협정의 골간인 관세양허 품목수는 물론 관세양허의 폭도 당초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경제관계 측면에서 양자간에는 상호보완성이 커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자간 교역의 경우 인도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데 반해, MERCOSUR의 주종 수출품은 농산물이었다. 관세구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도의 관세가 MERCOSUR의 관세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관계 측면에서는 MERCOSUR 회원국 기업보다 인도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다. 이에 따라 인도기업들은 양자간 PTA나 FTA를 통한 무역확대는 물론 투자확대에도 관심이 높았다.

셋째, 협상방식 측면에서 양측은 공식 협상기구로 협상위원회(Negotiating Committee) 설립을 통해 협상을 진행시켰다. 협상위원회는 MERCOSUR측에서는 공동시장그룹 대표(CMG), 인도측에서는 상무부 대표로 구성되었다.

넷째, 협정내용 측면에서 MERCOSUR는 대체로 WTO보다 엄격한 규정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인도와 특혜무역협정에서도 MERCOSUR는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 WTO보다 엄격한 기준(WTO plus)을 고집했

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이러한 MERCOSUR의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부 규정에서 우리나라와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우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MERCOSUR 회원국이 요구하는 과다한 원산지규정(현지 부품 60% 사용) 적용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MERCOSUR가 무역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선호하고 있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도 양자간 PTA나 FTA 체결 이후 보호무역수단으로 전용될 소지가 많아 협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다섯째, 협상과정 측면에서 양자간 PTA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양자간 PTA는 기본협정 체결 → 특혜무역협정 체결 → PTA 운영협정 체결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양자간 PTA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협정 체결 후에 진행시키는 “선(先) 협상 체결, 후(後) 협정내용 결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같은 협상방식은 양자간 PTA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제공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본협정 체결에서 운영협정 체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양자간 PTA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협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양자간 PTA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시장접근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양측의 거부감이 커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양허 품목수도 당초 최대 1,700개 품목에서 450개 품목으로 축소되었다. 민감 품목인 농산품의 관세양허도 매우 제한적이었고 양자간 10대 수출품에 대한 관세양허도 미미했다. 둘째, 원산지규정의 경우 MERCOSUR의 입장이 반영되어 부가가치 기준 60%를 사용하는 MERCOSUR식의 엄격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셋째,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WTO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자체의 특혜 세이프가드조치가 도입되었다. 특히 양측은 특

해관세 일시 중단이나 특혜관세폭 삼각 등 전통적인 세이프가드조치 이외에도 보다 강력한 조치로 수입쿼터제를 도입했다. 넷째, 분쟁해결의 경우 WTO나 국제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협정 당사국의 직접협상이나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체 해결 방법을 채택했다.

MERCOSUR · 인도간 PTA는 우리나라가 MERCOSUR와의 무역협상을 추진할 경우 어떠한 협상전략을 채택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현재 MERCOSUR는 제3국과의 무역 협상 시 기본적으로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2단계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MERCOSUR가 이 같은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정치 · 전략적인 동기다. 현재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들은 대외정책의 기조로 남남협력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하에서 주요 개도국과의 PTA는 수출확대 등 경제적 실익 확대보다는 국제무대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의 무역협상은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민감 사항들을 제외한 축소된 형태의 FTA인 PTA가 선호된다. 두 번째 이유는 MERCOSUR 회원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세력의 반발 때문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개도국과의 전면적인 FTA 체결은 각 회원국의 취약 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MERCOSUR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일부 분야의 개방을 목적으로 한 부분적 FTA인 PTA를 체결하고, 이를 FTA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관세동맹과 개별국가간의 협정이 아닌 두 관세동맹간의 협정형태인 MERCOSUR · SACU PTA는 MERCOSUR · 인도 PTA에 비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주요 개발도상국이 정치적인 의도로 개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무역협정 협상은 매우 장기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이 경제적 관

계가 긴밀한 국가간에 실현되는 것과는 달리, 양측의 경제관계가 사실상 소원했다는 측면도 이러한 협정추진의 부진을 뒷받침한다.⁷⁶⁾ 비록 장기적으로는 FTA를 목표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MERCOSUR · SACU PTA의 적용범위가 일부 상품시장에 제한되고 있는 점은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낮은 개발도상국들간 FTA 추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MERCOSUR · SACU PTA는 그 적용범위가 좁고 관세동맹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간 PTA 혹은 FTA와는 차별적인 특징을 지닌다. 먼저 특혜관세 대상 상품들의 관세 삭감률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정해진 기준만큼만 인하된다. 따라서 관세 철폐 이행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결과 대상품목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혹은 철폐를 위한 협상은 물론, 새로운 품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 서비스부문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자동차부문을 특혜관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양측의 노력이 사실상 PTA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시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특혜관세 적용에서조차 SACU에 다소 유리하게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양측간 PTA가 시작부터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를 인정하는 GATT의 원리를 수용한 결과이다. MERCOSUR와 SACU 관세동맹 회원국들 가운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소국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이에 향후 선진국 혹은 선진 개발도상국이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인 양보를 제공해야 할 압력에 직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MERCOSUR · SACU PTA 세이프가드에서는 먼저, 세이프가드 유형에서 WTO가 인정한 관세동맹간의 협정이 지니는 특징을 보여준다. WTO 세이프가드

76) Di Masi & Loustau(2006)

협정에서는 관세동맹의 경우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as a single unit or on behalf of a member State)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지역간 세이프가드조치(regional safeguard)로 지칭되기도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조치 적용에 따른 보상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치를 발동하는 체약국은 그 조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체약국에 당해 조치로 인해 초래된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교역효과를 가지거나 추가부담 관세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양허형태의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치 대상 체약국은 당해 조치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를 상응한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세이프가드 적용가능 과도기간이 PTA 발효 후 5년으로 제한(5년 이내 개정 가능)되고, 일반적인 조치적용기간이 WTO 혹은 NAFTA와 같은 다른 FTA의 3년보다 짧은 2년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MERCOSUR · SACU PTA 체약국들의 무역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제도에서는 먼저, 특정 사안에 따른 별개의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된 NAFTA 등과 달리 분쟁해결절차가 일원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록 반덤핑상계관세와 관련한 분쟁은 WTO의 DSU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PTA 체제에서 다원적인 분쟁해결절차는 전무하다. 둘째, 관세동맹간의 PTA의 특징으로서 분쟁해결 당사자의 정의가 3단계로 구분되었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SACU의 요청으로 Contracting Parties와 Signatory Parties의 개념이 규정된 결과였다.⁷⁷⁾ 셋째, 분

77) MERCOSUR가 제안하고 2004년 10월 1일자 규정에 반영된 분쟁해결절차 규정 제3조의 분쟁 당사자 구분이 모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SACU가 2004년 6월 개최된 비공식회의에서 parties에 대한 구분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제3조는 2004년 12월 16일 서명된 협정문 부속서 V(분쟁 해결절차)/Chapter I/제1조(적용범위)/2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MERCOSUR는 Non-Paper를 통하여 중남미통합연합(LAIA)하에서 칠레와 볼리비아와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당사자를 분쟁의 특성과 분쟁과 관련된 권한에 따라 △ contracting party vs contracting party △ contracting party vs signatory(ies) party(ies) △ signatory(ies) party(ies) vs signo-

쟁해결절차에 따른 최종판정 혹은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PTA보다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TA는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조치가 동일한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 대한 양허 정지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넷째, 분쟁에 따른 직접, 간접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분쟁패널 설치 이후 최종보고서 채택까지 WTO는 9개월, NAFTA는 120일이 소요되지만, PTA 분쟁해결제도는 공동관리위원회 회부부터 최종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최소 60일, 최대 135일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2. 한·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MERCOSUR 경제관계

1) 무역 및 관세구조

가) 수출현황

우리나라의 MERCOSUR에 대한 수출은 대브라질 수출 급등에 힘입어 1993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1998년까지 연평균 1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1999년부터는 MERCOSUR 지역의 거시경제불안에 따라 여타 중남미지역에 비해

tary(ies) party(ies)로 구분하였다. 또한 signatory party(ies)는 관련 국가들의 정부들을, contracting party(ies)는 MERCOSUR와 국가 혹은 협상 블록으로 해석함으로써 MERCOSUR·SACU PTA의 분쟁당사자가 △ MERCOSUR vs SACU, △ MERCOSUR 한 회원국 혹은 다수 회원국 vs SACU 한 회원국 혹은 다수 회원국, △ MERCOSUR 혹은 SACU 한 회원국 혹은 다수 회원국 vs MERCOSUR 혹은 SACU가 됨을 확인하였다.

구매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1990년 12%에 불과했던 우리의 대중남미 총수출에서 MERCOSUR 위상은 1997년에 29.1%로 최고점에 달했다.

표 7-1. 한국의 對MERCOSUR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MERCOSUR					중남미 (B)	전세계 (C)	비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소계(A)			(A)/(B)	(A)/(C)
1990년	106	75	17	52	250	2,102	65,016	11.9	0.4
1991년	174	256	32	56	518	2,860	71,870	18.1	0.7
1992년	164	463	38	48	713	4,962	76,632	14.4	0.9
1993년	449	535	48	74	1,106	4,922	82,236	22.5	1.3
1994년	844	477	54	115	1,490	6,430	96,013	23.2	1.6
1995년	1,519	305	65	175	2,064	7,370	125,058	28.0	1.7
1996년	1,497	443	87	92	2,119	8,961	129,715	23.7	1.6
1997년	1,711	630	105	78	2,524	8,668	136,164	29.1	1.9
1998년	1,792	584	132	60	2,568	8,867	132,313	29.0	1.9
1999년	1,209	439	95	35	1,778	8,645	143,685	20.6	1.2
2000년	1,724	448	138	35	2,345	9,369	172,268	25.0	1.4
2001년	1,611	302	78	32	2,023	9,730	150,439	20.8	1.3
2002년	1,247	51	35	21	1,354	8,864	162,471	15.3	0.8
2003년	1,137	161	44	27	1,369	8,802	193,817	15.6	0.7
2004년	1,785	239	40	38	2,102	11,563	253,845	18.2	0.8
2005년	2,411	309	57	51	2,828	14,987	284,419	18.9	1.0

자료: KOTIS

그러나 1998년 이후 대MERCOSUR 수출은 브라질을 필두로 한 MERCOSUR 회원국들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큰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특히 대MERCOSUR 수출은 2002년부터 대아르헨티나 수출이 전년비 1/6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1998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MERCOSUR 시장의 비중도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4년부터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큰폭으로 돌아서며 크게 실추되었던 수출시장으로서 MERCOSUR 위상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나) 수입현황

MERCOSUR로부터 수입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큰폭의 증가세를 거듭해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했다. 이 결과, 우리의 대중남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MERCOSUR의 비중은 1989년 48%에서 1994년에는 33.6%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MERCOSUR로부터의 수입은 해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브라질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남미산 원자재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1999년

표 7-2. 한국의 對MERCOSUR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A)	중남미 (B)	전세계 (C)	(A)/(B)	(A)/(C)
1990년	707	86	8	12	813	1,726	69,844	47.1	1.2
1991년	889	108	13	10	1,020	2,296	81,525	44.4	1.3
1992년	797	116	11	12	936	2,521	81,775	37.1	1.1
1993년	779	67	5	3	854	2,384	83,800	35.8	1.0
1994년	1,019	68	9	7	1,103	3,280	102,348	33.6	1.1
1995년	1,388	132	8	2	1,530	3,964	135,119	38.6	1.1
1996년	1,325	224	8	1	1,558	4,392	150,339	35.5	1.0
1997년	1,239	253	9	14	1,515	4,076	144,616	37.2	1.0
1998년	693	126	3	0	822	2,197	93,282	37.5	0.9
1999년	910	163	6	0	1,079	2,865	119,752	37.7	0.9
2000년	935	191	14	0	1,140	3,263	160,481	35.0	0.7
2001년	1,126	374	8	0	1,508	3,445	141,098	43.8	1.1
2002년	1,248	376	6	1	1,631	3,743	152,126	43.6	1.1
2003년	1,619	436	12	1	2,068	4,594	178,827	45.0	1.2
2004년	2,195	421	15	5	2,636	6,651	224,463	39.6	1.2
2005년	2,501	372	26	4	2,903	7,017	261,238	41.4	1.1

자료: KOTIS

부터 큰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이 결과 MERCOSUR로부터 수입규모는 7년 사이에 거의 3배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수입시장으로서 MERCOSUR의 위상(중남미 총수입대비)도 다시 강화되었다.

다) 무역수지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 MERCOSUR는 수출시장이라기보다는 수입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MERCOSUR와 본격적인 교역관계가 시작되었던 1980년 이후 1992년까지 入超관계가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MERCOSUR가 경제통합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

표 7-3. 한 · MERCOSUR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교역	무역수지
1990년	251	813	1,063	-562
1991년	517	1,021	1,538	-503
1992년	714	935	1,649	-222
1993년	1,105	854	1,959	251
1994년	1,491	1,103	2,594	387
1995년	2,064	1,531	3,595	533
1996년	2,120	1,558	3,678	561
1997년	2,524	1,514	4,038	1,010
1998년	2,568	823	3,391	1,745
1999년	1,778	1,079	2,857	698
2000년	2,345	1,141	3,486	1,204
2001년	2,023	1,508	3,532	515
2002년	1,355	1,631	2,985	-276
2003년	1,370	2,068	3,438	-697
2004년	2,102	2,636	4,738	-535
2005년	2,828	2,903	5,731	-75

자료: KOTIS

고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면서 MERCOSUR는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이 결과, 1993년부터 흑자세로 돌아선 무역수지는 1998년에는 17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MERCOSUR 회원국의 연이은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수출시장으로서 MERCOSUR의 위상을 점차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축소되어오던 무역흑자는 2002년부터는 역조로 반전되었다. 2003년 약 7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던 무역적자는 이후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5년에는 7,50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라) 품목별 수출입 구조

우리나라의 MERCOSUR에 대한 수출은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무려 64%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계류가 12%, 화학공업제품이 11.8%, 섬유류가 6.0%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MERCOSUR에 대한 수출 중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10대 수출상품의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MERCOSUR 수출품목 중 단연 1위 품목은 무선통신기기부품이다. 그 비중이 전체 수출의 29%에 달한다. 이와 같이 단일 품목으로서 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브라질 현지에 투자한 삼성, LG 등 우리 휴대폰 현지생산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부품 수출에 비해 완성품인 무선전화기 수출은 전체 수출의 5%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MERCOSUR와 중남미에 대한 수출품목 중 두드러진 2가지 차이는 선박과 승용차 수출에서 목격된다. 먼저 선박의 경우 중남미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중계항인 파나마를 통해 유럽 선주들이 우리의

표 7-4. 한국의 對MERCOSUR 품목별 수출구조(2005년 기준)

(단위: %)

	MERCOSUR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소계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184	3,609	1,119	475	6,387	0.2	16,498	0.1
광산물	232	531	60		823	0.0	493,409	3.3
화학공업제품	69,043	243,801	7,785	9,413	330,042	11.8	1,391,722	9.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9,618	64,614	744	1,912	86,888	3.1	361,187	2.4
섬유류	32,371	127,734	580	5,492	166,177	6.0	856,350	5.7
생활용품	2,117	9,647	58	2,812	14,634	0.5	78,385	0.5
철강·금속제품	9,195	46,169	361	83	55,808	2.0	470,466	3.1
기계류	58,213	255,407	3,894	17,741	335,255	12.0	6,458,621	43.1
전자전기제품	115,558	1,654,048	2,816	13,198	1,785,620	64.0	4,830,455	32.2
잡제품	1,478	5,128	45	144	6,795	0.2	29,789	0.2
총계	309,009	2,410,688	17,462	51,270	2,788,429	100.0	14,986,882	100.0

주: 진한 글씨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각 품목의 비중

자료: KOTIS

선박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선박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대중남미 1위 수출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승용차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MERCOSUR 자동차시장의 높은 경쟁과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35%)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MERCOSUR에 대한 수출이 전자전기제품 등 일부 제조업제품에 편중된 데 반해 MERCOSUR로부터의 수입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에 집중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MERCOSUR로부터의 최대 수입품은 광산물로 전체수입의 36%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농림수산물이 32%, 철강금속제품이 22% 비중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MERCOSUR로부터의 수입품 구성은 중남미로

표 7-5. 한국의 對MERCOSUR 10대 수출품목(2005년)

(단위: 천 달러)

순위	MERCOSUR			중남미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무선통신기기부품	815,041	28.8	선박	3,719,981	24.8
2	음극선관	210,165	7.4	승용차	1,460,521	9.7
3	합성수지	206,109	7.3	컬러TV	1,241,002	8.3
4	컬러TV	202,172	7.1	무선통신기기부품	1,005,146	6.7
5	무선전화기	134,059	4.7	합성수지	860,997	5.7
6	보조기억장치	111,506	3.9	무선전화기	512,755	3.4
7	컴퓨터부품	62,475	2.2	경유	487,861	3.3
8	승용차	58,223	2.1	편직물	387,818	2.6
9	건설중장비	44,825	1.6	음극선관	329,751	2.2
10	합성고무	34,707	1.2	화물자동차	283,752	1.9
	소계	1,879,282	66.5	소계	10,289,584	68.7
	총계	2,828,039	100.0	합계	14,986,882	100.0

자료: KOTIS

부터의 수입품 구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보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MERCOSUR로부터 수입은 철광 및 관련제품(강반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품목인 철광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25%에 달했다. 이 외에 농산물 중에서는 박류 및 두류 등 콩류에 대한 수입 의존이 높게 나타났다.

표 7-6. 한국의 對MERCOSUR 품목별 수입구조(2005년 기준)

(단위: %)

	MERCOSUR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소계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282,679	616,914	21,577	3,967	925,137	31.9	1,342,937	19.1
광산물	24,791	1,021,131			1,045,922	36.0	2,327,114	33.2
화학공업제품	8,022	134,211	20	1	142,254	4.9	572,635	8.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0,385	44,473	2,520	3	57,381	2.0	71,643	1.0
섬유류	1,439	1,716	1,114	9	4,278	0.1	27,184	0.4
생활용품	369	1,653	45		2,067	0.1	7,006	0.1
철강·금속제품	38,647	611,324	722	141	650,834	22.4	1,961,032	27.9
기계류	4,493	44,317		1	48,811	1.7	380,442	5.4
전자전기제품	912	24,696	9	53	25,670	0.9	325,235	4.6
잡제품	18	350	1	1	370	0.0	1,443	0.0
총계	371,755	2,500,785	26,008	4,176	2,922,724	100.0	7,016,672	100.0

주: 진한 글씨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각 품목의 비중

자료: KOTIS

표 7-7. 한국의 對MERCOSUR 10대 수입품목(2005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MERCOSUR			중남미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철광	729,322	25.1	동괴 및 스크랩	950,102	13.5
2	강반제품	425,586	14.7	철광	825,018	11.8
3	박류	327,860	11.3	동광	823,019	11.7
4	원유	206,996	7.1	강반제품	448,291	6.4
5	두류	135,341	4.7	박류	328,488	4.7
6	식물성유지	131,397	4.5	선박	273,873	3.9
7	동광	92,600	3.2	원유	228,160	3.3
8	펄프	77,701	2.7	합금철	194,527	2.8
9	열연강관	63,909	2.2	펄프	186,130	2.7
10	소가죽	47,889	1.6	기타석유화학제품	150,652	2.1
10대 상품 소계		2,238,601	77.1	10대 상품 소계	4,408,260	62.8
총 계		2,902,739	100.0	합 계	7,016,672	100.0

자료: KOTIS

마) MERCOSUR의 관세구조

(1) MERCOSUR의 관세구조

경제통합의 발전단계상 관세동맹 수준인 MERCOSUR는 대외공동관세를 표방하고 있다. 199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대외공동관세는 출범초기 14% 수준에서 점차 인하, 2005년 현재 1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5년 관세동맹 초기 대외공동관세의 적용대상은 전체 관세품목의 85%에 달했으나 이후 회원국들의 자의적인 관세적용에 따라 현재 적용범위는 7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MERCOSUR 대외공동관세(CET)는 HS 2002에 기초하며 MERCOSUR 공동관세분류표(NCM: Nomenclatura Comun de MERCOSUR)로 표시한다. 관세분류는 8단위에 기초하며 각 회원국은 보다 세분화된 관세분류 기준을 사용한다. 2006년 현재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품목은 총 9,750개로 평균 대외공동관세는 12.3%이다. 대외공동관세의 범위는 최저 0%, 최고 20%이며, 생산단계에 따라 2%씩 높아지는 등 총 11단계로 구분된다. MERCOSUR의 관세구조는 가공정도 및 부가가치에 따라 경사(escalate)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7-8. 용도별 대외공동관세 구조

용도	대외공동관세
원자재	0~12%
농산품	10~12%
자본재	12~16%
소비재	18~20%

대외공동관세의 구조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관세품목 중 무관세 품목은 666개

로 그 비중은 6.6%에 달했다. 2~10%대 저관세 품목수는 3,502개, 12~20%대 관세 품목수는 5,582개이다. 16% 이상 고관세에 속하는 품목수는 전체의 26.6%인 2,594개 품목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최고 관세인 20% 관세 품목수는 전체의 7.5%인 703개이다.

대외공동관세를 표방하는 MERCOSUR는 국별로 관세수준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예외품목⁷⁸⁾의 인정 때문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내 경제소국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평균관세 수준이 비교적 낮은 반면에 역내 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관세 수준은 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2004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평균관세는 11.9%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으며, 최고관세는 35%이다. 브라질의 평균관세는 MERCOSUR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10.4%이며

표 7-9. MERCOSUR 회원국들의 평균 대외관세

(단위: %)

	1985	1991~92	1994~95	1997~99	2002	2004~05
아르헨티나	26.0	15.0	11.9	13.8	12.2	11.9
브라질	80.0	21.1	12.3	14.6	12.3	10.4
파라과이	71.7	16.0	10.2	9.5	10.7	8.9
우루과이	32.0	12.0	10.5	10.0	11.4	9.3

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2004년 기준, 우루과이 2005년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SICE.oa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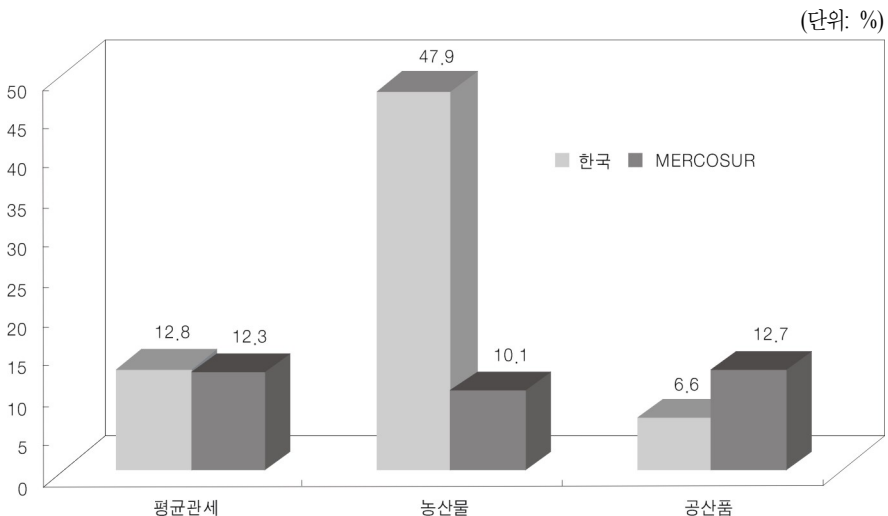
78) MERCOSUR 회원국들은 관세동맹 출범 초기부터 각국의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각 회원국은 기본예외품목(basic list of exceptions, LBE)으로 알려진 국별 예외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국별 예외품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대 100개 품목, 우루과이의 경우 225개, 파라과이의 경우는 649개이다. 다음으로 회원국들은 자본재(BK list), 정보통신장비(BIT list)에 대해서도 대외공동관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재 예외품목은 당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1년 1월 1일까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14%로 대외공동관세를 통일하기로 했으나 현재 2009년 초로 연기된 상태이다. 정보통신장비 예외품목도 2006년 1월 1일까지 16%로 일치키로 했으나 현재 2009년 초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자동차와 설탕을 특별 예외품목으로 분류, 현재 관세 동맹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고관세는 55%이다. 파라과이의 평균관세는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8.9%이며 최고 관세는 30%이다. 우루과이의 평균관세는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 낮은 9.3%로 최고 관세는 55.0%이다.

(2) 한국의 관세구조와의 비교

한국과 MERCOSUR의 관세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품목별로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평균관세를 살펴보면 한국(12.8%)과 MERCOSUR(12.3%)간에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평균관세가 오히려 MERCOSUR의 평균관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전체 관세품목을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대별해 살펴보면 양자의 경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의 평균관세는 47.9%로 MERCOSUR의 평균관세에 비해 약 5배가 높다. 이는 MERCOSUR에 비해 한국이 농업분야에 대해 매우 보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 농산물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그림 7-1. 한국과 MERCOSUR의 관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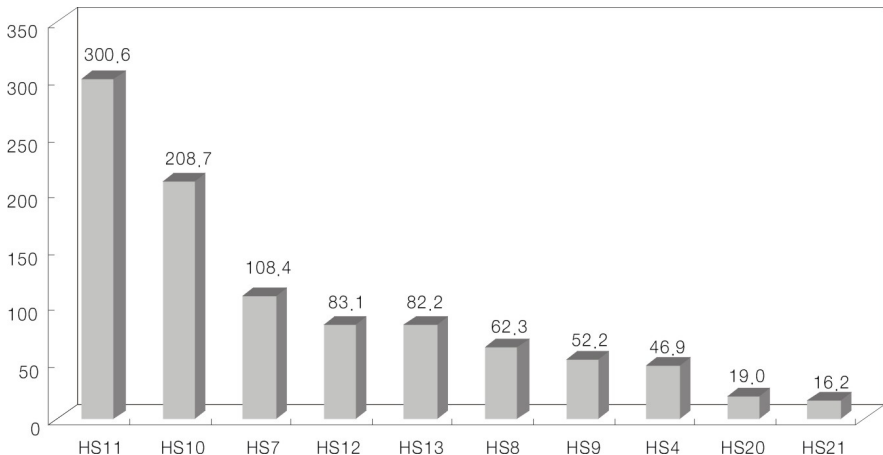
MERCOSUR의 평균관세가 12.7%로 한국의 평균관세보다 2배가 높았다. 이는 MERCOSUR 회원국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아직까지 보호 장벽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산물과 공산품 분야에서 보다 세부 품목별로 한국과 MERCOSUR 간의 FTA 협상에서 보다 쟁점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살펴보기 위해 양자간의 관세 차이를 통한 관세격차⁷⁹⁾를 도출해 보았다.

먼저 농산물 중에서 관세격차가 큰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 중 관세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제분공업생산물(HS 11)으로 격차 폭은 300.6%에 달했다. 두 번째로 관세격차가 큰 품목은 곡물로 그 격차는 208.7%에 달했다. 다음으로 관세격차가 큰 품목은 식용채소(HS 7), 채유용종자(HS 12), (HS 13), 식용

그림 7-2. 농산물 중 한국과 MERCOSUR의 10대 관세격차 품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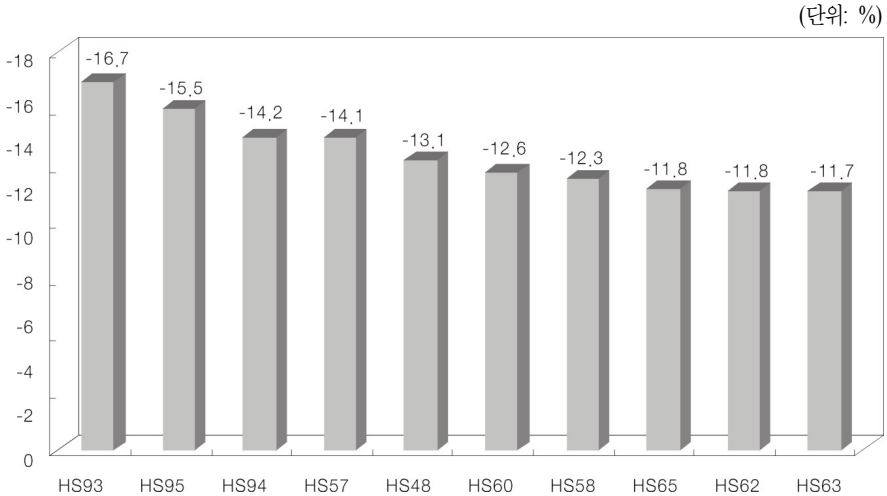


주: 관세격차 = 한국의 농산물 관세 - MERCOSUR 농산물 관세.

자료: WTO 자료 재구성

79) 관세격차 = 한국의 농산물(공산품) 관세 - MERCOSUR 농산물(공산품) 관세. 관세격차가 큰 품목은 양자간 FTA 협상 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림 7-3. 공산품 중 한국과 MERCOSUR의 10대 관세격차 품목



주: 관세격차 = 한국의 공산품 관세 - MERCOSUR 공산품 관세.

자료: WTO 자료 재구성

과실(HS 8), 커피 및 차(HS 9), 낙농품(HS 4), 채소조제품(HS 20), 조제식료품(HS 21) 순이었다.

공산품 중에서 관세격차가 큰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산품 중에서 관세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무기로 조사되었으며 관세격차는 16.7%에 달했다. 두 번째 관세격차가 큰 품목은 완구 및 운동용구로 그 격차는 15.5%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관세격차가 큰 품목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가구류(HS 94), 양탄자(HS 57), 지와 판지(HS 48), 편물(HS 60), 특수직물(HS 58), 모자류(HS 65), 의류(HS 62), 섬유제품(HS 63) 순이다. 대체로 양자간 관세격차는 섬유 및 의류품목에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투자관계

가) 대MERCOSUR 직접투자 위상

우리나라의 대MERCOSUR 직접투자(총투자 기준)는 2006년 3월 말 현재 6억 775만 달러로 중남미 총투자의 13.8%, 전 세계 총투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7-10. 한국의 對MERCOSUR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MERCOSUR					중남미 (B)	전세계 (C)	비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소계 (A)			(A)/(B)	(A)/(C)
1968~89년	7,966	2,289	466	0	10,721	87,410	1,925,116	12.3	0.6
1990년	489	0	0	1,772	2,261	66,813	963,117	3.4	0.2
1991년	4,059	219	0	40	4,318	41,596	1,110,882	10.4	0.4
1992년	10,240	0	0	0	10,240	36,504	1,216,651	28.1	0.8
1993년	15,767	0	50	0	15,817	43,201	1,266,279	36.6	1.2
1994년	6,959	439	2	42	7,442	49,899	2,303,822	14.9	0.3
1995년	11,203	19,158	0	0	30,361	122,441	3,102,318	24.8	1.0
1996년	14,713	50,139	85	0	64,937	272,567	4,456,938	23.8	1.5
1997년	3,366	49,772	0	0	53,138	280,028	3,671,649	19.0	1.4
1998년	43,105	54,677	0	0	97,782	243,565	4,794,148	40.1	2.0
1999년	12,759	46,404	0	0	59,163	227,723	3,330,941	26.0	1.8
2000년	2,066	28,505	0	0	30,571	1,506,892	5,070,051	2.0	0.6
2001년	3,255	18,823	0	0	22,078	103,734	5,152,560	21.3	0.4
2002년	6,655	3,074	0	600	10,329	275,398	3,689,686	3.8	0.3
2003년	0	6,980	0	856	7,836	213,554	4,048,914	3.7	0.2
2004년	0	19,892	0	320	20,212	345,189	5,980,612	5.9	0.3
2005년	0	143,925	0	100	144,025	383,958	6,469,407	37.5	2.2
2006년 1~3월	0	16,326	0	197	16,523	110,501	2,098,417	15.0	0.8
총계	142,602	460,622	603	3,927	607,754	4,410,973	60,651,508	13.8	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MERCOSUR 회원국 중 국별로는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4억 6,062만 달러로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MERCOSUR에 대한 총투자 중 7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가 1억 4,260만 달러로 MERCOSUR 총투자의 24%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2002년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세 번째로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가 393만 달러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에 대한 투자는 60만 달러로 1996년 이후 투자가 전무하다.⁸⁰⁾

나) 시기별 한국의 대MERCOSUR 투자

(1) 도약기(1985~94년): 자원 확보형(resource-seeking) 투자

1980년대 초반까지 투자 및 교역 측면에서 한국의 대MERCOSUR 진출은 매우 미미⁸¹⁾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소폭의 형태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기업의 대MERCOSUR 진출은 아르헨티나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르헨티나 수산부문에 대한 첫 진출은 1984년 한성수산에 의해 추진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부문 진출대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한국정부의 수산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81년 한성수산은 한국정부로부터 아르헨티나 수산이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임무를 위임받아, 초기에 115명의

80)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상 우루과이에 대한 실제 투자액은 5건 6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루과이 통상투자청인 Uruguay 21에 따르면 한국의 대우루과이 직접투자액은 통일교 계열에서의 레디슨플라자호텔(Radisson Plaza Hotel, 1981년, 1억 3,000만 달러) 설립, 방코데크레디토(Banco de Crédito, 1982년, 2,700만 달러) 설립 등 13건 1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측은 현재 2억 달러 규모의 세로(Cerro) 자유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81) 사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도 한국의 대MERCOSUR 투자는 진행되어왔다. 1985년 이전까지 MERCOSUR 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단 5건으로 이마저 주로 한국 종합상사의 판매법인 형태의 투자였다.

어민을 성공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정착시켰다.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성 수산은 아르헨티나에 Hansung A.R.S.A.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우리 수산업체의 대아르헨티나 투자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1985~91년 연평균 투자규모는 177만 달러에서 1992~95년에는 1,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2) 팽창기(1995~98년): 시장확보형(market-seeking)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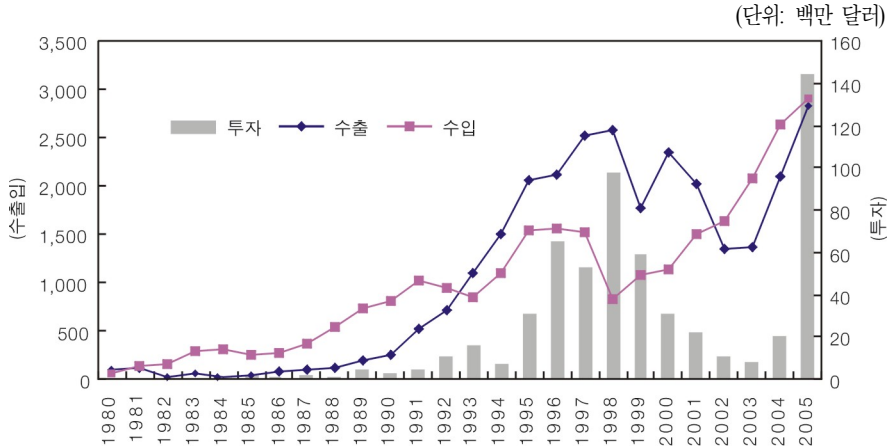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대MERCOSUR 투자도 크게 증가했으며 투자패턴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 한국의 직접투자는 브라질에 집중되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브라질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대상지로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5년 이전까지 한국 대브라질 투자는 총 8건에 투자액은 294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브라질은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지로 크게 주목받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경제성장 △ MERCOSUR의 공고화 △ 1995년 초 브라질의 수입관세 인상과 국내적으로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힘입은 바 컸다.

특히 1996년 한국 대통령의 브라질을 위시한 중남미 순방은 한국기업의 브라질에 대한 관심을 크게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및 광업부문에 총 2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었다. 특히 중남미 순방 이후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종전의 단순 노동집약적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투자로 투자형태가 발전했다.

이 결과 1998년 한국의 대MERCOSUR 투자는 사상 최대인 약 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대중남미 투자의 40%에 달하는 규모였다.

한편 이 시기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었는데, 투자패턴은 이전 시기와는 크게 달랐다. 종전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가 주로 수산부문에 집중되었는데

그림 7-4. 한국의 對MERCOSUR 직접투자과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KOTIS)

반해, 이 시기 한국기업의 투자는 주로 도소매 및 무역업부문에 집중되었다.

또한 이 시기 한국기업의 대MERCOSUR 투자확대는 수출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의 대MERCOSUR 투자와 수출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조정기 혹은 침체기(1999~2003년)

1998년까지 크게 급증했던 대MERCOSUR 투자는 1999년 이후 급감했다. 이같은 이유는 먼저 국내적으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우리 기업의 투자여력이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동아시아 신흥시장 금융위기 여파로 1999년 발생한 브라질 경제위기, 그리고 연이어 나타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의 경제혼란은 투자대상지로서의 MERCOSUR의 매력을 크게 떨어트렸다. 특히 현지 MERCOSUR 시장의 심각한 경기침체 지속으로 종전 투자기업마저 당초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기도 했다.

(4) 재도약기(2004~현재)

그간 주춤했던 MERCOSUR에 대한 투자는 2004년부터 큰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투자 증가세는 브릭스의 일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브라질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2005년에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도 소규모 형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대한 투자는 전무했다.

다) 업종별 대MERCOSUR 투자의 주요 특징

업종별로 MERCOSUR에 대한 투자는 단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중은 총 투자의 63%에 달했다. 광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7%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광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행해졌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진출이 미미한 반면, 광업 및 수산업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요 진출업체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와 유전 및 광물자원탐사 분야의 (주)동원탄좌, 한성, 대림, 오양 등 12개의 수산회사 등이 진출해 있다. 동원은 2005년 7월 (주)골든오일에 아르헨티나 5개 광구를 85억원에 매각했다. 200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2001년 중순부터 현지 진출 주요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기업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철수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특히 대우전자의 경우 현지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Philco를 인수, 현지생산을 해왔으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여파로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1998년 6월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진출했던 국민은행도 2001년 중반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브라질의 경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도 1차 금속과 조립금속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포항제철, 삼성전관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05년 진출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현지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현지시장에서 시장성이 검증되었거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또는 생산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상류층을 겨냥해 프리미엄제품 판매도 확대되고 있고 기술제품 출시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팬택, LG화학, CJ, KT&G, 오토닉스, 삼호물산, 산업은행 등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휴대폰, 화학, 식품, 염연초, FA, SI, 무역업, 금융업 등에 신규 진출했다.

표 7-11. 한국의 업종별 對MERCOSUR 직접투자(2006년 3월 말 누계)

(단위: 천 달러, %)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농림어업	29,434	0	1,775	118	31,327	5.2
광업	38,952	62,130	0	0	101,082	16.6
제조업	11,030	368,163	2,152	485	381,830	62.8
건설업	1,806	3,295	0	0	5,101	0.8
도소매업	61,125	19,822	0	0	80,947	13.3
운수창고업	0	389	0	0	389	0.1
통신업	0	2,183	0	0	2,183	0.4
숙박음식점업	0	2,000	0	0	2,000	0.3
서비스업	255	2,640	0	0	2,895	0.5
총계	142,602	460,622	603	3,927	607,754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양자간 주요 통상 현안

가) 우리측 관심사항

(1) 아르헨티나측에 대한 요청 사항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발동,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대한(對韓) 수입규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 2006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한 수입 규제 현황은 반덤핑 4건이다. 산업별로는 철강이 2건, 섬유류가 2건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쇠고기 수입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대한 무역흑자가 감소세를 타게 될 경우, 한국산 폴리에스터 수지 등 여타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2001년까지 전통적으로 흑자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래 2003년엔 적자폭이 커졌으며, 2004~05년에도 적자 기조가 유지돼 아르헨티나가 무역흑자가 유지되는 한 과거와 같은 수입규제 남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7-12.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2006년 현재)

목	HS分類	규 제 내 용		
		형 태	근 거	규제개시
냉연강판 (아르헨티나)	7209, 7211 7225, 7226 일부	AD	반덤핑법	03. 1.10
아연도강판 (아르헨티나)	7210, 7212 7225, 7226 일부	"	"	03. 5.23
폴리에스터 단섬유 (아르헨티나)	5503.20	"	"	02.11.23
아세테이트필라멘트염색직물 (아르헨티나)	5408.22	"	"	01. 8. 7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브라질측에 대한 요청 사항

표 7-13. 브라질의 對韓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06년 현재)

목	HS分類	규 제 내 용			수 출 실 적 (천 달러)		
		형 태	근 거	규제개시	2002	2003	2004.8
나일론 (브라질)	5401, 5402 일부	AD	반덤핑법	01. 6.28	8,901	6,498	4,70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관련 현안

브라질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현재 브라질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반덤핑 1건(나일론 6사)이다.

◇ 투자관련 현안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확대되면서 브라질 투자진출 시 요구하는 희망 사항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종전 브라질 진출 우리 업체들이 브라질 정부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 투자진출 시 요구되는 과다 현지부품 사용비율의 하향 조정 △ 브라질 진출 외국기업의 외환계좌 개설 불허 및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거래제한 완화 등이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정부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투자 시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제도 법제화 △ 우회수입물량 제한 강화 △ 완제품 수입관세와 판매에 부과되는 세제 인하 등이다.

나) MERCOSUR측 관심사항

(1) 아르헨티나측 관심사항

◇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아르헨티나측은 수년 전부터 한국의 농축산물, 특히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의 구제역 발생 등의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 1999년 5월 파리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아르헨티나를 구제역 비발생 지역으로 선포,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대한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2000년 8월 초 아르헨티나 일부 주(州)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으로 한국의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은 지연되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리나라와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벌이면서 그간 최대 통상현안이 되어왔던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이남(以南) 청정지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구제역은 국가개념이지 지역개념이 아니어서 구제역 발생국가의 쇠고기는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브라질측 관심사항

◇ 브라질산 농산물의 수입개방 촉구

현재 브라질측은 한국이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는 브라질산 생과일, 가금류, 냉동·냉장육 등에 대한 수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측이 국제수역사무국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브라질산 생육 수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2004년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2005년 6월 중순부터 개시되었다.

◇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브라질측은 한국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의 높은 관세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기타 주요 관심사항

이 외에 브라질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광산물, 알코올(에타놀) 등 1차상품 및 항공기, 트럭, 기계류 등 공산품 수출 확대 △인프라분야 민관합동 프로젝트(PPP) 참여 확대 △반도체, 선박 건조 등 첨단기술분야 투자 유치 △IT 등 한국 기술우위분야 협력 확대 등이다.

(3)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측 관심 사항

현재 파라과이와의 주요 통상현안은 EDCF 지원의 조기 집행이다. 우리 정부는 대파라과이 EDCF 지원(한도액 3,000만 달러)의 일환으로 2000년 지원방침을 결정했으나 아직까지 차코(Chaco)지역 지방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파라과이는 2006년에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청정국가로 인정받음에 따라 파라과이산 쇠고기의 대한 수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과이의 육류 수출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칠레, 브라질, 유럽 연합 등 주요 수입국가들이 파라과이산 육류수입을 중단조치하는 등 크게 침체된 바 있다. 그러나 민·관 협조체제하의 검역체계 강화,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지

원 확대 등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 육류 가공시설의 현대화 등 품질개선 도모 등이 인정되어 칠레 등 기존의 수출시장이 재개방되고, 콜롬비아 등 신규시장이 개척되는 등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이 2005년 1월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구제역(FMD) 비발생국가로 종전의 등급을 회복시킨 데 이어, 2006년 1월에는 동 기구로부터 광우병(BSE) 청정국가 등급을 부여받게 된 것이 파라과이산 육류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루과이측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은 쇠고기 수입 허용이다. 우루과이로부터 쇠고기 수입은 2000년과 2001년 쇠고기 수입 허가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2002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국제수역사무국은 우루과이를 광우병 안전 국가(BSE-free country) 중 하나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정부의 대 한 쇠고기의 전면 수입허용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나.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한·MERCOSUR FTA 시나리오

FTA는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범 분야의 조화 및 개선, 투자협정, MRA 등 다양한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야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와 더불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정한다. 서비스 부문은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로 하는 바, 한·MERCOSUR FTA를 통해 각 국가의 모든 장벽이 제거된다고 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또한 국방, 정부 서비스 등 개방되기 어려운 분야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MERCOSUR

FTA로 인해 각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이 50% 감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농업 및 제조업의 일부 민감 품목은 한국과 MERCOSUR의 국내 사정에 따라 유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I은 한·MERCOSUR FTA를 통해 각 국가는 농업과 제조업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II는 한·MERCOSUR FTA에서 한국은 쌀, 곡류, 육류 등의 일부 민감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50% 인하하고, MERCOSUR는 한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50% 인하한다.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 철폐한다. 실제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시나리오 I은 한·MERCOSUR FTA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무역자유화 범위로 볼 수 있고, 시나리오 II는 최소한의 무역자유화 범위로 볼 수 있다.

또한 UR의 결과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가 2005년부터 철폐되어 중국, 인도 등 제3국으로부터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 철폐는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유 및 의류의 생산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섬유 및 의류의 쿼터가 철폐되는 것을 반영하여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는 비관세장벽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쿼터철폐로 NAFTA, EU 등의 기타 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50%가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두 가지 모형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로 한·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정태적 모형으로 분석한다. 정태적 모형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으로 파악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다시 저축되고

투자로 연결되어 소득이 더욱 증가하는 자본축적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본축적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이는 중장기적 효과로 정의된다.

2) 분석결과

가) 거시경제적 영향

[표 7-14]는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모형으로 한국과 MERCOSUR 무역에 있어서 시나리오 I과 II에 따라 단기적으로 농업, 제조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부문의 관세상당치가 50% 감소하는 한·MERCOSUR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 I은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전 철폐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II는 한국은 농산물의 일부 민감 품목을 유보하고, MERCOSUR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일부 유보하여 각 국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50% 인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표 7-14. 한·MERCOSUR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단기)

(단위: %, 백만 달러)

		실질 국내총생산	후생	등가변환	전세계 수출
시나리오 I	MERCOSUR	0.07	0.17	1,676.7	3.65
	한국	0.62	1.08	4,236.1	1.99
시나리오 II	MERCOSUR	0.05	0.08	864.6	1.25
	한국	0.22	0.41	1,624.7	0.62

중장기적으로 한·MERCOSUR FTA를 통해 양국간의 교역에 대해 농업, 제조업의 전 품목을 자유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MERCOSUR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

산은 각각 0.07% 및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실질 국내총생산은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화를 제외한 것이다. 한국이 농산물 중에서 일부 민감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MERCOSUR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제외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한국과 MERCOSUR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시나리오 I에 비해 약간 낮게 증가한다. 그 이유는 양국이 무역자유화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산업을 보호하여 양국의 비교우위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MERCOSUR FTA로 인해 MERCOSUR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각각 0.36% 및 1.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MERCOSUR와 한국의 후생은 각각 0.38% 및 1.77% 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면 MERCOSUR는 약 38억 7,000만 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양국의 수출을 보면, MERCOSUR의 수출이 4.67% 증가하고 한국은 이보다는 약간 낮은 3.0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03년 현재 MERCOSUR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MERCOSUR의 비중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MERCOSUR FTA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및 수출의 증가가 1.64% 및 3.08%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

실질 국내총생산 및 후생의 변화를 볼 때, 한·MERCOSUR FTA는 한국에 더

표 7-15. 한·MERCOSUR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증장기)

(단위: %, 백만 달러)

		실질 국내총생산	후생	등가변환	전세계 수출
시나리오 I	MERCOSUR	0.36	0.38	3,874.4	4.67
	한국	1.61	1.77	6,955.5	3.08
시나리오 II	MERCOSUR	0.20	0.20	2,026.1	1.76
	한국	0.53	0.63	2,477.8	0.97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에도 한·MERCOSUR FTA가 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및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으나, 한국과 MERCOSUR의 무역에 대해 완전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시나리오 I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MERCOSUR가 관세동맹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전 품목에 대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정도로 무역자유화에 대해 역내 국가간 의견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MERCOSUR FTA로 한국과 MERCOSUR가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철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MERCOSUR FTA로 인한 최소한의 효과를 가정하는 시나리오 II를 중심으로 [표 7-16]은 한·MERCOSUR FTA로 인해 한국과 MERCOSUR의 지역별 수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과 MERCOSUR간의 양자간 수출은 크게 진작되는 반면, NAFTA, EU를 비롯한 기타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다. 이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당사국과의 교역은 크게 확대되는데, 이는 일부 여타지역으로의 수출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의 수출로 대체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MERCOSUR FTA로 양국의 순수출(net export)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16. 한국과 MERCOSUR의 지역별 수출의 순증감

(단위: 백만 달러)

단기(시나리오II)	MERCOSUR	한국	NAFTA	EU	기타	총계
MERCOSUR	-651.9	2,184.3	-173.2	-290.5	-257.9	810.9
한국	3,909.9	-	-860.0	-726.8	-1,901.7	421.4
중장기(시나리오 II)						
MERCOSUR	-567.7	2,210.4	-55.5	-163.7	-32.5	1,391.0
한국	3,924.3	-	-724.9	-610.2	-1,489.3	1,099.9

MERCOSUR에서 MERCOSUR로의 무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MERCOSUR가 4개국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며, 이는 MERCOSUR 역내무역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MERCOSUR FTA가 현재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과 MERCOSUR간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국, MERCOSUR 수출의 지역별 변화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며, 장기적인 변화(약 10년 기간)이다. 즉 한·MERCOSUR FTA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총효과를 나타낸다.

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표 7-17]은 시나리오 I에 따라 한·MERCOSUR FTA가 각 산업의 생산에 미

표 7-17. 시나리오 I: 한·MERCOSUR FTA가 각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산 업	MERCOSUR	한국
농산물	3.08	-4.99
광물	-2.20	1.68
가공식품	-0.19	6.90
섬유	0.18	3.00
의류	0.50	-0.26
석유화학	0.05	0.52
화학제품	0.04	0.86
철강 및 금속	-1.08	-0.70
자동차 및 부품	-8.13	18.60
기타 운송장비	-0.03	-7.65
전자제품	-0.46	-2.46
기계	-0.73	-0.51
기타 제조업	-0.13	1.42
유통 서비스	0.34	1.09
운송 서비스	0.96	-0.16
금융 서비스	0.13	0.72
기타 서비스	0.33	1.32

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농업과 기타 운송장비(항공기 등)의 생산이 각각 4.99% 및 7.65%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동차, 섬유, 기타 제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MERCOSUR는 농업, 섬유, 의류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자동차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 서비스의 생산이 감소하는데 반해, MERCOSUR의 운송 서비스는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18. 시나리오 II: 한·MERCOSUR FTA가 각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산업	단 기		중 장 기	
	MERCOSUR	한국	MERCOSUR	한국
농산물	0.39	-0.79	0.52	-0.75
광물	-0.54	-0.54	-0.30	-0.00
가공식품	0.07	0.57	0.19	0.69
섬유	0.07	-0.12	0.25	0.19
의류	0.27	-0.23	0.43	0.08
석유화학	0.05	-0.10	0.23	0.19
화학제품	-0.15	-0.19	0.06	0.19
철강 및 금속	-0.46	-0.87	-0.18	-0.38
자동차 및 부품	-1.84	2.50	-1.56	2.96
기타 운송장비	-0.43	-2.97	-0.11	-2.38
전자제품	-0.78	-0.60	-0.57	-0.20
기계	-0.80	0.04	-0.54	0.54
기타 제조업	-0.19	-0.11	0.04	0.23
유통 서비스	0.02	0.05	0.19	0.38
운송 서비스	0.63	-0.02	0.83	0.22
금융 서비스	-0.06	-0.07	0.11	0.22
기타 서비스	0.06	0.16	0.19	0.44

반면 [표 7-18]은 시나리오 II에 따른 한·MERCOSUR FTA가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공식품 및 자동차의 생산 증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부 민감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약 50% 인하될 경우 한국 농산물의 생산은 단기적으로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MERCOSUR는 농업, 의류 및 석유화학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자동차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ERCOSUR의 운송 서비스는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은 유통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태적 효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저축과 투자로 이어져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의 산업별 생산 변화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감소되었던 일부 산업의 생산은 증가추세로 반전되거나 감소 정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한·MERCOSUR FTA 협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이상 언급한 양자간 경제관계, 양자간 통상 현안, 양자간 FTA 경제효과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도출해 보기로 한다.

먼저 경제관계를 통해볼 때 양국간 FTA 협상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역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MERCOSUR 무역관계는 MERCOSUR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쟁점 사항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양자가 현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으로 쟁점의 소지가 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농산품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MERCOSUR는 차량, 섬유류, 신발류, 시계 등의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 통상현안을 통해 양자간 FTA 협상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해

볼 수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MERCOSUR측에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우리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와 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이다. 그에 반해 MERCOSUR측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은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MERCOSUR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분석을 통해서도 예상되는 쟁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자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 효과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이 커다란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MERCOSUR측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자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KOTRA(2003)가 현지 진출기업과 현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양자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민감 품목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국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쇠고기, 사과, 포도, 쌀 등 농축산물 분야를 민감 품목으로 상정하고 있다. 공산품 중에서도 신발

표 7-19. 한·MERCOSUR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민감 품목

		민감 품목
브라질	브라질측	석유화학, 기계류, 플라스틱, 직물, 가전제품
	한국측	사과, 포도, 쌀, 육류, 닭고기, 대두, 신발, 제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측	철강, 섬유완제품, 자동차
	한국측	쇠고기, 옥수수, 대두
우루과이	우루과이측	섬유(방직, 방적, 봉제), 자동차조립산업(소형 승용 및 상용차)
	한국측	쇠고기

자료: KOTRA(2003)

과 제지분야가 양자간 FTA 체결 시 민감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MERCOSUR측은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 섬유 및 식물,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을 민감 품목으로 예상하고 있다.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앞에서는 MERCOSUR의 대외협상 체제의 다기성, 정치적 고려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개별국과의 FTA 분화가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MERCOSUR가 지금까지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제한적인 PTA를 제외하면 역외 국가와의 FTA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우리의 MERCOSUR와의 FTA에서의 통상이익이 현지완제품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진출 외에도 셰이프가드나 반덤핑제도로 인한 피해축소, 투자 및 금융서비스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출 등에 있는 반면, 우리의 농업과 MERCOSUR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가장 민감한 분야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변적이고 민감한 환경하에서 한·MERCOSUR 협상 쟁점분야를 우리의 이익에 맞도록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인 MERCOSUR의 대외정책의 향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데 아래에서는 이들 네 가지 변수를 전제로 대응전략을 논하기로 한다.

첫째, MERCOSUR의 대외정책 향방을 기능하는 최대 변수는 회원국간의 잦은 통상 분쟁이다.

MERCOSUR는 1991년 출범 이후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왔다. MERCOSUR는 초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로 출범, 1995년 불완전한 형태지만 관세동맹(Customs Union) 단계로 발전했다. 특히 MERCOSUR

는 출범 이후 역내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증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체로 자리매김했다. 이같은 MERCOSUR의 발전은 1990년대 중반 칠레와 볼리비아가 연이어 준(準)회원국으로 가입하고, MERCOSUR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명실상부한 협상주도국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1990년대 MERCOSUR가 거둔 괄목할 성과는 1999년 브라질의 급격한 해알화 평가절하 이후 촉발된 브라질·아르헨티나간 통상분쟁과 연이어 발생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제위기 여파로 MERCOSUR가 정체성 위기를 맞으면서 빛이 바랬다. 이에 따라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MERCOSUR의 발전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예단(豫斷)하거나 심지어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다만 2002년까지 팽배했던 MERCOSUR 전도에 대한 비관적 시각은 2003년 들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같은 시각의 변화는 MERCOSUR 공고화에 대한 회원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안정과 수렴, FTAA 출범 임박감에 따른 역내 회원국의 결속 강화를 통해 추동(推動)되었다. 2003년 이후 가시화된 MERCOSUR 강화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MERCOSUR 공고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에서 목격되었다. 특히 회원국 중에서도 MERCOSUR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주축국인 브라질의 정치적 의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전통적으로 브라질 정부는 “MERCOSUR는 운명이고 FTAA는 선택이다”라는 카르도주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확인되듯 MERCOSUR 경제통합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왔다. 최근 브라질 정부의 MERCOSUR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2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MERCOSUR 강화 정책이 현 중도좌파 정부의 대외정책 목표와 일치한다는 데 있다. 룰라 정부는 “브라질의 자율성과 자존심 회복”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MERCOSUR 확대 및 강화를 최우선수단으로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그간 브라질

과 더불어 MERCOSUR의 양대 주축국으로 활동해온 아르헨티나가 최근 경제위기 여파로 정치·경제적 위상이 크게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브라질이 MERCOSUR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MERCOSUR의 대외정책 측면에서도 브라질의 입장이 곧 MERCOSUR의 입장이라는 등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2003년 5월 출범한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정부도 MERCOSUR 공고화에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사실상 그간 아르헨티나는 경제통합의 중심국이면서도 MERCOSUR 통합발전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중남미국가들의 미국시장 접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이에 편승해, 아르헨티나는 일관되게 친미 정책을 펼쳐왔으며, 1999년 브라질 헤알화 위기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특히 2001년에는 대외공동관세를 둘러싸고 MERCOSUR 회원국간 대립이 촉발되자 아르헨티나 카발로 경제장관은 “MERCOSUR가 관세동맹 단계를 지향하기보다는 FTA 수준에 머무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을 공식 제기, MERCOSUR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친미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 체결은 고사하고 2000년 이후 발생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확대를 받았다. 이후 그간 다소 이중적이었던 아르헨티나의 MERCOSUR에 대한 입장은 MERCOSUR 공고화로 확고하게 선회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의견상 표출되고 있는 MERCOSUR 공고화에 대한 각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불거져 나오고 있는 회원국간의 각종 통상 분쟁은 계속해서 MERCOSUR의 전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MERCOSUR 회원국간 통상 분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무역적자를 둘러싼 해묵은 통상 분쟁이다. 현재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은 브라질산 저가제품에 대해 자국산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조치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 결과, 2004년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브라질 무역적자 규모는 2005년에는 3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 통상 분쟁 사례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투자분쟁이다.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우루과이가 세계은행의 자금을 끌어들여 아르헨티나 접경지역 우루과이강 어귀에 2개의 펄프제지공장을 건설키로 결정하자 아르헨티나 환경단체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양국을 잇는 교량을 봉쇄하고 아르헨티나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를 부추기키면서 확산되었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환경단체의 교량 봉쇄로 물류 및 관광객 이동이 차단되면서 총 3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통상분쟁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파라과이간 분쟁이다. 아르헨티나는 2006년 3월 자국 영토를 통과해 칠레로 가는 파라과이산 육류 운반용 트럭의 수를 제한시켰다. 브라질도 파라과이 국경도시 시우다드 델 에스테(Ciudad del Este)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승객을 태운 파라과이 택시를 압수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같은 통상 분쟁은 회원국들의 MERCOSUR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MERCOSUR로부터 회원국들의 이반의 징후는 역내 약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공공연한 자유무역단계 회귀로의 의사 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들어 우루과이는 MERCOSUR와는 별도로 미국과 FTA 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우루과이와 미국과의 FTA 협상 논의는 현재 FTAA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의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MERCOSUR내에서 우루과이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의 뒤를 이어 파라과이 정부도 2006년 들어 공공연하게 MERCOSUR를 비판하고 있다. 그간 MERCOSUR 공고화를 주장해왔던 두아르테 대통령도 처음으로 파라과이가 MERCOSUR를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MERCOSUR는 이제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둘째,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추이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WTO 협상과 지역통합협상은 복잡한 trade-off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WTO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는 다자주의의 활성화 → 지역주의 정신의 퇴조 → FTA에 대한 관심 저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WTO 협상 진전이 오히려 MERCOSUR FTA 정책을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무엇보다도 FTAA 및 EU와 FTA 협상의 교착요인인 농업보조금 문제가 WTO 협상에서도 최대 현안이기 때문이다. FTAA 협상에서 MERCOSUR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 및 농업보조금 철폐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농업관련 사안을 FTAA 협상에서보다는 WTO 협상에서 다룰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WTO 협상의 신속한 타결은 교착상태에 빠진 FTAA 및 EU와 FTA 협상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에 따른 영향이다. 베네수엘라의 정식 MERCOSUR 가입은 MERCOSUR의 대외협상에 급진 성향의 정치성을 부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MERCOSUR · EU간 FTA 협상이나 FTAA 협상도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식가입은 MERCOSUR의 외연적 확장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 제고, 남미국가간의 에너지통합 가속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회원국 수가 종전 4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상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져 중장기적으로 MERCOSUR의 경제통합 발전은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MERCOSUR는 2005년 말까지 대외공동관세의 예외품목을 모두 철폐하고 관세동맹을 완성, 2006년부터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계로 나아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상회담에서 MERCOSUR 회원국들은 공동의회 창설,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역내 국가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기금 설립 등 일부 제도적인 측면에서 커

다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통합 발전의 핵심 요소인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자동차, 자본재, 정보통신제품 등) 철폐에서는 회원국간의 이해 대립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현재 베네수엘라의 관세가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양자간 관세조정 과정에서 대외공동관세 예외 품목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MERCOSUR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도 대외정책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2000년대 들어 FTAA 협상이나 EU와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도 내부적으로는 현 MERCOSUR 회원국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MERCOSUR의 주축국인 브라질에서 대외정책의 변화는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룰라 정부는 카르도주 정부와는 달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남·북협력)보다는 개도국과 경제협력(남·남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르도주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물이었던 미 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이나 MERCOSUE·EU간 FTA 협상은 통상정책의 후순위로 물러났다.

대신에 룰라 정부는 먼저 1990년대 후반 이후 회원국에서 연이은 경제위기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MERCOSUR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데스공동체(CAN)와의 FTA 체결 및 남미국가연합(CSN) 결성 등을 통해 인근 남미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는 FTA의 전 단계인特惠무역협정(PTA)을 체결했다. 또한 그간 미개척시장이었던 아프리카, 중동국가들과도 지역간 정상회담 등을 개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MERCOSUR의 대외정책 방향은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시나리오는, 남남협력 중시형 대외정책이다. 2006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재선되었고, 브라질의 대외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키르치네르 대통령도 2007년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극적인 타결 등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남남협력 중심의 현 MERCOSUR의 대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 가입도 이같은 MERCOSUR의 대외정책에 무게를 실어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FTAA 협상이나 EU와의 FTA 협상은 후순위로 밀려 계속해서 교착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개도국과의 FTA 협상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과의 FTA는 탈(脫)미, 탈EU 등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협력 중시형 대외정책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WTO DDA 협상의 타결이 관건이다.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 농산물시장 개방 때문에 중단된 FTAA 협상이나 EU와의 FTA 협

표 7-20. 시나리오별 MERCOSUR의 대외정책 방향

	유형	주요 변수 및 특징
시나리오 1	남남협력 중시형	- WTO DDA 협상 장기간 표류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현 대통령 재선 - 현재의 대외정책기조 유지 - 개도국과 FTA 확대 - 선진권과 FTA 후순위 - 베네수엘라의 영향력 확대
시나리오 2	남북협력 중시형	- WTO DDA 협상 타결 - FTAA 및 EU와의 FTA 협상 우선순위 - 개도국과 FTA 협상 후순위 - 업계의 거대경제권과 FTA 확대 요구
시나리오 3	각개약진형	- MERCOSUR 관세동맹에서 자유무역단계로 후퇴 혹은 MERCOSUR 붕괴 - 우루과이를 선두로 미국과 FTA 협상 전개

상이 MERCOSUR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도국과의 FTA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MERCOSUR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현재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존의 4+1 형식의 대외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그간 공공연하게 미국과 FTA 협상을 희망해왔던 우루과이가 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고 다음으로 파라과이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MERCOSUR와 4+1 형태로 진행되어온 그간의 모든 FTA 관련 협상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시나리오 I의 경우나 시나리오 II 경우 모두 MERCOSUR의 한국과의 FTA 관심도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ERCOSUR와 우리나라간의 협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MERCOSUR가 DDA의 타결여부로부터 갖게 될 한국과의 FTA 입장도 일관적일 수 있다고 본다. 즉 DDA에서 농업국으로서의 MERCOSUR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면 한국과의 FTA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DDA의 좌초는 농업분야만을 놓고 본다면 MERCOSUR의 새로운 협상기회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농업부문을 민감분야로 지정, 상당부분 유보할 경우 과연 MERCOSUR가 한국과의 FTA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MERCOSUR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TRQ 확대를 포함한 농축산업부문 추가개방안과 이에 따른 국내적인 조정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MERCOSUR가 자동차 및 부품 산업부문에 대한 유보로 대응하는 안도 상정해볼 수 있지만, MERCOSUR의 기존 역외협상 사례로 볼 때 이 안이 협상타결의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II의 경우 미국 및 EU와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 제품과 기계류 등이 MERCOSUR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와 MERCOSUR 양측간의 적극 관심품목 상호유보로 협상이 교착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여타 관심품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의 서두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에서 지적했듯이 가능한 범위로부터 점차 넓혀가는 몇 단계의 협상으로 종국적으로 FTA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전략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체결의 주요 목적은 IT, 식물,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의 남미시장 확대 및 인근시장 진출확대이며 MERCOSUR가 한국과 FTA를 체결코자하는 점은 농산물시장과 일부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T 등 경쟁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현지시장을 확대하고 농산물 중 비경쟁 분야에 대해 먼저 적극 개방함으로써 좁은 범위에서나마 상호 이익증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ERCOSUR가 한국과 무역협상을 진행시킨다면 이는 전략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MERCOSUR에 FTAA, EU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규모와의 협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MERCOSUR는 회원국내의 피해 예상 집단의 이해를 반영해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하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대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MERCOSUR의 무역협상은 전면적인 FTA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FTA인 PTA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MERCOSUR의 4개 협상사례 중 단일국가와의 협

상사례로서 유일해 여러 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 MERCOSUR · 인도간 PTA 사례는 협상 대상국간 교역관계의 높은 상호보완성이 결코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MERCOSUR와 인도는 교역 구조 측면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PTA 협상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 양측은 피해 예상 집단의 이해를 반영해 농업부문은 물론 제조업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관세양허를 꺼렸다. 인도측에서는 MERCOSUR가 강력히 개방을 희망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양허를 기피했다. 또한 인도가 제조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MERCOSUR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관세양허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인도측의 방어적인 협상전략에 맞서 MERCOSUR측도 인도측이 희망하는 제조업분야에서의 관세양허를 기피했다. 결과적으로 MERCOSUR · 인도간 PTA는 이러한 양측간의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협상 전략을 반영해 그간 MERCOSUR가 체결한 PTA 중에서도 개방의 폭과 깊이가 가장 낮았다. 한국과 MERCOSUR도 교역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다. MERCOSUR는 농업부문에서, 한국은 제조업부문에서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산업 경쟁력 보호 측면에서 MERCOSUR측은 제조업분야에서,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 · MERCOSUR 무역협상도 양측이 민감 분야에서 상호간의 실질적인 양허를 기피할 경우 MERCOSUR · 인도간 PTA와 같은 낮은 수준의 협정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시나리오 III의 경우는 MERCOSUR의 와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도 포함되지만, 개별국과의 FTA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정식회원 가입이 MERCOSUR의 통합체 발전이나 협상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큰 관건이다. 베네수엘라가 MERCOSUR의 각종 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여 완전한 MERCOSUR 회원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3년의 시간이 더 소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차베스 대통령의 급진적인 외교 정책을 수용하는 태도와, 최근 한·MERCOSUR 공동연구보고서에 베네수엘라의 지위가 공식회원국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한·MERCOSUR FTA 협상에는 베네수엘라 역시 협상국으로 나서 1+5 형태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에서 언급한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및 무역정책상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한·MERCOSUR FTA 협상에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경우 한·MERCOSUR 협상은 기존 다른 역외권과의 FTA 협상보다도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와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브라질, 그리고 가변적인 베네수엘라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우리의 대MERCOSUR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나라는 MERCOSUR와의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사업의 용어, 즉 FTA라는 명칭과 TA(Trade Agreement)라는 용어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후자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굳이 EU나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6개월내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종료를 희망했으나 2년 이상 지연됨을 경험한 바 있다. 한·MERCOSUR 간 FTA는 양측간 교역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해 2004년 11월 한국 대통령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한·MERCOSUR 무역협정(TA)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당초 2007년 하반기에 교섭 완료로 상정했던 협상은 아직 개시조차 미정인 상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MERCOSUR간에는 EU나 미국과는 정치·문화적 채널이 부재한 상태여서 협의의 공감대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U·MERCOSUR간 FTA 협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자는 기본협력 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치부문, 경제부문, 무역부문의 대화창구를 통해 협상을 시작했고, 1999년 11월부터는 EU·MERCOSUR 협력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는 FTA 협상 중에도 별도로 기존 한·MERCOSUR 협의회(Korea · MERCOSUR Consultative Meeting)를 확대, 강화시킴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유지해가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ERCOSUR가 실용주의에 입각해 주요국과의 상호 무역 및 산업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투자확대 또한 MERCOSUR와의 협상 모멘텀 유지 수단이자 협상력 제고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대MERCOSUR 협상과정에서 개별국가간의 이해충돌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적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권기수. 2000.10. 「남미자유무역지대 추진경과와 출범전망」. 『월간 세계경제』.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_____. 2003. 「Mercosur-EU간 FTA 통합협상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제6권, 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석오. 2006.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재정경제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울: 외교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3. 『중남미 국별 FTA 추진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추진 가능성』.
-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005. 「EU의 FTA 추진 정책과 한-EU FTA 체결 가능성」.
- 박순찬 · 유태환. 2006. 「EU와 Mercosur의 FTA 추진과 경제적 효과 분석」.
- 법무부.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 외교통상부. 2006. 『월간중남미 정보』, 5월호. 외교통상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 · 칠레 FTA 백서』.
- 헤럴드뉴스. 2006. 「아르헨-브라질 ‘수입제한협정’과급효과 잘 따져봐야」. (2. 13)

[영문자료]

- Albuquerque, C. R. & Fernandes, C. L. L. 1999. “Impactos da liberalizacao comercial no period do comercio exterior brasileiro.” In *Anais*. Belem. ANPEC(em CD-ROM).
- Alves, Philip. 2004. “Understanding Indian Tra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do-SACU Agreement.”
- Bauman, Renato. 2001. *Mercosul: Avancos e Desafios da Integracao*. Brasilia: IPEA/CEPAL.
- Blanco M., Herminio, and Jaime Zabloudovsky. 2003.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The Scope of the Negotiations.” Working. Paper SITI-01. Buenos Air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Botto, Mercedes. 2004. "The impact of new regionalism on trade policy making: the case of Mercosur and the FTAA in Southern countries." Second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Latin Study Network on Integration and Trade(ELSNIT), Florence, October, 29-30.
- Bouzas, Roberto. 2001. "MERCOSUR Ten Years: Learning Process or Deja-Vu?" Flasco/Argentina.
- Bouzas, Roberto and Enrique Avogadro. 2002. "Trade Policy-Making and the Private Sector: A Memorandum on Argentina." In INTAL. 2004. The Trade policy-Making Process Level One of the Two Level Game: Country Stud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Buenos Aires: ITAL-ITD-STA Occasional Paper 13.
- Carranza, Mario E. 2004. "Mercosur and the end game of the FTAA negotiations: challenges and prospects after the Argentine crisis." *Third World Quarterly*, Vol.25, 2, pp. 319~337.
- Carriquiry, Guzman. 2005. *Una Apuesta por América Latina*. Editorial Sudamericana: BS AS.
- Clarín*. 2006. "Una ley provincial brasilena frena exportaciones argentinas." (February 26)
- CUTS-CITEE. 2005a. "India and Mercosur: Boosting Trade through Regionalism." *Briefing Paper*. CUTS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 Environment.
- _____. 2005b. "SACU and India: Towards a PTA." *Briefing Paper*. CUTS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 Environment.
- de la Sota, Marcela. 2004. "Acuerdo de Preferencias Arancelarias Fijas. MERCOSUR-India." Secretaria de Agricultura, Granjería, Pesca y Alimentos.
- Devlin, Robert. 2000.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nd MERCOSUR-European Union Free Trade Process: Can they Learn Something form Each Other?" Occasional paper 6. Buenos Aires: INTAL-ITD. (December)
- Di Masi, Jorge Rafael and Constanza Loustau. 2006. "MERCOSUR's FTA Policies

-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Economist*. 10/12/2005. “An ominous step,” Vol. 377, pp. 42~44.
- _____. 01/10/2005. “Improbable allies”. pp. 36~7.
- Fishlow, Albert. 1994.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In A. F. Lowenthal and G. F. Treverton eds. *Latin America in a New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 Fonseca, Renato, Marcelo S. Azevedo and Edson Velloso. 2005. “O Potencial de Comercio entre Brasil e India: Um exame com base nas estruturas de vantagem comparativa.” Estudos CNI 3. Brasília.
- FTAA 사무국 홈페이지(<http://www.ftaa-alca.org>)
- Garcia, Juan Ignacio. 2004. “MERCOSUR: In Search of A New Agenda MERCOSUR’s Insertion into a Globalized World.” Buenos Aires: ITAL-ITD Working Paper-SITI-06b.
- Giordano, Paolo. 2004. “Mirando al MERCOSUR y al mundo: Estrategia de comercio e integración para Paraguay. Buenos Aires: ITAL-ITD Documento de Divulgación 27.
- Herminio Blanco M. and Jaime Zabludovsky K. 2003. “Alcances y limites de la negociacion del Acuerdo de Libre Comercio de las Americas.” Documento de Trabajo-IECI-01. Buenos Aires: INTAL-ITD-STA.
- Hornbeck. 2006. *Brazilian Trade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in <http://www.nationalaglawcenter.org>.
- INAI. 2004. “Estado de Situacion de las Negociaciones.” *Boletin* No 31, 12 de octubre de 2004.
- InsideTrade 홈페이지(<http://www.INSIDETRADE.com>)
- INTAL. *Informe MERCOSUR*. 각 년호.
- ISI Emerging Markets(www.securities.com) 각 일자.

- Jordana, Jacint and Carles Ramio. 2002. "Diseños institucionales y gestión de la política comercial exterior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ITAL-ITD-STA Documento de Divuldación 15.
- Juan Jose Taccone and Uziel Nogueira eds. 2003. *Report MERCOSUR 2001-2002*. Buenos Aires: IDB-INTAL.
- Kume, Honorio, Guida Piani and Pedro Miranda. 2005. "India-MERCOSUL: Perspectivas de um Acordo de Preferencias Comerciais." Texto Para Discussao No 1120. IPEA.
- LainNews.com. 2006. "India & Brazil: Getting closer." *Latin America-Asia Review*, (September)
- Lorenzo, Fernando and Osimani Rosa. 2003. "Las negociaciones del MERCOSUR con el ALCA y Estados Unidos." In *El Mercosur y la Creación del A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ericas*, edited by Fernando Lorenzo y Marcel Vaillant, Red Mercosur.
- Lorenzo, Fernando and Marcel Vaillant. 2006. *Mercosur and the Creation of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Woodrow Wilson Center Reports on the America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 Lyal White. 2003. "SACU-MERCOSUR: Long Process, Little Progress." Presentation at workshop on MERCOSUR-South Africa in Rio de Janeiro, 17-18 February 2003.
- Machado, J. B. M. & Markwald, R. A. 1997. "Dinamica recente do processo de integracao do Mercosul." In *Anais*, pp. 723~742. Recife: ANPEC.
- Mercedes Botto. 2004. "The impact of new regionalism on trade policy making: The case of MERCOSUR and the FTAA in Southern Countries" FLACSO: Argentina.
- MERCOSUR-SACU PTA 협상단계별 공식협상결과보고서.
- Moniz Bandiera, Luiz Alberto. 2004. "Argentina, Brasil y Estados Unidos: De la Triple Alianza al Mercosur." Grupo Editorial Norma: BS AS.
- Oxford Analytica. 1996. "Brazil: India Relations." February 1 1996.
- Pena, Celina and Ricardo Rozemberg. 2005. "MERCOSUR: A Different Approach to Institutional Development." FOCAL Policy Paper FPP-05-06.

- Pereira, Lia Valls. 2006. “Os Acordos Comerciais do Mercosul com India e SACU.” *Revista Brasileira de Comercio Exterior*, No 86, janeiro-marco de 2006. Fundacao Centro de Estudos do Comercio Exterior(FUNCEX).
- Petras, James. 2002. “Brazil: Neo-Liberalism, crises and electoral politics.” In *the James Petras website*. <http://petras.lahaine.org>.
- Puri, Lakshmi. 2004. “IBSA: An emerging trinity in the new geography of international trade.” UNCTAD.
- Quijano, José Manuel. 2002. “Integration and Civil Society: Some Experiences of the Uruguayan Case.” In INTAL. 2002. *The Trade policy-Making Process Level One of the Two Level Game: Country Stud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Buenos Aires: ITAL-ITD-STA Occasional Paper 13.
- Rafael Di Masi, Jorge. 2006. “MERCOSUR’s FTA Policies Towrds Develoing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Presented for KIEP.
- Reuter. 각 일자.
- Sanguinetti, Pablo and Eduardo Bianchi. 2003. “Implementing PTAs in the Southern Cone Region: Rules of Origin.”
- Sawaya, Marcos Jank et al. 2004. “Fast-tracking a “feasible” EU-Mercosur Agreement: Scenarios for Untying the Agriculture Kno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 Schott, Jeffrey. 2005. *Does the FTAA Have a Futu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IC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outhern Common Market(MERCOSUR) and the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SACU).
- Tavares de Avarujo, Jose. 2000. “Competition Policy and the EU-Mercosur Trade Negotiations.” Working Group on EU-Mercosur Trade Negotiations.
- UNCTAD. 2004a. “Regionalism and South-South Cooperation: The case of Mercosur and India”. Note by the UNCTAD secretariat. Eleventh session Sao Paulo, 13-18 June

- 2004.
- _____. 2004b. "South-South Trade Cooperation: A Compilation of Studies by the Team of UNCTAD in India." Papers presented at the Forum on Regionalism and South-South Cooperation: The Case of India and Mercosur that was held on 9 June 2004 at Rio de Janeiro, Brazil.
- Vaz, Alcides Costa. 2003. Trade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Economic Regionalism: The Case of Mercosur,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CLAS Working Papers, Uni. of California, Berkeley.
- _____. 2001. "Mercosul aos Dez Anos: Crise de Identidade ou de Crescimento?" *Revista Brasileira de Politica Internacional*, pp. 43~54.
- Veiga, Pedro da Motta. 1997. "MERCOSU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TAA". *Integration and Trade*, no. 3. Buenos Aires: INTAL.
- _____. 2002. "Trade Policy-Making in Brazil: Transition Paths", in INTAL. 2002. The Trade policy-Making Process Level One of the Two Level Game: Country Stud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Buenos Aires: ITAL-ITD-STA Occasional Paper 13.
- _____. 2006. "Formulacao de politicas comerciais no Brasil: o relacionamento entre o Estado e a sociedade civil: evolucao recente" . *Revista Brasileira de Comercio Exterior*, v. 20, n. 86, 2006-2759. (Jan./Mar.)
- Wrobel, Paulo. 1998.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in 2005?", *International Affairs*, Vol. 74, No. 3, pp. 47~561.
- Yeats, Alexander. 1997. "Does MERCOSUR's Trade Performance Raise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29.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ANNEX: 시장접근팀의 협상일지 (예)

제2차협상, 1998년 8월 31일 - 9월 2일, 마이애미

제2차협상, 1999년 1월 18-22일, 마이애미

<관세Tariffs>

관세철폐를 위한 방법과 일정

관세철폐 시기 및 점진적 철폐

관세의 기타요인 점검 (custom surcharges and other fees levied on imports, tariff rate quotas, price bands, etc)

예외사항 결정 및 분석 (special regimes)

<비관세Non-Tariff Measures>

비관세 장벽 점검 및 일정협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초안작성 및 제반사항 점검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통관에 관한 원칙에 대한 초안 작성 및 제반사항 점검

<세이프가드Safeguards>

현 지역통합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분석

<무역상 기본, 기술장벽Standard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타사항Other business>

제3차협상, 1999년 3월 22-24일, 마이애미

기본 아젠다 논의

제4차협상, 1999년 5월 18-21일, 마이애미

기본 아젠다 논의 및 시장접근 분야에 있어 협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장접근에 있어 기술적인 장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기관의 발표를 청취

PanAmerican Standards Commission (COPANT), Inter-American System of Metrology (SIM), InterAme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 (IAAC), and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제5차협상, 1999년 8월 2-6일, 마이애미

기본 아젠다 논의

원산지 규정, 관세절차, 기술적 무역장벽의 분야에 있어 FTAA협정문에 포함될 내용을 검토

제6차협상, 1999년 9월 22-24일, 마이애미

기본 아젠다 논의. 11월에 토론토에서 개최될 차기 장관급회의를 준비하기위해 TNC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제7차 협상, 2000년 2월 1-4일

토론토 장관회의의 선언문 재확인과 향후 협정문 초안의 뼈대를 논의

제8차 협상, 2000년 5월 9-12일, 마이애미

기본 아젠다 논의, 상당한 진전

제9차 협상, 2000년 7월 4-7일, 마이애미

기본 아젠다 논의

제10차 협상, 2000년 9월 19-22, 마이애미

농업분야 작업팀의 보고 청취 및 시장접근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 논의
관세협상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FTAA협정문 초안 작성에 큰 진전

제11차 협상, 2000년 10월 31일-11월 3일, 마이애미

TNC보고용 초안 완성

제12차 협상, 2001년 5월 14-16일, 파나마

부에노스 아이레스 장관급회의와 퀘벡정상회담 결과 논의

제13차 협상, 2001년 7월 2-6일, 파나마
기본 아젠다 논의

제14차 협상, 2001년 8월 6-10일, 파나마
기본 아젠다 논의

제15차 협상, 2001년 10월 1-5일, 파나마
기본 아젠다 논의

제16차 협상, 2001년 11월 19-23일, 파나마
시장접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접수
기타 기본 아젠다 논의

제17차 협상, 2002년 1월 28일-2월 1일, 파나마
시장접근 초안 작성작업
농업작업팀 보고서 검토
기타 기본 아젠다 논의

제18차 협상, 2002년 3월 18-22일, 파나마
n/a

제19차 협상, 2002년 5월 20-24일, 파나마
기본 아젠다 논의

제20차 협상, 2001년 7월 1-5일, 파나마

통관 및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조항 재작성

관세양허안,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원칙을 TNC에 제안하기 위한 준비

제21차 협상, 2002년 7월 29일 - 8월 2일, 파나마

FTAA 협상초안의 검토 및 수정작업

관세양허안,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원칙을 2002년 8월 회의를 위해 TNC에 제안하기 위한 준비

제22차 협상, 2002년 9월 23-27일, 파나마

TNC의 기준에 따라 향후 협상 일정 조율과 관세양허의 교환방법 작성. (큰 진전을 이룸) 자문그룹의 IDB는 역내 각종 통계 추출 및 작성방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관세양허안 준비 방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 또한 IDB는 WTO와 SIECA과의 공동작업결과물인 통상협상방법론(Toolkit)에 대해 브리핑. 금번에는 시민사회로부터 요구안을 접수하지 않음.

제23차 협상, 2002년 12월 9-12일, 파나마

키토장관회담 결과분석. 기본관세안을 제출기한인 10월 15일까지 모든 국가가 제출함. 통상협상방법론(Toolkit) 완성

원산지규정에 대해 광목할만한 진전이 있었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논의.

시민사회로부터 의견 접수

제24차 협상, 2003년 2월 17-23일, 파나마

자문그룹이 준비한 기본관세와 특혜관세, 연간 무역통계, 역내 특혜관세 현황

검토. 1차 양허안에 대한 의견 교환.

양허안 번역 및 조화로운 협상진행을 위해 FTAA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제25차 협상, 2003년 3월 24-28일, 푸에블라

원산지규정의 집행과 통관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 협의. 시민사회로부터 의견 접수. 1999년 토론토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통관절차에 대한 협상의 8가지 원칙을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IDB에 연구 요청.

제26차 협상, 2003년 5월 6-9일, 푸에블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이프가드, 무역에 있어서 기술적 장벽 등에 대해 논의 하여 진척을 이룸. 시민사회로부터 의견 1건 접수.

제27차 협상, 2003년 6월 2-6일, 푸에블라

기본 아젠다 논의

제28차 협상, 2003년 7월 21-25일, 푸에블라

TNC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시민사회로부터 의견 8건 접수.

기본 아젠다 논의

제29차 협상, 2003년 9월 15-19일, 푸에블라

n/a

부록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일 시	주요협정	합의내용
1992. 5	기구간협력협정 체결(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Agreement)	- 경제통합의 제도적·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원
1995. 12	지역간 기본협력협정 체결(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 정치적 대화증진, 경제 및 기술협력, 무역관련 문제해결 등 세 부분으로 구성 · 양 공동체의 관심정책에 대한 각료수준의 합의 · 장기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 EU의 MERCOSUR기구 자체에 대한 지원 - EU-MERCOSUR 각료 이사회 설치 합의
1999. 6~7	제 1차 EU-MERCOSUR 정상회담과 각료이사회 개최	- EU-MERCOSUR간 통합협상 공식개시 선언 - MERCOSUR의 준회원국협정(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1999. 11	제 1차 EU-MERCOSUR 협력협의회 개최	- 양 지역간 협상위원회(BNC)설립 - 협상구조, 협상방법, 협상일정 등에 합의
2000. 4 ~ 2005. 9	제 1차 ~ 17차 BNC 회담 개최	- FTA추진 원칙과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 무역문제를 다룰 세 개의 기술그룹과 특정 협력 분야를 전담할 세 개의 소그룹 설립 · 동시적이며 일괄적(Single undertaking)인 협상원칙에 합의 - FTA체결에 관련된 논의 내용 · 양측의 비관세장벽 관련 제안서 제출 · 양측의 관세인하안 제출 · 양측의 정부조달, 서비스 및 상품협상 텍스트 제출 - 양측의 FTA 협정안 교환(2004. 6.)
2002. 5	제 2차 EU-MERCOSUR 정상회담 개최	- 협상완료시한 설정 합의 실패 -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 협력과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 지속추진에 합의
2004. 5	제 3차 EU-MERCOSUR 정상회담 개최	- 2004년 10월 까지 FTA 협상타결의지 재확인
2006. 5	제 4차 EU-MERCOSUR 정상회담 개최	- MERCOSUR의 서비스시장과 공공부문, 유럽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 조율



Executive Summary

MERCOSUR's Free Trade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a Korea-MERCOSUR FTA

Won-Ho Kim, Ki-Su Kwon, Jin-O Kim, Swan Park, and Jae-Sung Kwak

This study explores the free trade negotiations of the 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that comprises Brazil, Argentina, Paraguay, and Uruguay as an attempt to find implications for a future Korea-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 Beyond the South American region, MERCOSUR has successfully launche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ith India and South African Customs Union (SACU) as their pre-FTA arrangements, and negotiated an FTA with European Union (EU) and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although these two have stalemated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This study covers the four cases of negotiation experiences in their background, economic relations, negotiation modality, issues, and prospects.

This study finds that Korea and MERCOSUR will tend to reserve agricultural sector and car industry among others as sensitive ones, respectively when the two parties undertake FTA negotiation. From the most relevant precedent of the MERCOSUR-India PTA, it is expected that the two will have difficulty acquiring free access to each other's sensitive sectors, and that the

ultimate trade agreement will be a limited one in its coverage. A technical difficulty will be added while Venezuela joins MERCOSUR as the fifth member state when MERCOSUR has never had a supranational negotiating authority like the European Commission. Furthermore, Korea should take a pragmatic and progressive stance toward negotiations with MERCOSUR once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regional bloc is quite uncertain given several bilateral and intraregional relationship.

KIEP 발간자료목록(2005~06. 12)

■ 연구보고서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상열 외
-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이창수·김군태·강준구·박순찬
-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종규
-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율·왕윤종·오쿠다 사토루·정재완
-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성호·박순찬
-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 · 정승호 · 윤정혁 · 우상민
-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 · 동용승 · 홍익표 · 이재영 · 이종운 · 정형곤
-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 · 임혜준 편
-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 · 김종혁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규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광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Policy Analyses

-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 05-03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 06-01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 Chang Jae Lee ed.
- 06-02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 on East Asian Economies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정책자료

-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울 · 홍수연
-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홍종 · 김균태 · 오형범 · 나수엽 · 하유정
-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곤
-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 · 김우영 · 박순찬

-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이창수 · 김민성 · 윤창인 · 김진오
- 06-02 몽골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정재완 · 유민우
-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 신현준
-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 여지나
- 06-05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06-06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and Doo Yong Yang

■ 지역연구시리즈

- 06-0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 김세원 · 박명호 · 김홍중

■ 정책토론회시리즈

-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 · 홍수연
-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곤

■ 세미나자료모음

-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홍중 · 박성훈 · 페터 가이 편
- 06-01 Road to Rpsperity and Cooperati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Asia
- 06-02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06-03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06-04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APEC Study Series

-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 OECD Study Series

-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
-Yull Choi

■ Discussion Papers

-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 Working Papers

-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çoise NICOLAS
-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 임 명
-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 Zhang Jianping

■ 지역리포트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흥중·김균태·Bernhard Seliger
-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 06-01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알제리·나이지리아 / 박복영·황주성
·박철형

■ 지역연구회시리즈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윤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쓰히로
-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 유장희·김은미
- 06-01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 단행본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金元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국제지역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wh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Latin America and East Asia: Attempts at Diversification(공편, 200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 점』

(공저, 2004) 외

權奇洙

한국의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ksk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 점』(공저, 2004)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2001) 외

金眞梧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jo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 점』(공저, 2004)

『멕시코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2001) 외

朴수완

미국 Smith College 정치학과 졸업

이탈리아 Universita Cattolica del Sacro Cuore 대학원 유럽학과 국제관계학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s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MEFTA, Beyond Economic Reasons(2003) 외

郭宰誠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iverpool 국제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現, E-mail: kwakwak@unitel.co.kr)

著書 및 論文

“Galvanizing Inter-Pacific Relations: Korea’s Role in Asia-Latin American Cooperation”

(*East Asian Review*, Vol. 16, No. 4, Winter, 2004)

『라틴아메리카를 찾아서』(공저, 2000) 외

연구보고서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2006년 12월 26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262-3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MERCOSUR's Free Trade Negotiations and Implications for a Korea-MERCOSUR FTA

Won-Ho Kim, Ki-Su Kwon, Jin-O Kim, Swan Park, and Jae-Sung Kwak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중남미 최대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 시장(MERCOSUR)은 최근 들어 제3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 힘입어 성장 잠재력이 큰 광역시장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06년 네 차례에 걸쳐 MERCOSUR와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개최했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협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해 그간 MERCOSUR가 제3국과 체결한 FTA나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 사례를 분석, 우리나라의 MERCOSUR FTA 협상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2623
ISBN 978-89-322-1262-3
978-89-322-1072-8 (세트)

정가 10,000원